

2020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
필리핀 종합보고서

CONTENTS

조사요약

일러두기

01 조사 개요

| | |
|----------------------------|-----|
| 제1절.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011 |
| 1. 조사의 필요성 | 011 |
| 2. 조사 목적 | 012 |
| 3. 기대 효과 | 013 |
| 제2절. 조사내용 및 방법 | 013 |
| 1. 조사대상 선정 및 설계 | 013 |
| 2. 가공식품 교역 현황 및 수입식품 관리제도 | 014 |
| 3.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관련법규 정보 수집 | 014 |
| 4. 기타 식품안전 및 수입식품 관련 이슈 | 015 |
| 제3절. 조사대상 가공식품 | 015 |

02 조사수행 내용 및 결과

| | | | |
|------------------------|-----|-----------------------------|-----|
| 제1절. 필리핀 개요 | 021 | 제4절. 식품 표시 | 077 |
| 1. 국가 개요 | 021 | 1. 식품 표시 및 포장 개요 | 077 |
| 2. 한국과의 관계 | 026 | 2. 표시사항 | 078 |
| 3. 식품 관련 규정 및 기관 | 028 | 3. 식품 표시 예시 | 086 |
| 제2절. 가공식품 교역 현황 | 035 | 제5절.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규정 | 089 |
| 1. 필리핀 식품시장 동향 | 035 | 1. 식품첨가물 관련 규정 | 089 |
| 2. 한국 식품 수출 동향 및 전망 | 042 | 2. 유해물질 관련 규정 | 095 |
| | | 3. 필리핀 식품첨가물/유해물질 분류 | 097 |
| | | 4. 식품첨가물/유해물질 기준 데이터베이스 활용 | 126 |
| 제3절. 수입식품 관리제도 | 047 | 제6절. 기타식품안전및수입식품관련이슈 | 129 |
| 1. 수입 제도 | 047 | 1. 식품 관련 주요 비관세 장벽 | 129 |
| 2. 수입 통관 절차 | 053 | 2. 세관현대화·관세법 | 132 |
| 3. 인증 제도 | 072 | 3. 필리핀 식품안전관리체계 | 135 |
| | | 4. 필리핀 수출 관련 Q & A | 136 |

참고문헌

부 록

| | |
|--------------------------|-----|
| 1. 대한민국 신식품공전 식품 분류 | 149 |
| 2. 필리핀 영업허가증과 상품등록인증서 | 159 |
| 3. 식품별 관련 기관 및 서류와 절차 확인 | 163 |
| 4. 원산지 증명서 | 167 |
| 5. 필리핀 식품 관련 협회 | 181 |
| 6. 필리핀 관련 기관 주소 및 연락처 | 183 |
| 7. 주요 국가 통관 거부 현황 | 187 |

표

| | |
|--|-----|
| [표 1-1] 우리나라 식품공전에서 분류하는 가공식품 분류 | 016 |
| [표 2-1] 최근 5년간 對 필리핀 식품 수출입 현황 | 044 |
| [표 2-2] 최근 5년간 對 필리핀 농식품수출액 현황 | 045 |
| [표 2-3] 對 필리핀 주요 부류별 가공식품 수출 동향 | 045 |
| [표 2-4] 최근 3년간 對 필리핀 식품 수출 Top5 품목 목록 | 046 |
| [표 2-5] 한국 식품공전 분류에 따른 필리핀 식품첨가물규정 식품유형 분류 | 099 |
| [표 2-6] 한국 식품공전 분류에 따른 필리핀 유해물질규정 식품유형 분류 | 117 |
| [표 2-7]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검색 결과 예시 | 127 |
| [표 2-8] 유해물질 허용기준 검색 결과 예시 | 127 |
| [표 2-9] 최근 3개년 對 필리핀 우유 수출 실적 | 138 |
| [표 2-10] 한국산 라면의 필리핀 수출실적 | 140 |

그 림

| | |
|---|-----|
| [그림 1-1] 조사 목적 및 개요 | 012 |
| [그림 2-1] 필리핀 식품 관련 법·규정 및 관련 기관 | 033 |
| [그림 2-2] 필리핀 주요 소매유통채널 | 041 |
| [그림 2-3] 2018년 매출액 기준 Top5 슈퍼마켓과 편의점 | 042 |
| [그림 2-4] 제품 수입 준비 단계 | 054 |
| [그림 2-5] 필리핀 통관경비 사항 | 064 |
| [그림 2-6] 식품첨가물/유해물질 기준 DB 수출지원정보 사이트(aT KATI) | 126 |
| [그림 2-7] 필리핀 식품안전 체계 | 135 |

조사요약

필리핀은 서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로, 7,107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루손섬, 비시야스 제도, 민다나오섬의 세 지역으로 나뉜다. 영토는 30만 179km²로 남한 면적의 약 3배이며, 인구는 2020년 기준 약 1억 958만 명이다. 민족은 타갈로그족, 세부아노족, 일로카노족, 비사야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말레이계가 주를 이루나 여러 종족 간 혼혈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언어는 필리핀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필리핀은 스페인과 미국의 지배 영향으로 서양 문화가 발달한 시장이며, 미국 통치하에서 증가한 화교의 영향으로 중국 문화가 발달하기도 한 시장이다. 소득 수준에 비해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인구의 상당수가 젊은 연령층으로 미래 소비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지방 농촌 인구의 도시 이동, 열악한 물류시스템과 가정 내 냉장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섭취가 용이한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2018년 기준 필리핀의 식품시장 규모는 약 850억 달러로 전체 GDP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약 8.2%의 성장률을 보인다. 가구당 지출의 37%를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구입에 사용하고 있어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식품 지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식품관련 규정은 미국 FDA 및 기타 국가의 유사기관에서 제정한 규정 사항과 CODEX 지침을 따른다. 식품첨가물규정은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청(FDA)에서 식품안전법(Food Safety Act)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규정에는 배경, 용어 정의, 일반 지침, 식품첨가물 목록 형식, 향미물질, 식품첨가물 목록의 검토 및 개정, 부록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필리핀 식품첨가물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품유형과 우리나라 신식품공전 내 식품유형을 매칭한 매칭일람표를 제공한다. 필리핀 식품유형은 식품첨가물규정 중 '식품분류체계'와 부록에서 제시된 식품분류를 추출하여 정리하였으므로, 이는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이 필리핀 식품유형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해물질규정은 농수산물표준국(BAFS)의 전신 BAFPS(Bureau of Agricultural and Fisheries Product Standards)에서 '식품과 사료의 오염물질 및 독소에 대한 일반 규정'에서 제시되어 있는데, 해당 규정은 가공식품을 제외한 농축수산물 원물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경우는 별도 규정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식품별 기준규격"에 제시된 제품 정의, 제품 유형, 위생, 유해물질 등의 내용에서 유해물질과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유해물질규정 내 식품유형은 "식품별 기준규격"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품분류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우리나라 신식품공전 내 식품유형과 매칭한 매칭일람표가 본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식품첨가물과 유해물질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품유형 분류 매칭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매칭일람표를 참고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규정의 원문 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및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등을 보고자 한다면, 본 과제에서 제공한 필리핀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규정 원문과 이를 번역한 번역본 참고가 필요하다

필리핀은 농업 및 축산업 무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민감품목과 고도민감품목으로 분류된 농산물에 관련된 사안으로 이 밖의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관련 사안은 많지 않은 편이다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동물성 제품은 수의학증명서, 식물성 제품은 식물위생증명서, 수산제품은 양식자원국 발행 검역허가증 등을 발급받아야 하며, 특히 수산제품은 허가받은 수입자만 수입할 수 있고 재가공 목적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은 공식기관 발행 국제보건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식품별 증명서 발급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현지 통관 브로커를 이용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거의 불가능한 점과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 특성상 물류 인프라가 부족하여 타겟 지역이 한정적인 점이 수출기업에게 있어 어려운 점으로 꼽히고 있다

본 과제의 수행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수출진흥정책 및 수출전략 수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향후 조사 기간을 확대하고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러두기

1. 조사 진행 단계

| 조사 진행 단계 | 내용 |
|--------------|---|
| 1. 조사계획 및 설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기본 방향 설정 ▪ 조사대상 항목 설정 및 조사계획 수립 ▪ 전문가 자문을 통한 조사대상 및 항목 선정 |
| 2. 조사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현황조사, 면접조사 등 ▪ 전문가 인터뷰, 자문 등을 통한 자료 조사 ▪ 전문가, 유관기관 협조 요청 및 방문조사 |
| 3. 자료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된 자료 정리 및 분류 ▪ 자료에 대한 분석 ▪ 분석결과 해석 및 활용을 위한 전문가, 기업 등 관계자 인터뷰와 자문 |
| 4. 결과 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된 내용과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에 관한 보고서 작성 |

2. 조사 내용

- 필리핀 식품 관련 법률 및 기관
- 필리핀 가공식품에 관한 일반현황
- 필리핀 수입식품 관리제도
- 필리핀 식품표시제도
- 필리핀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규정
- 기타 식품안전 및 수입식품 관련 이슈

3. 조사 방법

3.1. 온라인 검색을 통한 문헌, 홈페이지 및 각종 자료 조사

- 온라인 사이트 및 정보 검색
- 관련 문헌, 연구, 정보 검색 및 수집
- 수입식품 관련 법규 및 규정집 정보 수집
- 필리핀 정부 기관 홈페이지 자료 수집

3.2. 전문가 및 관계자 인터뷰 조사

- 식품 제조, 유통 관련 업계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 협조
- 관련업체 방문 및 현장 견학

3.3 자료 취합 및 보고서 작성

- 수집된 자료 취합 및 내용 분류
- 분류된 자료를 토대로 장별, 절별 내용 구성 및 보고서 작성
- 추가적인 자료 보완과 보고서 본문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 및 자료 부록으로 취합
- 정부 자료 및 관련 법규나 규정 정보 번역 추가

3.4 검토 및 수정·보완

- 작성된 보고서 내용 검토 및 관련 전문가 검토를 통해 오류 및 수정·보완사항 도출
- 지적된 내용과 실제 자료 비교·검토 후 필요시 수정 보완
- 번역 자료 및 내용 검토·확인
- 최종 검토

1

조사 개요

Chapter 0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Chapter 02

조사내용 및 방법

Chapter 03

조사대상 가공식품

제1절.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조사의 필요성

- 주요 수출국의 식품 관련 규정이 상이하고 수시로 변경되어 다양한 식품원료와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수출과정에서 부적합 등 수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더불어, 식품관련제도 및 절차 등의 미숙지로 인한 통관 억류 및 부적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저하되어 중·장기적으로 식품 수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정보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함
-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규정에 대한 정보를 통해 제품개발단계에서 정보 활용을 독려하고 예상되는 통관 상의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국제무역 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다양화,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주요 수출국의 식품 수입규정에 대한 정보, 특히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업데이트가 시급한 실정임
- 현재 수행되고 있는 주요 수출국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규정 변동사항 업데이트와는 별개로 새롭게 추가되는 국가의 경우 국가사항, 식품안전 기관 및 주요법규,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관련 주요 규정, 식품안전 관련 기타사항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한 권의 보고서로 수집할 필요성이 제기됨

□ 2. 조사 목적

- 필리핀의 수입 관련 법규·정보 수집 및 식품첨가물과 유해물질 주요 규정 정보를 제공하여, 가공식품 수출 시 상이한 식품 제도 및 규제로 인한 통관상의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는 데 활용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또한, 수출기업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수출 법규 위반 방지와 신속한 대응 및 개별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중복 노력을 최소화하며, 수출 정책 및 수출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도출하는 것이 그 목적임



[그림 1-1] 조사 목적 및 개요

□ 3. 기대 효과

- 필리핀의 관련 제도 및 정보 제공으로 수출 시 신속 대응
- 가공식품 품목에 대한 필리핀 관련규정 준수
- 식품첨가물 DB 구축 등 정보 제공으로 개별기업의 정보 수집 중복 노력 최소화
-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및 수출 효율화로 국내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 수출 정책 및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수출 진흥에 기여
- 기업 및 국가의 대외 신뢰도 증대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제2절. 조사내용 및 방법

□ 1. 조사대상 선정 및 설계

- 선정방법
 -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수입 관련 법규 정보와 식품첨가물과 유해물질규정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20년에 우리나라의 식품 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필리핀을 선정함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식품 수출 대상국 중 필리핀은 수출량 89.2천 톤, 수출금액 157.2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11위를 차지함
 - 식품업체의 요구사항에 따라 조사대상 가공식품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여 조사 진행함

- 조사 설계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보고서의 구조 및 내용 확정
 - 식품 가공기업 및 수출회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 2. 가공식품 교역 현황 및 수입식품 관리제도

- 조사내용
 - 필리핀 수·출입 개요 및 양국 간의 교역상황
 - 수입검사제도(사전준비사항, 수입허가사항, 검역 및 통관절차 등)
 - 수입관세 및 식품표시제도
 - 식품관련 정부기관 내역(기관명, 홈페이지 등)

□ 3.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관련법규 정보 수집

- 조사내용
 - 필리핀 가공식품과 기준·규격(정의 및 분류, 식품기준·규격 등)
 - 필리핀의 가공식품 품목별 첨가물 규정 현황(사용기준, 금지첨가물 종류 등)

□ 4. 기타 식품안전 및 수입식품 관련 이슈

- 조사내용
 - 식품안전 이슈
 - 수입식품 부적합 사례
 - 필리핀 수출 관련 기타 사항
- 조사방법
 - 문헌조사, 전문정보사이트, 현지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제3절. 조사대상 가공식품

- 한국의 (신)식품공전을 기준으로 필리핀에서 규정하는 가공식품에 대해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규정 등을 조사
 - [부록 1]에 우리나라 식품공전 식품 분류가 제시되어 있음
 - 필리핀의 가공식품 분류체계는 한국의 가공식품 분류기준과 상이하므로, 국내 분류유형을 기준으로 이에 매칭되는 필리핀 가공식품별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관련 법규 정보 등을 작성함
- 수출기업에 필요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국내 주요 식품제조업체의 주요 식품유형, 기업의 주요 관심 가공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 등의 의견 수렴

[표 1-1] 우리나라 식품공전에서 분류하는 가공식품 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식품유형 개수 |
|--------------------|--------------------|---------|
|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 | 5 |
| 2. 병과류 | 2-1. 아이스크림류 | 5 |
| | 2-2. 아이스크림믹스류 | 5 |
| | 2-3. 병과 | 1 |
| | 2-4. 얼음류 | 2 |
|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3-1. 코코아가공품류 | 4 |
| | 3-2. 초콜릿류 | 5 |
| 4. 당류 | 4-1. 설탕류 | 2 |
| | 4-2. 당시럽류 | 1 |
| | 4-3. 올리고당류 | 2 |
| | 4-4. 포도당 | 1 |
| | 4-5. 과당류 | 2 |
| | 4-6. 엿류 | 3 |
| | 4-7. 당류가공품류 | 1 |
| 5. 잼류 | - | 2 |
| 6. 두부류 또는 묵류 | - | 4 |
| 7. 식용유지류 | 7-1. 식물성유지류 | 20 |
| | 7-2. 동물성유지류 | 5 |
| | 7-3. 식용유지가공품 | 8 |
| 8. 면류 | - | 4 |
| 9. 음료류 | 9-1. 다류 | 3 |
| | 9-2. 커피 | 1 |
| | 9-3. 과일·채소류음료 | 3 |
| | 9-4. 탄산음료류 | 2 |
| | 9-5. 두유류 | 2 |
| | 9-6. 발효음료류 | 3 |
| | 9-7. 인삼, 홍삼음료 | 1 |
| | 9-8. 기타음료 | 2 |
| 10. 특수용도식품 | 10-1. 조제유류 | 2 |
| | 10-2. 영아용 조제식 | 1 |
| | 10-3. 성장기용 조제식 | 1 |
| | 10-4.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 1 |
| | 10-5. 기타영·유아식 | 1 |
| | 10-6.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 3 |
| | 10-7.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1 |
| | 10-8. 임신·수유부용식품 | 1 |

| 대분류 | 중분류 | 식품유형 개수 |
|----------------|---------------------|---------|
| 11. 장류 | - | 14 |
| 12. 조미식품 | 12-1. 식초 | 2 |
| | 12-2. 소스류 | 4 |
| | 12-3. 카레(커리) | 2 |
| | 12-4.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 2 |
| | 12-5. 향신료가공품 | 2 |
| | 12-6. 식염 | 6 |
| 13. 절임류 또는 조림류 | 13-1. 김치류 | 2 |
| | 13-2. 절임류 | 2 |
| | 13-3. 조림류 | 1 |
| 14. 주류 | - | 12 |
| 15. 농산가공식품류 | 15-1. 전분류 | 2 |
| | 15-2. 밀가루류 | 2 |
| | 15-3.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 2 |
| | 15-4. 시리얼류 | 1 |
| | 15-5. 찌쌀 | 1 |
| | 15-6. 효소식품 | 1 |
| | 15-7. 기타 농산가공품 | 5 |
| 16. 식육가공품 | 16-1. 햄류 | 3 |
| | 16-2. 소시지류 | 3 |
| | 16-3. 베이컨류 | 1 |
| | 16-4. 건조저장육류 | 1 |
| | 16-5. 양념육류 | 4 |
| | 16-6. 식육추출가공품 | 1 |
| | 16-7. 식육함유가공품 | 1 |
| | 16-8. 포장육 | 1 |
| 17. 알가공품류 | 17-1. 알가공품 | 7 |
| | 17-2. 알함유가공품 | 1 |
| 18. 유가공품 | 18-1. 우유류 | 2 |
| | 18-2. 가공유류 | 4 |
| | 18-3. 산양유 | 1 |
| | 18-4. 발효유류 | 6 |
| | 18-5. 버터유 | 1 |
| | 18-6. 농축유류 | 5 |
| | 18-7. 유크림류 | 2 |
| | 18-8. 버터류 | 3 |
| | 18-9. 치즈류 | 2 |

| 대분류 | 중분류 | 식품유형 개수 |
|----------------|---------------------|------------|
| | 18-10. 분유류 | 4 |
| | 18-11. 유청류 | 3 |
| | 18-12. 유당 | 1 |
| | 18-13. 유단백가수분해식품 | 1 |
| 19. 수산가공식품류 | 19-1. 어육가공품류 | 6 |
| | 19-2. 젓갈류 | 4 |
| | 19-3. 건포류 | 3 |
| | 19-4. 조미김 | 1 |
| | 19-5. 한천 | 1 |
| | 19-6. 기타 수산물가공품 | 1 |
| 20. 동물성가공식품류 | 20-1.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 2 |
| | 20-2. 곤충가공식품 | 1 |
| | 20-3. 자라가공식품 | 3 |
| | 20-4. 추출가공식품 | 1 |
| 21. 벌꿀 및 화분가공품 | 21-1. 벌꿀류 | 4 |
| | 21-2. 로얄젤리류 | 2 |
| | 21-3. 화분식품 | 2 |
| 22. 즉석식품류 | 22-1. 생식류 | 2 |
| | 22-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 3 |
| | 22-3. 만두류 | 2 |
| 23. 기타식품류 | 23-1. 효모식품 | 1 |
| | 23-2. 기타가공품 | 1 |
| 24. 그 외 분류 | 장기보존식품 | 3 |
| | 식품원료 | 2 |
| | 그 외 분류 | 1 |
| 총 가공식품유형 수 | | 277 |

2

조사수행 내용 및 결과

Chapter 01

필리핀 개요

Chapter 02

가공식품 교역 현황

Chapter 03

수입식품 관리제도

Chapter 04

식품 표시

Chapter 05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규정

Chapter 06

기타 식품안전 및 수입식품 관련 이슈



제 1 절. 필리핀 개요

□ 1. 국가 개요

□ 가. 일반사항

- 필리핀의 면적은 300,179km²로 한반도의 1.3배이며, 7,107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후는 고온 다습 아열대성 기후로 건기(11~5월)와 우기(6~10월)로 구분됨
- 총인구는 2019년 7월 기준 1억 80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1.4%에 해당하며 세계 13위를 기록함¹⁾
- 수도는 마닐라(Manila)로 인구는 1천 145만 명임. 그 외 주요 도시로는 Davao City(148만 명)와 Cebu City(85만 명)가 있음

1) 필리핀 통계청, <https://psa.gov.ph>

- 민족은 말레이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네그리토/인도네시아/중국/메스티조/모로 등 여러 종족 간 혼혈도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언어는 필리핀어(타갈로그어), 영어(공용어), 지방 토착 언어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종교는 로만가톨릭(81%), 기독교(11%), 화교(5.6%), 기타 종교 등으로 이루어짐
- 국가형태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입법부는 상원 24명과 하원 243명으로 구성된 양원제의 형태임

□ 나. 경제지표²⁾

- 명목 GDP는 376.796십억 달러(2019년)이며, 1인당 GDP는 3,485달러(2019년)임
- 교역 규모는 총 1,832억 8,129만 8,000달러(수출 703억 7,254만 9,000달러, 수입 1,129억 874만 9,000달러)(2019년)를 기록함
- 주요 교역품
 - 수출: 반도체, 전자제품, 기계류, 운송기기, 광물, 전선케이블류 등
 - 수입: 전자제품, 반도체, 운송기기, 석유류, 기계류, 철강제품 등

2) Securing The Future of Philippine Industries 홈페이지, 필리핀 통산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와 필리핀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s) 공동운영, <http://industry.gov.ph>;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View.do?setIdx=252&dataIdx=180043&searchNationCd=101080>; 한국무역협회(KITA), http://stat.kita.net/stat/istat/asean/AseanWholeList.screen?ctr_cd=PH

□ 다. 경제동향

1) 경제성장률

- 최근 2014년부터 5년간 6%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임. 2019년 5.9%(필리핀 통계청 PSA)를 달성하였지만, 2020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0.2%로 1998년 이후 최저를 기록함³⁾
- 경기 호황의 주요 동력으로는 수출 확대, 민간소비 활성화, 인구 증가, 인프라 사업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투자를 들 수 있음
- 그러나 취약한 제조업 기반, 교통 등 인프라 부족, 생산성 미흡, 불필요한 규제 및 관료주의(red tape)는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됨

2) 경제지표별 동향⁴⁾

- 2016년 상반기까지 낮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됐으나 국제유가 가격 인상으로 2016년 하반기부터는 상승세를 보임
 - 2018년 5월 기준 인플레이션율은 4.6%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2020년 4월 기준 인플레이션율은 2.2%를 기록함
- 2017년 필리핀 실업률은 5.7%, 불완전 고용률이 16.1%였으며, 2019년 10월 기준 필리핀 실업률은 4.5%, 불완전 고용률이 13%인 것으로 집계됨
 - 2016년까지 감소하던 실업률이 2017년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섬. 2018년 4월 기준 실업률은 5.5%로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완전 고용률은 17%로 오히려 악화함

3) 필리핀 통계청, <https://psa.gov.ph>

4) 필리핀 통계청, <https://psa.gov.ph>

- 서비스업 근로자 중 상당수가 비공식 고용상태임
 - 세계은행에 따르면 매년 110만 명의 노동인구 중 절반이 넘는 60만 명의 노동자가 저직능, 저임금의 비공식 고용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짐
 - 이마저도 제조·농업 등 고용창출산업의 미발달로 단순 서비스, 일용잡역 등에 종사하며,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 라. 농업 동향⁵⁾

1) 농업규모

- 2019년 농업의 총생산액은 1조 8,109억 1,200만 페소(약 374억 113만 달러)를 기록함. 농업 총생산액은 2018년에 비해 0.9% 증가함
- 필리핀 전체 토지면적 중 약 45%인 1,300만 헥타르가 농경지이고, 전체인구의 약 9.7%가 농업에 종사함
- 통계청 추산 2019년 GDP 대비 필리핀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2% 수준이며, 산업(30.5%)과 서비스업(59.9%) 대비 농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낮은 편임

2) 농업특성

- 주요 생산물은 쌀이며, 고온다습하고 풍부한 강수량으로 2~3모작이 가능하지만, 저장시설과 관개시설의 부족 등으로 쌀 생산성이 낮아 쌀을 수입하는 실정임
- 2019년 기준 농산물 생산량이 전체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 생산의 약 53.46%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가지며, 축산 약 18.11%, 어업 약 14.87%의 비중을 가짐

5) Business World, <https://www.bworldonline.com>; 필리핀 통계청, <https://psa.gov.ph>

3) 농산물

- 2019년 기준 농산물 총생산량은 약 8,3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1% 감소함
- 사탕수수(약 2,000만 톤), 벼(약 1,800만 톤), 코코넛(약 1,400만 톤), 바나나(약 900만 톤) 순으로 생산됨

4) 축산물

- 돼지가 전체 축산물 생산량의 약 81.6%를 차지하고 있음
- 소, 물소 등도 사육하고 있으나 돼지에 비해 비중이 매우 낮음

5) 수산물

- 2019년 기준 필리핀 수산물 총생산량은 4,415백만 톤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함
- 주요 어획품은 해조류, 밀크피쉬, 틸라피아, 가다랑어 등이며, 해조류가 1,500백만 톤으로 약 33.9%로 가장 많은 생산 비중을 차지함

□ 2. 한국과의 관계⁶⁾

| | |
|-------------|--|
| 계결협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필리핀 지식재산청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MOU)(2014.9.18.)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팜팡가 재난위험감축사업 차관공여 계약 (2013.10.17.) ▪ 한-필리핀 체육교류 협력 양해각서(MOU)(2013.10.17.) ▪ 한-필리핀 국방분야 협력 양해각서(MOU)(2013.10.17.) ▪ 한-필리핀 치안분야 협력 양해각서(MOU)(2013.9.10.) ▪ 한-필리핀 관세협력을 위한 합의록(2013.9.10.)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팜팡가지역 재난위험감축사업(2013.5.14.) ▪ 한-필리핀 경제 통상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2013.1. 17.)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억 달러 승인 할라우강 다목적댐 건설사업 (2012.8.10.) ▪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1~2013) 기본약정 (2011.11.11. 발효) ▪ 미국종합처리장 건립사업 시행 약정(2009.5.30.) ▪ 형사법 공조조약(2008.11.17. 발효) ▪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기본약정 (2007.12.21. 발효) 등 27건 |
|-------------|--|

▪ 교역규모

- 對 필리핀 수출: 1,210억 3,725만 4,000달러(2018년), 73억 6,534만 달러(2019년)
- 對 필리핀 수입: 35억 6,939만 6,000달러(2018년), 36억 5,800만 8,000달러(2019년)

6) 한국무역협회(KITA), http://stat.kita.net/stat/istat/asean/AseanWholeList.screen?ctr_cd=PH

- 주요 교역품

- 對 필리핀 수출: (2019년 기준) 집적회로 반도체(27억 986만 9,000달러), 휘발유(7억 8,301만 9,000달러), 경유(7억 2,239만 2,000달러), 동조가공품(2억 5,836만 3,000달러), 승용차(8,296만 5,000달러) 등
- 對 필리핀 수입: (2019년 기준) 집적회로 반도체(15억 6,373만 1,000달러), 동괴 및 스크랩(1억 5,133만 2,000달러), 과실류(2억 9,923만 8,000달러), 원유(8,258만 2,000달러) 등

- 교민⁷⁾

- 필리핀 현지 한국 교민: 8만 5,125여 명 (2019년 기준)

- 한-ASEAN FTA

-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은 2008년 1월, 투자협정은 2009년 6월, 서비스협정은 2009년 5월 발효
- 민감품목 관세율 조정
 - 일반 민감품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메리야스 편물, 오리, 고등어, 소시지, 신발류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필리핀은 2011년도까지는 MFN(최혜국관세율)을 적용해왔으나, 2012년도부터 조정된 AKFTA 세율을 적용함
 - 2016년부터 20~30%였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율이 5%로 완화되었으며, 그로 인해 국산 자동차의 현지 딜러 기업이 관세율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면서 승용차 판매가 2016년 기준 전년 대비 40% 상승하는 등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음
 - 초민감품목 그룹 B품목인 돼지, 닭, 돼지고기, 양배추, 마늘, 고구마,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제 피복재 및 의류 등은 20% 이내, 그룹 A품목인 플라스틱제 병, 플러그와 소켓 등은 50% 이내로 조정됨

7) 한국 외교부, http://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

- 민감품목으로 분류됐던 파종용 벼, 아자유, 포트랜드시멘트,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등은 일반품목으로 조정돼 2012년 1월부터 관세율 0%를 적용함
- 필리핀 정부는 일반 민감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2년-2015년 20% 이내, 2016년도부터 5% 이내, 초민감품목의 경우 2016년도부터 A그룹 50% 이내, B그룹 20% 이내로 인하한다는 내용의 AKFTA협정 이월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73/74)을 2012년 4월 25일 공식적으로 발표함. 이에 따라 일반 민감품목의 관세율이 2012년부터 20% 이내로 인하되어 시행됨

□ 3. 식품 관련 규정 및 기관

□ 가. 식품 관련 법률 체계

■ 식품안전법(Food Safety Act 2013, Republic Act No. 10611)

-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안전 규제 제도를 강화하고, 식품 혹은 식수에서 기인한 질병, 비위생, 유해물질, 표기 오류, 변질된 식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식품산업 진흥과 식품규제의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 국내 및 국제교역에서 건전한 규제 기반을 만들고 공정한 무역 관행의 준수를 통해 경제 발전을 지향함
- 이외에도 위해 정도 분석을 위한 과학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 자료가 축적되는 기간 내 예방 준칙 제공, Codex 등 국제식품안전규정의 적용 및 수정, 민간부문에 식품안전의 일차적 책임 준수 교육 등의 근거가 됨

식품의약품관리법(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ct of 2009, Republic Act No. 9711)

- 식품의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지위 및 권한, 식품안전 분석을 위한 연구시설과 각 세부 산하기관의 설치 및 기능 등을 뒷받침하는 법률
- 식품의약청의 검사, 허가, 감독, 건강관련제품의 등록 및 감독 등의 권한과 범위가 이 법률에 의해 뒷받침됨

농수산현대화법(Agriculture and Fisheries Modernization Act of 1997, Republic Act No. 8435)

- 농업 및 수산 부문의 현대화와 지역 개발을 위해 제정된 법률
- 빈곤 감소, 균등 발전, 식량 안보, 국제 경쟁력 제고, 지역의 지속적 발전, 농업 및 수산업 분야 소득 증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 제공
- 이 법에 근거하여 농수산물표준국(Bureau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Standards, BAFS)이 설립됨

식품영양강화법(Philippine Food Fortification Act of 2000, Republic Act No. 8976)

- 필리핀 국민의 영양 부족 문제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가공식품 및 식품에 영양을 강화하는 규정 제공
- 국내 생산 혹은 수입과 관계없이 필리핀 내부에서 유통 및 소비되는 모든 식품에 적용되며, 자발적 식품영양 강화와 의무적 식품영양 강화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분됨

- 자발적 식품영양강화 프로그램(Sangkap Pinoy Seal Program, SPSP)
 - 가공식품 및 식품이 보건부(DOH) 기준에 맞게 생산되었다는 것을 인증(seal)받는 프로그램
 - 이 인증을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이 영양이 강화된 식품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의무적 식품영양강화 프로그램
 - 다음과 같은 주식(staple)에 해당되는 식품은 보건부(DOH)와 식품의약청(FDA)의 기준에 의해 강제로 특정 성분이 강화되어야 함
 - * 철분 강화 쌀
 - * 비타민A와 철분 강화 밀가루
 - * 비타민A 강화 설탕
 - * 비타민A 강화 식용유
 - * 국가영양위원회 이사회(the Governing Board of the National Nutrition Council, NCC)에 의해 특정 영양성분이 강화된 기타 주식

소비자법(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Republic Act No. 7394)

- 소비자 권익 보호, 복지 증진 및 산업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세우기 위한 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영역에 대한 세부 내용을 포괄함
 - 식품,약품, 화장품 및 장비 : 공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 규제
 - 불량 식품, 식품 중 유독성 물질 한도
 - 위험물질 : 수입된 위험물질 규제, 물질의 신고 및 그 변형 형태 및 면제사유 설립
 - 상품 및 서비스 책임
 - 광고 및 판매홍보
 - 신용거래
 - 라벨 표시 및 적절한 포장
 - 상품 및 서비스 보증

□ 나. 식품관련 정부기관

- 필리핀에서 식품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시행하는 두 개의 주요기관은 다음과 같음
 - 보건부(DOH: Department of Health) 산하의 식품의약청(FDA)
 - 농업부(DA: 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의 농수산물표준국(BAFS: Bureau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Standards)

■ 식품의약청(FDA)

- 기존 식품의약국(BFAD, Bureau of Food and Drugs)이 식품의약청(FDA)으로 승격되면서 조직이 더 확장됨
- 가공식품, 의약, 화장품 및 의료장비와 관련된 각종 법률에 의거 가공식품의 안전을 책임짐
-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모든 포장식품, 약품 및 화장품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음. 따라서 모든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은 필리핀 식품의약청에 등록하여야 함
- 식품의약청은 부정 표시 및 유해물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매되거나 판매용으로 내놓은 모든 미등록 수입식품 및 의약품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농수산물표준국(BAFS)

- 기존의 명칭인 BAFPS(Bureau of Agricultural and Fisheries Product Standards)에서 명칭을 BAFS(Bureau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Standards)로 변경함
- 농수산현대화법에 근거하여 신선 농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농산물 및 수산물 원료의 품질 관리, 보관, 포장, 표시, 수입, 수출, 유통, 홍보 등의 분야에서 표준 제정 및 관장
 - 식품안전 및 무역의 표준 그리고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표준과의 조화 등에 대해서도 관여함

농업부(DA) 산하 기타 관련기관

식물산업국(BPI, Bureau of Plant Industry)

- 신선 과일 및 야채의 수입 규제 담당
- 모든 수입 과일 및 채소는 식물산업국의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서 검역 승인이 필요하며, 필리핀 수입자는 매 선적 시 검역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동물산업국(BAI, Bureau of Animal Industry)

- 가축 및 가금류 및 육류 가공품, 낙농품, 사료, 수의관련제품의 생산, 수입, 표시, 광고, 유통, 판매와 관련된 표준 규정 담당

국립축산검역원(NMIS, National Meat Inspection Service)

- 도축, 육가공, 사전/사후 도체 검사 및 감독 등을 담당하며, 수입 및 수출 육류 및 육류가공품의 사육, 도축, 가공 등이 적절한 시설과 환경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감독하는 기능을 가짐
-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신선, 냉장, 냉동 육류 및 가금류의 검사 담당

수산자원국(BFAR, Bureau of Fisheries & Aquatic Resour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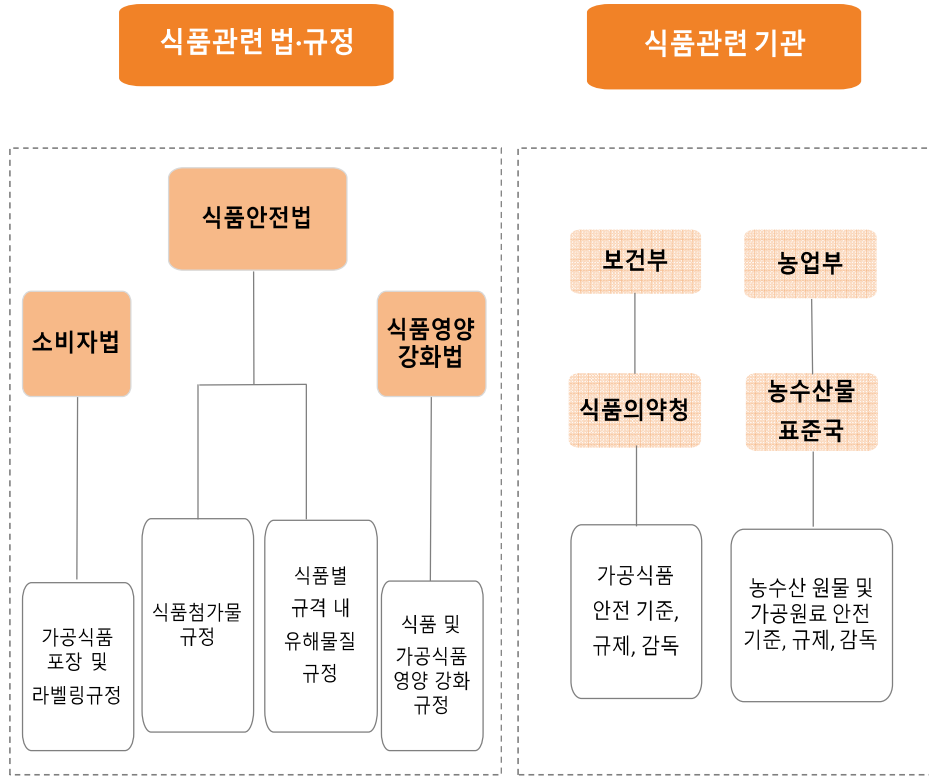
- 저장 및 가공 목적의 신선, 냉장, 냉동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수입 감독

국립낙농청(NDA, National Dairy Authority)

- 민간 낙농부문의 기술적 지원, 낙농산업 진흥 등 낙농부문 정책 수행

국립식량원(NFA, National Food Authority)

- 농업부(DA)의 산하기관으로 일반 쌀의 독점수입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옥수수의 수입에도 관여함
- 민간곡물상은 국립식량원이 발급한 수입허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고급 또는 특상 쌀을 수입할 수 있음



[그림 2-1] 필리핀 식품 관련 법·규정 및 관련 기관

□ 다.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규정

- 식품 규정은 미국 FDA 및 기타 국가의 유사기관에서 제정한 규정 사항과 CODEX 지침을 따름

■ 식품첨가물규정(Food Additive Regulation)

- 보건부(DOH) 산하의 식품의약품(FDA)의 전신인 식품의약품(BFAD)에 의해 규정이 만들어졌으며, 그 후 간혹 일부 개정이 이루어짐
- 배경, 용어 정의, 일반 지침, 식품첨가물 목록 형식, 향미물질, 식품첨가물 목록의 검토 및 개정, 부록 등으로 구성됨

■ 유해물질규정

- 농수산물표준국(BAFS)의 전신인 BAFPS에서 '식품과 사료의 오염물질 및 독소에 대한 일반 규정'을 규정함
 - 그러나 이 규정에는 가공식품이 포함되지 않고 대부분 농축수산물 원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
- 가공식품의 경우 유해물질규정은 별도로 제공되기보다는 식품별 기준규격에 유해물질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산발적으로 제공됨
 - 따라서 식품별 기준규격 중 제품 정의, 제품 유형, 위생, 유해물질 등의 내용을 추출하여 정리함



제 2 절. 가공식품 교역 현황

□ 1. 필리핀 식품시장 동향

□ 가. 식품 소비 특징

■ 식문화 특징

- 다양한 식문화 발달
 - 스페인과 미국의 지배 영향으로 서양음식 문화가 발달하였으며, 미국 통치하에 증가한 화교의 영향으로 중국음식 문화가 발달함

▪ 필리핀 식문화 특징

- 필리핀 국민은 달고, 맵고, 짜고, 신맛이 나는 자극적인 식품을 좋아하며, 튀기거나 볶은 기름진 음식을 주로 소비함. 이에 따라 조미료와 소스류의 소비가 높은 편이며, 비만 인구와 고혈압 환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정부 당국에서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 중임
- 채소류보다는 곡류와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식문화를 이어오고, 주로 쌀과 돼지고기를 소비함. 이외에도 닭고기를 많이 소비하고 서양식 식습관의 영향으로 빵과 밀가루 제품 소비도 많은 편임
- 가정 내 냉장시설 부족으로 인해 신선식품보다는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섭취가 용이한 가공식품을 주로 섭취하고 있으며, 라면과 통조림 식품의 매출이 많은 편임. 이외에도 신선 우유보다는 분유, 물보다는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을 주로 소비함

▪ 지역별 식문화 특징

- 북부지역 : 아열대 지역이며, 어업이 발달하여 식재료가 풍부함. 주로 생선이나 새우, 젓갈을 음식에 많이 사용하므로 타지역 음식보다 감칠맛이 있음
- 중부지역 : 도시지역으로 오랜 기간 스페인 및 미국의 영향을 받아 서양음식을 선호하는 편임. 단맛을 좋아하는 현지인들의 입맛을 고려하여 피자, 스파게티 등 패스트푸드도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단맛이 강함
- 남부지역 : 주변 동남아 국가의 영향을 받아 음식에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는 편임. 강황, 레몬그라스, 고추 등을 양념으로 많이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맛이 타지역 음식보다 자극적임

▪ 높은 식품 지출 비중

- 가구당 지출 중 약 37%를 식료품·비주류음료 구매에 사용하며 이는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하여 높은 편임
- 일반적으로 6인이 넘는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으나, 2000년대 이후 들어 점차 핵가족화가 이루어지고 1인 가구 수가 증가함

- 외식 활성화
 - 소득수준에 비해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고, 서구문화에 대한 높은 수요로 최근 비교적 깔끔하고 서비스 질이 높은 프랜차이즈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함

식품 소비 일반현황

- 식품 소비는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데, 주된 요인은 도시화의 가속화,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고용 증대, 중산층의 성장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의 증가, 인구의 70%가 50대 이하의 젊은 소비자층 구성 등을 들 수 있음
- 2000년대 이후 지방 농촌 거주자들의 도시이동현상에 따라 식품 소비패턴에 많은 변화가 발생함
 - 저소득층 소비자들의 이동으로 값싼 가공식품 위주의 소비가 많아지고, 외식매장에서 식사하는 경향이 증가함
- 필리핀 현지인들은 수입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비교적 적은 편이며,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임
- 높은 가공식품 비중
 - 열악한 물류시스템과 가정 내 냉장시설 부족으로 인해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섭취가 용이한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임
 - 생선과 육류제품이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데, 장기 보관이 가능한 가공처리 형태의 제품이 선호됨

최근 시장 변화

- 전자상거래의 성장
 - 국민의 평균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일 평균 10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함. 인터넷 사용 증가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식음료 구매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 설탕세 도입에 따른 저당제품 출시 증가
 - 설탕, 당류, 섭취 감소를 위해 필리핀 정부는 2018년부터 '청량음료세' 도입
 - 당류 함량을 줄인 제품들의 출시 증가가 잇따르고 있음
- 채식, 다이어트 식품
 - 최근 국민의 소득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채식 또는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인스턴트 면
 -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간단히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즉석면 수요가 증가함
 - 국제즉석라면협회에 따르면 필리핀은 2018년 기준 3,980백만 개의 즉석 면을 소비하였으며, 태국(3,460백만 개), 말레이시아(1,370백만 개), 캄보디아(330백만 개) 보다 높은 상황임

□ 나. 식품 시장 및 유통

■ 식품시장규모

- 2018년 필리핀 식품시장의 규모는 약 850억 달러임
 - 전체 GDP의 약 27%를 차지하며, 최근 3개년 간 8.2% 성장률을 보임
 - 2023년까지 연평균 8.5%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가처분 소득 증가와 인구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함

전체 유통시장 특징

- 소매유통 시장의 성장
 - 도시 계획화, 소비 증가, 경제 발전 등의 이유로 필리핀의 식료품 소매시장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임
 - 유통시장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규제완화로 100% 해외 자본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회사가 증가함
 - 국내외 유통업체들의 경쟁 증가로 인해 전반적인 필리핀 온·오프라인 유통시장 규모는 지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오프라인 중심의 소매/유통산업
 - 필리핀 소매업 매출의 대부분은 아직 오프라인 점포를 통해 발생함
 - 특히 주요 도시마다 대기업들이 건설한 쇼핑몰/쇼핑센터가 있어 소매유통의 구심점 역할을 함
 - 한국산 수입 소비재는 SM Mall, Robinsons Retail Group, Rustan Group of Cos 등의 대기업 쇼핑몰 및 유통매장과 한인 운영 슈퍼마켓에서 판매됨
 - 쇼핑몰 안에 입점한 슈퍼마켓에서는 식료품을 비롯하여 각종 생활소비재, 동물사료, 일반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이 판매됨
- 온라인 시장의 성장
 - 스마트폰 및 인터넷 보급률의 증가에 따라 필리핀 내 전자상거래 시장매출이 증가함
 -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제품 홍보 효과가 높아지고, 젊은 소비층, 전문직 소비층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을 통한 판매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 특히 모바일 인구 증가, 인터넷 속도 향상 등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Lazada, Shopee, Zalora, Metro Deal, Globe Online Shop 등의 온라인 쇼핑몰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2018년 기준 8억 4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연간 12%의 성장률 전망됨
 - 최근 농식품, 수산물, 즉석제품까지 다양한 품목군의 입점이 확대됨
- 필리핀은 신용카드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거래의 80% 이상이 배달 시 현금을 지불하는 COD(Cash on Delivery) 방식으로 온라인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므로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대부분 상품은 수입 상품임

주요 유통채널

유통채널 개관

- 필리핀 내 식음료 구매는 약 70%가 전통적인 유통채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유통매장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옮겨가는 추세임
 - 전체 유통채널 매출에서 아직 전통적인 유통망 비중이 높는데, 특히 신선과일, 채소 등의 구매 점유율이 높음
 - 소비자들의 품질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현대적인 유통망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음
- 전통적 유통채널
 - 전통적인 유통망은 주로 쌀, 생선, 해산물, 과일, 채소 등의 신선농산물을 판매하는 소규모 형태임
 - 필리핀 인구 대다수가 소득이 낮으므로, 구멍가게와 같은 사리-사리(Sari-Sari) 점포가 필리핀 곳곳에 분포되어 있음
 -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구멍가게인 사리-사리는 저가 상품을 주로 취급하며, 소포장 일회용 상품(소득 수준으로 인해 대량구매 어려움)을 중심으로 운영됨

| 슈퍼마켓 | 편의점 | 미니마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음료/생필품 주로 판매 • 쇼핑몰, 백화점 및 상업단지 내 위치 • 전체 유통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 • 자본력에 바탕을 둔 브랜드 슈퍼마켓 형태의 유통매장 수가 증가하는 추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24시간 운영 • 주로 콘도, 주유소, 교차로 근처에 위치 • 즉석식품 포함 각종 식품 및 생필품 취급 • 내수 소비 확대, 소득수준 향상, 구매 편의성 및 접근성, 쾌적한 환경 등의 요인으로 시장 규모 점차 증가 • 소득수준이 높은 중산층이 선호하며,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현대적 유통시설 •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중간 규모(약 300~400m²) • 일반적으로 기초 생활용품과 식품류 판매 • 대형 유통체인이 주로 진출 • 일반식품, 신선육류/채소와 음식도 제공하는 식음료 전문 취급 매장 |
| 하이퍼마켓 | Sari-Sari 상점 | Wet Market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화점 및 슈퍼마켓의 혼합 형태 • 약 2,500m² 이상 면적 • 비식품(가구, 가전제품 및 의류 등) 비중이 약 3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점보다 작은 규모로 한 가정이 소유하고 관리 • 쌀, 식용유, 설탕과 같은 필수품 포함 다양한 제품 취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신선 육류, 생선, 야채, 과일 등 자국 농산물 판매 |

[그림 2-2] 필리핀 주요 소매유통채널

▪ 현대적 유통채널

- 현대적인 유통시설은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창고형 매장), 미니마트, 편의점 등으로 구분함
- 이 중 슈퍼마켓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이퍼마켓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 편의점 등 현대적 시설을 갖춘 소매유통시설은 Metro 마닐라 일대 지역부터 시작해서 점차 대도시로 퍼져 나가고 있으며, 현재는 중소도시 지역으로 점차 매장을 늘려가고 있음
- 필리핀은 쇼핑센터가 발달하여 쇼핑센터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쇼핑센터 내에 주요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이 입점해 있는 경우가 많음
- 현대적 유통시설은 전통적인 소매점보다 청결상태와 매장 규모, 구비제품 종류 등 여러 면에서 앞서고 있어 소비자 선호가 높아짐



[그림 2-3] 2018년 매출액 기준 Top5 슈퍼마켓과 편의점⁸⁾

□ 2. 한국 식품 수출 동향 및 전망

□ 가. 한국 식품 유통 현황

■ 한국과 한국식품에 대한 이미지

- 한류열풍으로 한국식품에 관한 관심 증가 및 고급 이미지 구축
 - 구매력이 높은 20~40대의 한류 관심 지속 증가
- 필리핀은 한인 거주 및 한인 관광객이 많은 국가로, 신규제품 등 시장 초기 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산과 차별화된 제품 품질 수준과 일본산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가격경쟁력 보유

8) Gain Global Agricultural Information Network, Exporter Guide, Philippines, RP2019-0009, December 17, 2019

■ 우리나라 업체의 진출

- 우리나라 기업은 직접 투자 혹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른 간접 진출 등의 방식으로 필리핀 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 미스터피자, 교촌치킨, BBQ 치킨, 뚜레쥬르 등 외식 분야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현지 외식업체와 계약 체결을 통해 로열티를 받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방식을 통해 진출함
- 더 페이스샵, 에뛰드, 네이처리퍼블릭, 미샤, 스킨푸드 같은 화장품 기업은 현지 대형 쇼핑몰에 입점하는 형태로 진출함

■ 한국 식품 유통 현황

- 한국식품은 주로 한인이 소유하고 있는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한인 수입업체는 주로 자사의 슈퍼마켓 체인 또는 한국 슈퍼마켓으로 한국식품을 공급함
- 현지 로컬마켓(대형유통업체)으로 유통하는 업체는 주로 중국계 필리핀 수입업체임
- 따라서 한국 업체는 주로 한인 커뮤니티를 마케팅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로컬 수입업체는 필리핀의 한국 식품 수요를 충족시킴
 - 소비자들은 다른 종류의 구매채널에 대해서 특별히 차별화하고 있지 않음. 구매채널 중 특정 채널의 선호라기보다는 접근성이 주된 이용 요인으로 작용함
- 한국 식품 중 판매량 면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공식품은 아이스크림, 면류, 음료류, 소스류, 과자류 등임
 - 한국의 아이스크림, 라면, 소스류의 품질, 포장, 안전위생 등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임
 - 반면 한국식품은 다소 비싼 제품이라는 인식이 있음. 따라서 가격에 민감한 필리핀 소비자에게 지속적인 구매 장벽이 될 수도 있음

□ 나. 한국 식품 수출 동향

-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對 필리핀 식품 수출입 현황이 [표 2-1]에 제시되어 있음
- 수출은 물량과 금액 기준으로 2016년부터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수입은 2018년까지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2019년에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2020년은 10월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힘든 상황임. 그러나 10월까지의 자료임에도 수출이 이미 2019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표 2-1] 최근 5년간 對 필리핀 식품 수출입 현황

단위 : 톤, 천 달러

| 년도 | 수출 | | 수입 | |
|------|---------|---------|---------|---------|
| | 증량 | 금액 | 증량 | 금액 |
| 2020 | 84.446 | 157.621 | 381.766 | 369.503 |
| 2019 | 89.226 | 157.216 | 550.555 | 527.276 |
| 2018 | 82.904 | 162.132 | 716.360 | 582.870 |
| 2017 | 143.630 | 166.917 | 671.630 | 557.175 |
| 2016 | 155.425 | 167.202 | 633.628 | 550.640 |

출처 : www.kati.net (<http://www.kati.net/nation/basisInfo.do?lcdCode=MD192>)(기준 : 2020. 10)

- 對 필리핀 농식품 수출액이 [표 2-2]에 제시됨
- 필리핀 농식품 수출 규모는 2016년까지 증가하였다가 2017년부터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금액 측면에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중 가장 많이 수출이 늘어나는 부문은 임산물로 나타남
- 2017년 이후 농식품 수출액이 줄어든 배경에는 2017년도 수산물 그리고 2018년과 2019년 농산물 수출액의 감소가 자리 잡고 있음

[표 2-2] 최근 5년간 對 필리핀 농식품수출액 현황

단위 : 천 달러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농산물 | 124,112 | 136,000 | 142,019 | 117,614 | 117,585 |
| 축산물 | 4,550 | 3,525 | 3,755 | 4,249 | 6,867 |
| 임산물 | 3,756 | 3,698 | 4,437 | 8,482 | 8,859 |
| 수산물 | 27,162 | 23,977 | 16,704 | 31,787 | 23,904 |
| 합계 | 159,582 | 167,202 | 166,917 | 162,132 | 157,216 |

출처 : www.kati.net (<https://www.kati.net/statistics/monthlyPerformanceByNation.do>)

- 對 필리핀 주요 부류별 가공식품 수출현황이 [표 2-3]에 제시되어 있음
 - 금액 기준으로 2018년 대비 2019년에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군은 음료, 소스류, 과자류, 면류이며, 반면 연초류와 주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2-3] 對 필리핀 주요 부류별 가공식품 수출 동향

단위 : 톤, 천 달러, %

| 구분 | 2018 (A) | | 2019 (B) | | 증감률 (B-A)/A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연초류 | 934.7 | 7,857.2 | 187.7 | 2,539.9 | △79.9 | △67.7 |
| 과자류 | 2,222.9 | 11,895.7 | 2,701.8 | 13,339.1 | 21.5 | 12.1 |
| 면 류 | 6,754.6 | 16,503.1 | 7,776.6 | 19,763.2 | 15.1 | 19.8 |
| 주 류 | 5,287.5 | 8,189 | 4,731 | 7,470.5 | △10.5 | △8.8 |
| 음 료 | 3,727 | 3,462 | 5,274 | 5,011 | 41.5 | 44.8 |
| 소스류 | 3,878.6 | 11,720.1 | 4,751.5 | 12,543.3 | 22.5 | 7.0 |

출처 : www.kati.net (<https://www.kati.net/statistics/monthlyPerformanceByNation.do>)

- 최근 3년간 수출 품목 중 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Top5 품목이 [표 2-4]에 제시되어 있음
- 2019년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혼합조제품이며, 다음으로 라면, 참치, 곡류조제품, 아이스크림으로 나타남
- 2020년 10월 기준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은 라면이고, 전년도 1위였던 혼합조제품이 2위가 되었으며, 2018년과 2019년에 순위에 없었던 김과 리큐르가 4위와 5위로 액수가 늘어남

[표 2-4] 최근 3년간 對 필리핀 식품 수출 Top5 품목 목록

단위 : 톤, 천 달러

| 구분 | 2018 | | 구분 | 2019 | | 구분 | 2020 | |
|-----------|--------|--------|-----------|--------|--------|-----------|-------|--------|
| | 증량 | 금액 | | 증량 | 금액 | | 증량 | 금액 |
| 참치 | 13.769 | 22.426 | 혼합 조제품 | 5.410 | 22.015 | 라면 | 5,985 | 20,026 |
| 혼합 조제품 | 4.598 | 21.851 | 라면 | 4.251 | 14.436 | 혼합 조제품 | 5,296 | 18,044 |
| 라면 | 3.451 | 12.093 | 참치 | 10.672 | 11.949 | 참치 | 9,004 | 12,019 |
| 비스킷 | 740 | 6.166 | 곡류 조제품 | 1,586 | 5.324 | 김 | 412 | 7,953 |
| 기타 소소류 | 1.554 | 5.006 | 아이스 크림 | 1.541 | 5.100 | 리큐르 | 5,066 | 7,625 |

출처 : www.kati.net (<http://www.kati.net/nation/basisInfo.do?lcdCode=MD192>)(기준, 2020.10)



제 3 절. 수입식품 관리제도

□ 1. 수입 제도

□ 가. 수입규제 개관

- 필리핀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함
- 민감품목과 고도 민감품목으로 분류된 농산물 분야를 제외하고는 수입규제와 관련된 사안이 많지는 않은 편임

- 농업부문에서 취해지고 있는 보호주의 조치로는 고율관세, 쿼터 및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하며, 쌀에 대한 총량규제, 설탕 생산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규제, 쌀 및 옥수수 등에 대한 가격지지정책 등이 주요한 내용임
-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최소시장접근물량(MAV: Minimum Access Volume) 정책에 의거한 쿼터 내 관세율을 부과함
 - 설탕(사탕수수)에 가장 높은 50-65%의 관세를 부과하며, 쌀은 35-50%, 가공류 식품, 감자, 옥수수도 관세율이 40%에 달할 뿐만 아니라 마늘, 양배추, 고구마, 돼지고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농·축산물이 대상이 됨
- 이 밖에도 세이프가드(Safeguards), 상계관세(Countervailing), 반덤핑 조치(Anti-dumping) 등의 비관세장벽, 라벨링 등의 기술장벽(TBT), 광범위한 외국인투자 규제, 세관장벽 등의 다양한 수입규제 혹은 수입제한조치가 존재함
- 이에 더하여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법처리 절차에서의 투명성 결여와 같은 합법적 상거래를 가로막는 관행이 더해져 기업활동에 제약이 됨

□ 나. 수입규제 품목

- 필리핀에서의 수입통관은 수입허가품목, 수입제한품목, 수입금지품목으로 분류됨
- 수입자는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산하 수입서비스국(BIS, Bureau of Import Service)의 홈페이지를 통해 필리핀의 수입통관절차 및 규제 내용을 확인해야 함
- 이를 통해 사전 수입허가 취득 필요 혹은 수입규제/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규제 품목일 경우 해당 정부 기관의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수입허가 취득 품목

| | |
|--------------------|---|
| 규제 대상품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옥수수 → 국립식량원(NFA) ▪ 양파, 마늘, 감자, 양배추(종자용) → 농업부(DA) 식물산업국(BPI) ▪ 모든 건강제품(보조식품, 의약품, 화장품, 가정위험물질/살충제, 의료용품 및 진단시약 등) → 식품의약청(FDA) ▪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되는 농산물 → 국립식량원(NFA), 농업부(DA) 동물산업국(BAI) ▪ 옥수수, 가금류/돈육 및 그 제품, 쇠고기를 제외한 육류 및 그 제품 → 국립식량원(NFA), 농업부(DA) 동물산업국(BAI) ▪ 신선과일, 채소류 → 농업부(DA) 식물산업국(BPI) ▪ 신선 및 냉동 어류 조개류 → 농업부(DA) 수산자원국(BFAR) ▪ 동물용 사료 → 농업부(DA) 동물산업국(BAI) ▪ 가공식품류 및 약품 → 식품의약청(FDA) ▪ 사탕수수함유 설탕 → 농업부(DA) 설탕관리청(SRA, Sugar Regulatory Administration) |
|--------------------|---|

수입쿼터

- 공공법 650조(Republic Act No. 650)에 따라 아래에 제시된 제품들은 수입쿼터가 지정되어 있으며, 정부로부터 수입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입면허(Customs Accreditation Secretariat, CAS)를 받을 수 있음
 - 쌀, 밀
 - 통조림 생선,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 통조림 우유
 - 소고기, 소시지 통조림, 콘드비프(절인 소고기), 냉동소고기

다. 식품수입 관련기관 및 법령

수입서비스 관련기관

통상산업부(DTI) 산하 수입서비스국(BIS)

- 수입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수입규제품목/민감품목 등의 수입절차를 관리하며 덤핑이나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조사를 담당함
- 자율수입품목의 수입량(import level) 및 가격 관리, 수입량의 예측 및 통계 분석, 필리핀 관세 체계 분석, 수입거래 관리 등을 담당
- 무역구제에 대한 결정 및 해당 물품 관련 수출업자 지원
- 수입 관련 데이터 생성, 연간 필리핀 수입에 대한 보고, 수입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
- 수입물품 가격 입증 및 수출거래 가치에 대한 정보 관리
- 필리핀 관세청 및 각 산업부문과 협력하여 계정 분류 오류 및 가격 저평가(undervaluation) 관리
- 외국의 물품 공급자 및 수입자의 이익제기 사항에 대한 관리

관세 관련기관

재무부(DOF, Department of Finance) 산하 관세청(BOC, Bureau of Customs)

-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및 제세의 징수를 비롯하여 각종 화물의 입출항 관리, 밀수행위의 방지, 수출 산업의 지원, 필리핀 관세법의 적용, 국제 무역상의 편의 등의 세입 업무 담당
- 관세청장을 중심으로 총무부, 조정·감사부, 수납·감독부, 정보·집행부, 정보시스템 및 기술관리부 등의 중앙 부처와 행정구역별 15개 지역 세관(Collecting Districts)으로 구성됨

■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 of the Philippines, TC)

- 필리핀의 행정 및 입법기관을 대상으로 관세 및 관련 주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필리핀의 각 협정별 관세율 정보 등을 제공함
- 관세법 및 세관법 집행 및 관리
- 관세정책 개발 및 관련기관에 자문 제공
- 덤핑 및 보조금과 같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 및 심의
-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하여 조사하고 관련 정부기관에 자문 제공

■ 재무부(DOF) 산하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

- 필리핀 정부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금 징수와 관련된 기관
- 조세, 수수료, 요금 등의 각종 세금을 징수하며, 조세법에 따라 세금 징수에 대한 관리 감독 실시
- 필리핀에서 수입하려면 국세청(BIR)에 기업정보와 수입면허 (CAS)를 등록해야 함

■ 식품 규정 관련기관

■ 보건부(DOH) 산하 식품의약품청(FDA)

-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모든 포장식품, 약품 및 화장품은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DA)에 등록하여야 함

■ 농업부(DA) 산하 식물산업국(BPI)

- 모든 과일 및 채소 수입자는 매 선적 시 식물산업국에 검역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농업부(DA) 산하 동물산업국(BAI)

-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육류 및 육류 가공품, 낙농품, 사료, 수의관련제품은 동물산업국의 규정을 확인해야 함

농업부(DA) 산하 수산자원국(BFAR)

-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저장 및 가공 목적의 신선, 냉장, 냉동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수산자원국의 규정을 확인해야 함

농업부(DA) 산하 국립식량원(NFA)

- 민간곡물상은 국립식량원이 발급한 수입허가가 있어야만 고급 또는 특상 쌀을 수입할 수 있음

수입관련 법령체계

- 관세 및 세관법(Tariff and Customs Code of the Philippines, Republic Act No. 1937)
 - 관세청의 역할, 범위, 권한 및 관세항목에 대한 규정
- 식품안전법(Food Safety Act 2013, Republic Act No. 10611)
 - 국내 및 국제교역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 규정, 식품 질병, 비위생, 유해물질, 표기오류, 변질 등의 규제
- 식품의약품관리법(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ct of 2009, Republic Act No. 9711)
 - 무역에 있어서 식품의약품청(FDA)의 검사, 허가, 감독, 건강관련제품의 등록 및 감독 등의 권한과 범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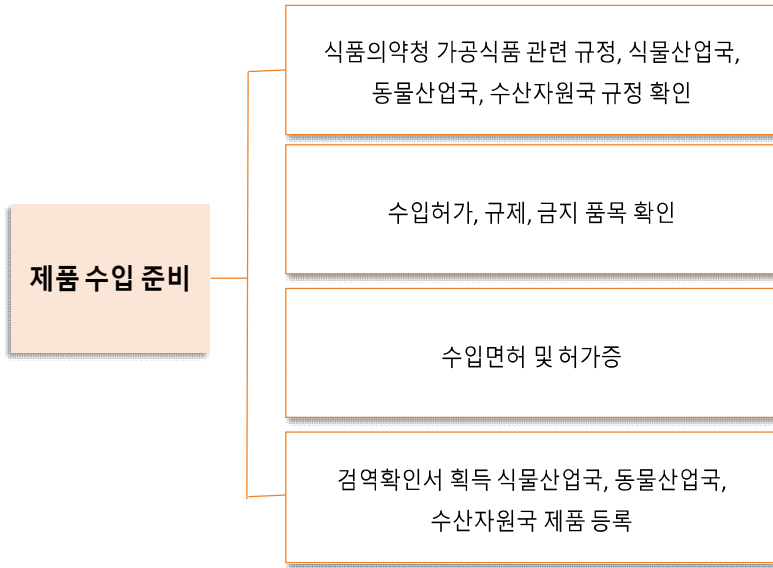
□ 2. 수입 통관 절차

- 가공식품 수입을 위한 단계는 ① 수입 신고 전 준비 → ② 수입 신고 → ③ 심사 및 검사 → ④ 관세 납부 → ⑤ 신고 수리 및 물품 반출의 5단계로 구분함

□ 가. 수입 신고 전 준비



- 아래 [그림 2-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품 수입 준비 단계는 식품의약품
가공식품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식물산업국 과일 및 채소 규정, 동물산업국
육류 및 육류가공품 규정, 수산자원국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규정을 확인하여야 함
- 다음으로 수입허가, 규제, 금지 품목을 확인하고, 수입면허와 허가증을 미리
준비하여야 함
- 검역확인서를 획득하고, 필요시 식품산업국, 동물산업국, 수산자원국에 제품을
등록하여야 함



[그림 2-4] 제품 수입 준비 단계

가공식품 수입 준비 서류

수입 적합여부 확인

- 해당 물품의 허가/규제/금지품목 해당 여부 및 규제에 대해 수입서비스국(BIS)을 통해 사전 확인 필요

수입면허(Customs Accreditation Secretariat, CAS)

- 수입자는 필리핀 국세청(BIR)의 고객등록시스템(Client Profile Registration System, CPRS)에 기업정보를 등록하고 수입면허(CAS)를 획득해야 함
- 수입면허(CAS)는 필리핀 재무부가 발급을 담당하며,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증권거래위원회(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SEC)의 법인등기증, 재무제표, 소득세 납부실적, 각종 유틸리티 청구서 등을 제출해야 함

- 필리핀에 신규 진출하는 업체 중 한국 및 제3국과 수출입 업무를 동반하는 기업은 수입면허(CAS)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수입면허등록 기간을 고려하여 수출입 일정을 잡아야 함
 - 수입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되어야 함
- 수입면허 등록이 모든 품목 수출입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특정 품목은 필리핀의 해당 주무부처로부터 별도의 사전 수출입 승인을 받아야 함(곡물, 코코넛 수산물, 의약품, 식음료, 화장품, 광물 등)
- 또한, 수입자 면허 취득에 대해 2014년부터 바뀐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해야 하며 과거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까다롭게 서류를 검사함
- 필리핀 관세청은 2014년 2월 수입면허 취득절차 변경에 대한 행정명령 (Revenue Memorandum Order 04-0214)을 발표함
 - 수입면허를 관세청(BOC)과 국세청(BIR) 모두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함
 - 관련 3개 부처(SEC, BIR, BOC)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고 절차 변경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2016년 이후 상황이 조금씩 개선 중임

■ 영업허가증(License to Operate, LTO)

- 수출국가에서 가공식품을 발송하기 전에 필리핀 현지 수입업체는 식품의약품청(FDA)에서 영업허가증(LTO; Administrative Order 2016-003 FDA Circular 2016-004) 번호를 부여받아야 함⁹⁾
 - LTO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후 갱신된 LTO는 5년간 유효함
 - 식품의약품청(FDA)은 식품의 '위험도 분류'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하며, 고위험도(high risk)로 분류된 식품업체는 우선순위로 검사를 진행하게 됨

9) 영업허가증(License to Operate, LTO)과 상품등록인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에 대한 절차가 [부록 2]에 제시되어 있음

▣ 상품등록인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

- 가공식품은 시장 판매에 앞서 필리핀 식품의약청(FDA)에 제품을 등록해야 하며 별도의 식품 인증은 없음
 - 상품등록인증서(CPR)는 초기 수입 이전에 발급받아 수입세관에 제출해야 함
 - 원물 상태에 가깝거나 원료로 사용되는 1차 가공품의 경우 식물산업국, 동물산업국, 수산자원국의 규정을 살펴봐야 함
 - 제품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제품의 기술, 영양, 의학, 건강, 위생/검역에 관한 서류를 같이 제출하므로, 제품의 안전과 기능에 대한 평가가 제품의 등록과정에서 이루어짐

▣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수출국의 규정 기관에서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수반해야 함
 - 위생증명서는 입국 시 통관 및 상품의 수량 검사를 돕는 영업허가증(LTO)과 상품등록인증서(CPR)와 함께 제출해야 함
 - 항구, 공항, 선박, 항공 등에서 식품을 운송 및 배달하거나 식품을 다루는 담당자는 매년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식품별 관련기관, 관련법률, 준비서류 및 절차 확인

- 식품별로 관련기관, 관련법률, 준비서류 및 절차를 필리핀 국립무역정보저장소 (Philippine National Trade Repository, PNT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 기관은 국내외 관련 규정을 포괄하여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함
 - 1) pntr.gov.ph 접속 → 상단 메뉴 중 [Commodity Search] → [Commodity Browse]
 - 식품별 관련기관, 추가서류, 절차를 확인하는 예시가 [부록 3]에 제시되어 있음

□ 나. 수입 신고 단계



■ 수입 신고 개요

- 필리핀 정부부처가 연계된 단일통관창구(National Single Window)를 통해 수입 신고를 마쳐야 함. 수입통관 서류 및 요건을 온라인으로 일괄 제출할 수 있음. 세관 시스템에 수입화물 정보를 입력하며 출력한 후 수입통관을 진행함

■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및 품목별 추가서류

- 1) 필수서류 : 선하증권, 화물운송장, 상업송장, 견적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
- 2) 추가서류 : 수입규제품목 관련 라이선스, 품질인증마크/품목별 인증 등

■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 발급기관 : 화주와 선박회사 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
- 제출기관 : 운송인에게 제출
- 표기언어 : 영문
- 선하증권은 화주와 선사 간에 체결한 해상운송계약에 의거해 선사가 특정 화물을 영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임. 또한 도착항에서 수하인이 그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기도 함

▣ 화물운송장(Way Bill)

- 발급기관 : 송하인이 운송인의 청구에 따라 발행
- 제출기관 : 운송인에게 제출
- 표기언어 : 영문
- 화물운송장은 화물 운송과 관련된 세부 정보 및 지침을 제공하는 운송업체가 발행한 문서임. 일반적으로 위탁자 및 수탁자 이름, 위탁 출발지, 목적지 및 경로가 표시됨. 대부분의 화물 운송업자와 트럭 운송회사는 자체 운송장을 사용함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C/I)

- 발급기관 : 수출자
- 제출기관 : 수입자
- 표기언어 : 영문
- 상업송장은 판매자가 매매계약 이월 사실을 기재해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문서로 계약의 이월을 입증하는 자료인 만큼 수입통관에 있어 매우 중요함
 - 필수 기재사항은 판매자 정보, 구매자 정보, 거래 날짜, 제품 내역, 지불 방식, 운송 방식, 양측 서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만약 판매자의 과실로 구매 업체명을 잘못 기입해 수입면허 취득 업체명단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현지 세관으로부터 제재를 당할 수 있음

■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 발급기관 : 수출자
- 제출기관 : 수입자
- 표기언어 : 영문
- 일종의 견적서로 수입 허가, 외화 배정 등을 받기 위한 수입상의 요청에 의해 수출자가 작성. 'Free Offer'로 송장상 표시된 물품가격 등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음. 수입상의 신용장 개설을 위해 편의상 형식을 갖추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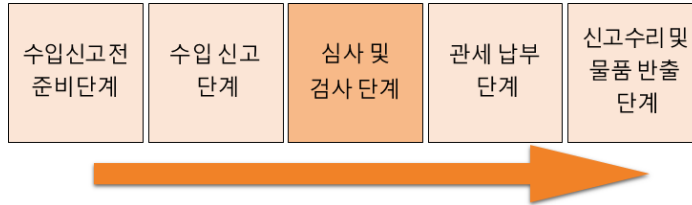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L)

- 발급기관 : 수출자
- 제출기관 : 수입자
- 표기언어 : 영문
- 포장명세서는 선적화물의 포장 및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포장의 일련번호를 기재한 문서를 칭함
 - 상업송장과 마찬가지로 실제 포장 및 무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관에서 꼬투리 잡아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음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 발급기관 : 상공회의소와 세관
- 제출기관 : 수입세관
- 표기언어 : 영문
-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록 4]에 제시되어 있음

다. 심사 및 검사 단계



수입업체 구분

- 필리핀은 수입업체를 Super Green Lane(SGL), Green Lane(GL), Yellow Lane(YL), Red Lane(RL)으로 구분해 상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함
- SGL은 필리핀 500대 기업의 수입물품 및 경제자유구역청(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에 등록된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화물 도착 전에 수입업체가 전자서류로 통관신고를 하고, 도착 즉시 서류 및 실물검사 없이 통관시킴
 - 경제자유구역청(PEZA) 기업의 경우 수입통관절차 없이 컨테이너를 세관으로부터 인수받을 수 있음. 화물이 기업창고에 도착하면 관세청 파견직원이 방문해 재고수량 및 가격을 조사하고 이상 여부를 점검한 후 통관이 완료됨. 이는 특별히 PEZA 입주기업을 위한 필리핀 정부의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음
- GL은 양호한 수입기록을 가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물 및 서류검사 없이 통관되나, 관세청의 사후 회계조사를 받게 됨
- YL은 신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실물 및 서류검사가 행해질 수도 있음
- RL은 불량한 수입기록을 가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집중적인 실물 및 서류검사의 대상이 됨
- 2010년 7월 이후 관세청은 밀수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YL의 운영을 중지함

통관의 종류

■ 약식통관

- 약식통관은 개인용 물품 배송에 한하여 가능하며 상업용 제품배송은 정식통관을 거쳐야 함
 - 이삿짐으로 분류되어 까다로운 절차 없이 통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컨테이너 콘솔기간이 약 2~3주 소요되기 때문에 선박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 배송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이 단점임
 - 또한, 분실에 대한 물류업체의 책임이 없으며, 고가품이더라도 정식으로 신고한 제품이 아니므로 보상받을 수 없음. 상업용 제품을 개인용 물품으로 둔갑하여 배송하려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정식통관

- 수입업체는 화물을 실은 선박/항공기 도착 후 5일째 근무일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기한까지 수입품의 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함
- 동 기간 내 반출 신청을 하지 않고 세관의 별도지체허락(Lay Order)이 없는 경우 그 수입품은 일반주문상품(General Order Merchandise)으로 취급되어 소유자 또는 수하인의 위험 및 경비부담 아래 지정된 창고에 보관됨
- 반출허가 신청은 선박/항공기 도착 전(화물의 수입 전)에도 할 수 있음
- 세관에 추정관세를 납부하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통관이 허용됨. 이후 세관은 납부세액의 정확성 여부(Liquidation)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됨

▣ 우편통관

- 해외로부터 소포를 받을 시 필리핀에서는 주로 EMS, Fedex, DHL을 사용함
- 현지 관세법 제 100조에 따라 수입되는 모든 물건은 관할 세관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함
- 필리핀은 한국에 비해 세관 적발율이 매우 높은 편이며, 적발 기준도 다소 불투명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수입자의 관세비용 부담이 큰 편임
- 우편통관 시 관세 측정은 제품값과 운송비를 합산해 관세와 부가세를 적용하는 방식인데, 제품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 시장평균가를 적용한 후 측정함
- 제품 가격 500달러 또는 무게 100kg 이하는 개인용에 해당하며, 그 이상은 상업용에 해당함. 수입면허 없이 상업용 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입할 수 없음

▣ 항공 통관과 해상 통관의 유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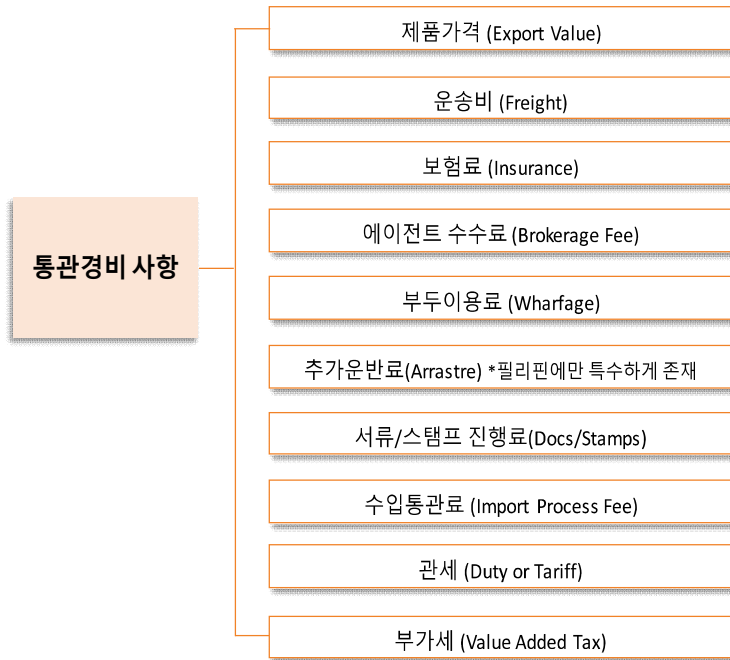
- 1) 항공의 경우, Front Door(Day time 통관)와 Back Door(Night time 통관)로 구분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Back Door 통관(저녁 7시부터 시작)만 가능함
- 2) 해상의 경우 최근에는 항구적체가 비교적 완화되어 1~3일이면 통관할 수 있다고 하나 예외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함

▣ 물품검사 및 보류/압류

- 화물 도착 전에 수입승인, 관세 및 수수료 납부 가능
 - 1) 지정 검사기관 검사를 마친 수입자는 화물이 필리핀에 도착하기 전 화물 수입승인 획득과 관세 및 수수료 납부가 가능함
 - 2) 단, 이를 위해서는 수입화물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설명서, 화물 수입가격, 운임, 보험 정보가 명시된 인보이스, B/L 등이 갖춰져야 함
 - 3) 화물이 필리핀 항구에 도착하면 세관은 선적 전 검사서, 관세 및 수수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 후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하게 됨

- 선적 전 검사확인서가 없는 경우, 도착항에서 포괄검사 실시
 - 1)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선적 전 검사확인서(Load Port Survey Report)를 구비하지 못한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검사 감독위원회(Committee for Accreditation of Cargo Surveying Companies, CACSC)가 인정한 검사기관이 도착항에서 포괄검사(화물에 대한 질량과 품질, 등급, 가격 등 검사)를 실시하며, 관계자들의 확인 및 관세, 수수료 납부를 완료해야 함
 - 2) 납부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 하역허가서가 발급되지 않고 이 기간에 발생한 보관료 등 일체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해야 함
 - 3) 선적 전 검사제도 관련 필리핀 수입자는 이 규정 발효 사실을 수출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고, 수출자는 인근의 CACSC인정 검사기관에 접촉하여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일반적으로 물품검사는 세관 수입통관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이루어짐. 현지 관세청에 전산화가 도입된 이후부터 컨테이너 전용 엑스레이(X-ray)를 사용해 검사하며, 실제 컨테이너 내용물과 수입자의 포장명세서(Packing List)가 차이가 있을 시 세관직원이 물품을 직접 조사하는 단계를 거침

통관경비



[그림 2-5] 필리핀 통관경비 사항

통관절차 안내 및 문의

- 통관절차 안내 및 세부사항은 필리핀 관세청 고객센터에 문의할 수 있음
 - 필리핀 관세청(Bureau of Customs)
 - * 전화: +63-2-705-6052, 6057
 - * 이메일: helpdesk2@customs.gov.ph, commissionerboc@gmail.com, ocompacd@gmail.com
 - * 홈페이지: <http://customs.gov.ph>

라. 관세 납부 단계



관세 개요

▶ 상품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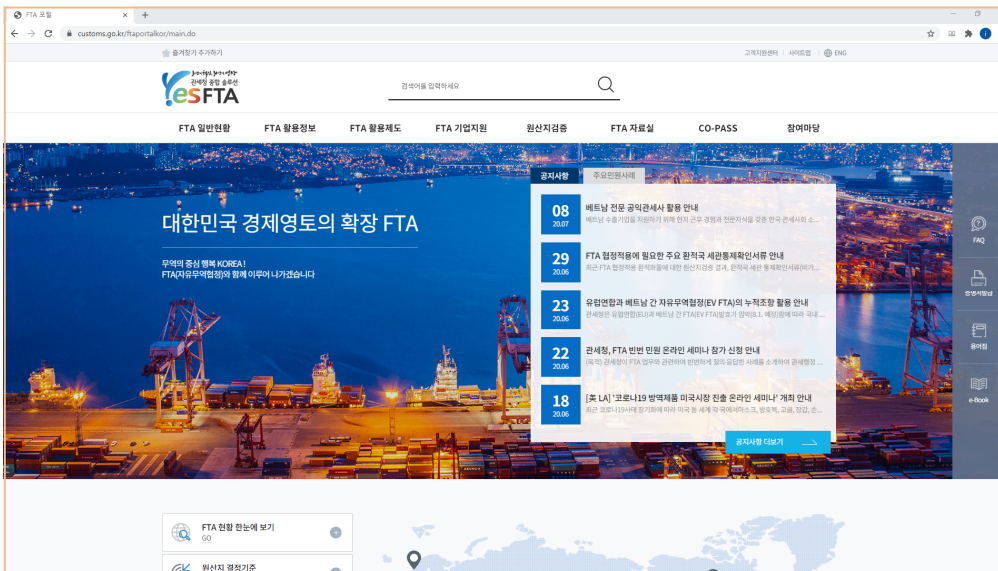
- 필리핀의 상품분류는 HS시스템을 따르고 있으며, 자체 상품분류코드로 SITC 방식을 원용한 PSCC코드도 사용함
-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간 교역 증진을 위해 2003년 아세안 관세코드(AHTN, ASEAN Harmonized System of Tariff Nomenclature)를 채택함
 - 관세위원회(TC)를 통해 품목분류번호(AHTN)와 원산지 선정 요건을 확인한 후 수출입하고자 하는 상품이 협정관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 TC에서 한-아세안 FTA 관련 행정명령, EO52, EO895, EO812, EO639, EO638 등을 확인
 - 한-아세안 FTA 관련 행정명령 EO812는 일반품목 관세 삭감 규정을 명시하고 EO638은 민감품목 관세양허를 규정함
 - 우리나라 관세청 FTA포털을 통해 한국과 필리핀 간 협정세율 적용 품목, 상대국 세율, 원산지 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C/O)의 경우 통일서식 'Form AK'를 사용하며,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FTA포털의 유니패스를 통해 신청 가능함

관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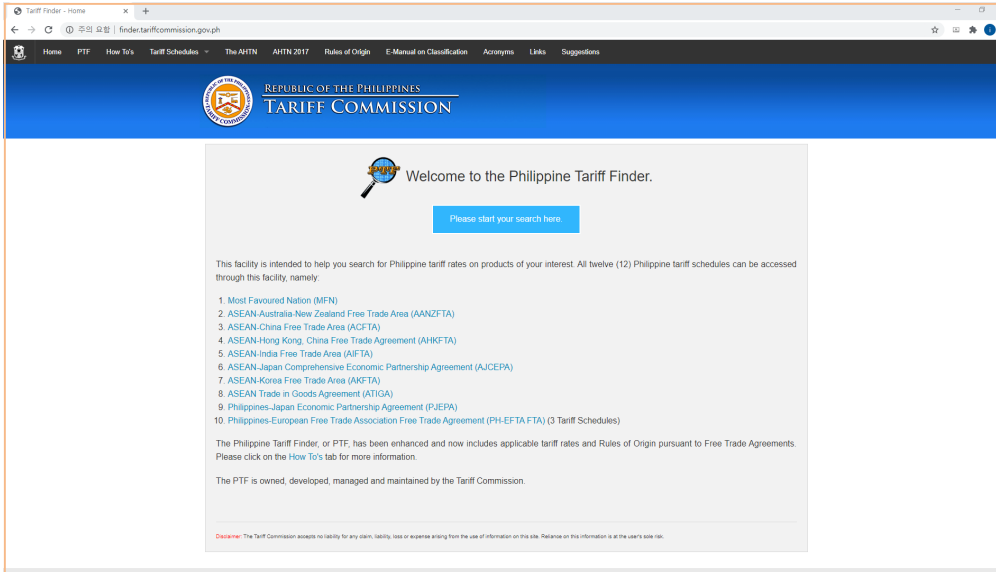
- 필리핀 관세율의 종류는 크게 공동실효특혜관세(CEPT)과 기본관세율(MFN)로 나눔
 - 공동실효특혜관세는 아세안 제4차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것으로 아세안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임
 - 기본관세율은 아세안 비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이지만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낮은 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수입통관 시 원산지증명서(CO)를 현지 세관에 제출해야 함. 현지 세관의 특성상 사후 서류를 보완하더라도 관세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해놓는 것이 바람직함
- 필리핀의 과세는 거래가격에 기초한 국내인도가격(FOB 기준)에 의해 결정되며, 수입물품에 관세, 부가세(12%), 특소세(Excise Tax), 물품세를 부과함. 특소세는 광물, 석유제품, 자동차, 주류, 담배, 화장품 등에 부과됨
 - 6개의 민감품목은 최소 시장접근 정책(MAV)으로 규제되며 관세율은 약 20~25%가 부과됨
 - 대상 품목군 : 옥수수, 설탕, 돼지고기, 가금류, 커피, 커피추출물
- 한-아세안 FTA 상의 양허관세를 적용할 때도 수입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으나 12% 부가가치세는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함
 - 2008년 1월을 기해 한-아세안 FTA가 발효됨에 따라, 2010년까지 양측 교역품목의 90%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0~5%만 부과되기 시작함
 - 한-아세안 FTA가 차지하는 비중은 필리핀의 전체 관세항목의 97.7%이며, 이월율은 88.09%로 높은 수준을 보임
 - 우리나라는 ASEAN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Normal Track, 일반품목)하였으나 상대방은 우리나라의 동일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Sensitive List, 민감품목)하는 경우에 우리나라도 해당 품목에 대해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

관세율 검색방법

- 관세청 FTA 포털, 트레이드 내비, 필리핀 관세위원회를 통해 HS Code, 협정 세율 및 원산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음
- 한국 관세청 FTA 포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필리핀 관세청 관세위원회 홈페이지: <http://finder.tariffcommission.gov.ph>
- 필리핀 관세위원회(TC)는 관세법 및 세관법에 근거하여 관세율 정보와 수출입 관련 서류 양식, 한-아세안 FTA 관련 법령 및 행정 명령, 관세분류코드 등의 정보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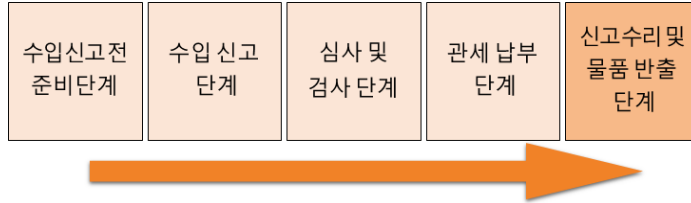


관세 납부

- 필리핀 세관은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세관 검사(Customs Inspection), 관세 분류(Tariff Classification), 관세 평가(Appraisalment) 등을 진행하며, 수입에 따르는 각종 세금, 관세 및 기타 요금을 부과함
- 수입자는 수입하기 전에 수입신고서를 공인은행(AAB)에 제출해야 하며 세관을 통해 부과된 세금을 동 은행에 제출해야 함
- 관세 등 조세는 은행(Authorized agent bank)을 통해 송금하거나, 관세에 상응하는 담보확인 후 반출이 가능함

- 세관원은 관세상용담보나 관세 납부를 확인한 후 신고를 수리함. 담보의 경우 국내선하증권, 은행지불보증, 채권 등이 있음
 - 검사받지 않은 물품의 경우 신속하고 빠른 운송을 위해 현금 보증으로 국내 선하증권, 은행지불보증, 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은 세금·관세 등 기타 지불 요금의 100%임
 - 현금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세금, 관세, 기타 지불 요금 등을 지불할 때까지 물품운송이 보류됨
- 불법수입 물품은 국고로 귀속되고, 그 물품의 관세, 창고비, 적하비 등의 기타 부대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함
- 세관원은 물품의 패키지가 세관 신고 내용, 송장, 여타의 다른 문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샘플 검사를 시행함
 - 물품의 가격이나 가치를 평가하며, 송장, 선서진술서, 제조원 등의 보고서 등을 조사함
 - 신고가격과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세관에서 신고가격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함
- 품목분류 및 가격평가에 있어 필리핀 세관의 재량권이 적용되어 세관별로 품목분류 및 가격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수입 신고 과정상 관세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마. 신고 수리 및 물품 반출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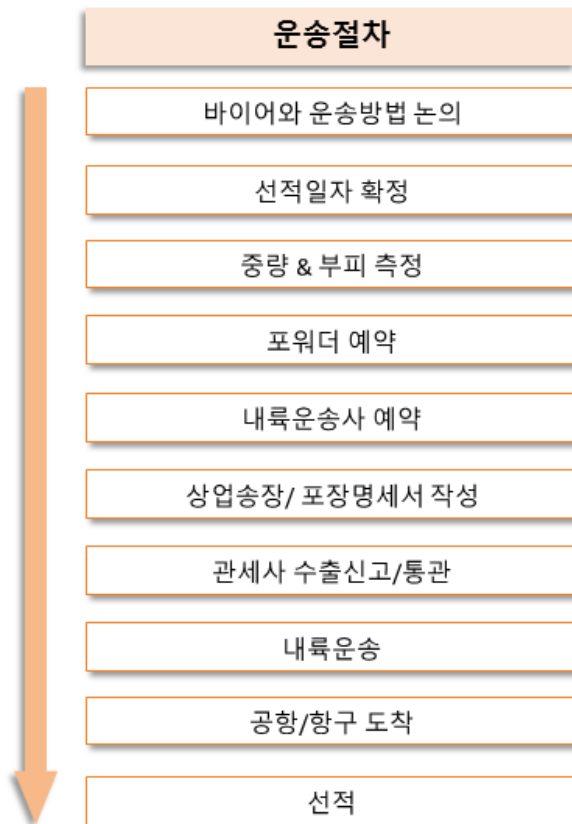
관세 납부 후 화물 양도

- 관세의 납부는 수입된 물품이 필리핀 내 유통되기 위해 반입되기 전 처리되어야 하며, 세관은 OLR(On-Line Release System)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관세 납부 사실을 통보받는 대로 수입자에게 화물을 양도함
- 수입자는 수입관련 자료를 수입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세관은 수입일로부터 3년간 수입자가 보관한 서류를 검사할 수 있음
- 화주가 물품을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물품은 경매, 기증, 또는 폐기처분됨. 처분방식은 관할세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밀수품 및 방치화물은 경매 또는 기증 처리되며, 안전상 문제가 있는 물품은 폐기처분됨
- 부두사용료 및 납부방법
 - 1) 수입자는 마닐라 항만 및 해운사에 부두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통상 물류업체가 이를 대납하고 청구서에 일괄적으로 포함함
 - 2) 투자청(BOI)과 경제자유구역청(PEZA)에 등록된 업체의 경우 EO226(Omnibus Investment Act)에 의거하여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부두사용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차감되며 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3) 부두사용료의 경우 PEZA에 등록된 업체들은 면제이며, 터미널 핸들링 차지(THC)의 경우 벌크화물이 아닌 컨테이너화물에만 부과됨
- 부두기기사용료(Arrastre Charge)는 필리핀에만 특수하게 존재함. 추가 운반료라고 명시되는 Arrastre Charge의 정식명칭은 부두기기사용료이며, 각 항구별, 물품의 중량, 부피, 운반속도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일종의 처리비(Handling Charge)로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야 함

■ 운송절차

▣ 운송절차



주요 운송회사 및 통관서비스 업체

| | |
|----------------------------|---|
| 한국인 운송 운송업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BB 해운항공 ▪ CJ GLS ▪ 한진해운 마닐라지점(Hanjin Shipping Co., Ltd) ▪ 아펙스(APEX) ▪ 두라 해운항공 ▪ 코차이나(Korchina Logistics Philippines, Inc) |
|----------------------------|---|

3. 인증 제도

가. 인증제도 개요

- 필리핀의 인증제도는 1964년 국가표준(PS) 관리와 규제를 위한 필리핀법 4109(Republic Act No. 4109)를 근거로 시행됨
- 필리핀의 인증제도 전반은 통상산업부 산하 품질규격국(BPS, Bureau of Production Standard)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크게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는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와 PS(Product Safety) 인증으로 구분됨
- 필리핀은 강제인증과 임의인증 제도가 별도로 있지 않고, 품질규격국이 매년 인증 의무대상 품목을 발표함. 이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이 바뀌기도 함
- 전국에 205여 개의 인증시험기관이 있어 ICC/PS 인증의 시험업무를 담당함

□ 나. 인증 종류

■ ICC 인증

- ICC 인증은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발급하며, 필리핀 국가표준(PNS)규격에 준해 해당 제품이 품질과 안전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함
- 대상품목은 주로 소비자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관련된 제품으로 전기제품, 기계 및 건축자재, 화학, 식품 등이 포함되며, 의무대상 품목은 매년 품질규격국에서 공표함
- 신청비용은 300페소이며, 심사비(심사원 이동, 숙박 등 관련비용)는 실비로 신청자에게 부담됨

- 별도의 인증 진행비(Processing Fee)는 송장금액에 따라 PHP 5,000~PHP 10,000까지 차등 부과됨. 유효기간은 매번 선적·수입되는 물량에 한하며, BPSTC(BPS Testing Center)에 시험 신청할 경우에 한해 1년간 유효함



■ PS마크(PS, Quality & Safety Certification Mark)

- PS마크 인증은 신청업체가 ISO 또는 PNS 품질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 품질경영시스템 표준을 지속해서 준수하는 국내외 제조업자에게 부여되는 인증임
- ISO 9000 시리즈 규격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며, 인증마크 허가 후에도 감사는 정기적으로 시행함

- 대상품목은 냉장고, 에어컨, 합판, 시멘트 등 건축자재 등 52개 품목을 포함하며, ICC 인증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관련된 제품을 망라하고 있으며, 의무대상 품목은 매년 품질규격국에서 공표함
- PS마크 인증은 ISO 9001, 9002 기준에 따라 품질시스템 검사(공장심사)를 합격한 이후 해당 규격 샘플검사를 통과해야 인증이 발급되며,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할 수 있음

PS Marks



다. 인증획득 절차

기본 규정

- 필리핀 행정부에서 발표한 표준규격(PNS) 조항에 의거, 수입규제 중인 품목을 수입하려면 ICC 마크를, 현지 생산품의 경우 필리핀 표준규격 또는 국제 표준 인증(품목마다 상이)을 취득한 후에야 판매 가능함

ICC 인증필요 서류

ICC 인증 필요서류

- 신청서 원본과 공증된 사본 3매
- 선하증권
- 제품 리스트
- 송장(INVOICE)
- DTI (Dept of Trade and Industry)와 기업감독 및 관리위원회(SEC) 등록 서류
- 표준규격인증서(ISO 등 국제 표준)

제품인증정보시스템(Product Certifica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PCIMS)

- PS와 ICC 온라인 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
- 생산자 및 수입자는 이곳에 계정을 만들고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수속을 진행할 수 있음
 - call : (+632) 791-3130/3131/3329/3330
 - email : bps.scd@dti.gov.ph.
 - homepage :
<http://www.bps.dti.gov.ph/index.php/product-certification/product-certification-information-management-system-pcims>



제 4 절. 식품 표시

□ 1. 식품 표시 및 포장 개요

- 수입물품은 필리핀 내 최종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위치에 알기 쉽게 필리핀 내 공식 언어로 표기해야 하며, 개별상품에 원산지 표기가 불가능한 경우 포장상자에 표기를 허용함
 - 미국 적용 라벨링 규정이 필리핀에서도 적용됨
 - 위반 수입 상품은 적정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지고 벌과금(5만~5십만 페소)이 완납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됨
 - 모든 성분을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부합하게 표시해야 하며, 주요 안내 부분은 소비자가 구입 시 잘 볼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함

- 필리핀 식품의약청(FDA)은 라벨링의 내용이 기준에 적합한지 세밀하게 검토함
- 각 라벨에 포함된 영양 및 의학적 성분 내용은 수입제품을 등록하기 위한 신청서를 평가할 때 식품의약청(FDA)에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입증될 수 없는 내용이 표기된 제품은 반입이 금지됨
- 신청 서류를 식품의약청(FDA)에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 검토하여 제품등록을 승인하며, 4,000~10,000페소의 비용이 발생하고, 약 90영업일의 기간이 소요됨

□ 2. 표시사항

□ 가. 일반적 요구사항

■ 표시 개요

- 원산지, 브랜드, 로고, 물리적·화학적 구성성분, 순중량이나 크기, 제조업자의 주소 등의 정보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위반 시 5,000페소 벌금 및 6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됨
 - 인증된 검사기관에서 얻어진 결과가 아닌 경우에는 표기할 수 없음

식품 필수 표기사항

| | |
|------------|--|
| 제품명 | 상품명에 구체적이어야 하며, 식품의 본질을 나타내야 함 |
| 상표명 | 상표등록된 상표명이 있다면, 등록된 것과 동일한 상표명 표기 |
| 성분목록 | 사용된 양이 큰 순서대로 표기 (첨가물, 착향료, 보존제 포함) |
| 중량 | 순 내용물 및 건조된 중량(물, 기름 등을 뺀 중량) |
| 업체 상호와 주소 | 제조업체, 포장업체,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상호와 주소를 표기. 수입식품은 원산지도 표기 |
| 제품번호 | 제품 포장용기에 양각으로 새기거나 영구적으로 표기 (제품단위증명서(Lot Identification) 포함) |
| 보관조건 | 실온보관 이외 조건이 필요한 제품은 보관조건 분명하게 눈에 띄게 표기 |
| 유통기한또는소비기한 | 날짜, 월, 연도 순으로 표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날짜와 연도는 숫자로, 월은 문자로 표기 |
| 식품 알레르기 정보 | 성분 목록 바로 아래에 분명하고 눈에 띄게 표기 |
| 사용[섭취] 방법 | 식품의 적절한 활용 및 섭취방법에 대하여 설명 |
| 영양정보 |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칼로리 표로 표기 |

나. 제품 특성별 표시사항

포장가공육

- 제품가공에 사용한 육류의 종류
- 육가공업자들은 1달 이내의 판매영수증에서 사용된 육류의 종류를 표기하여 직접 제출
- 라벨사본을 미리 제출하여 제품등록에 사용됨 (FDA 규정준수)

생수

- 제품명, 제조업체 주소 (제품명은 FDA 규정에 따라 표시되어야 함)
- 물의 종류(spring water, mineral water, purified water, distilled water, carbonated water, drinking water)는 라벨의 주 표시면에 눈에 잘 띄게 표기
- 생수 중 mineral water, spring water의 경우 규정에 따라 표기 (물이 얻어진 지하수원지의 지리적 위치, 용해성 물질, 구성성분)
- 라벨사본을 미리 제출하여 제품등록에 사용됨 (FDA 규정준수)

특별식이식품(당노환자용 등)

- 비타민, 미네랄, 식이요법 성분을 표시해야 함

식음료제품

- FDA에 수입제품의 라벨사본을 미리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제품등록에 사용됨
- 라벨항목은 CODEX와 FDA의 요구사항, 영양 성분표시가 적합해야 함

어류 및 수산식품

- 원산지명, 어류의 품종, 무게와 내용물, 공급자 주소

□ 다. 표기방식

■ 표기 언어 및 글자 크기

- 식품라벨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영어 또는 타갈로그어로 표기 (영어와 타갈로그어 혼용 가능)
- 수입식품의 경우, 외국어로 표기된 정보는 반드시 영문 번역을 첨부

■ 상품명 및 명칭

- 제품명은 구체적이고 식품의 본질을 나타내야 함
- 식품 기준상의 제품명 또는 고유 이름이 설정된 경우, 그중 하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함
- 일반적인 경우 또는 제품 이름이 있거나 없는 경우에는 혼동되지 않을 적절한 설명을 제공해야 함
- 식품의 성격과 상태에 대한 소비자의 더 나은 이해를 위해 식품의 제품명 옆에 추가적인 단어나 문구가 표시되어야 함 (예: 건조, 동결건조, 농축, 훈제 등)
- 식품의 제품명 및 명칭은 주요 디스플레이 패널에 굵은 글씨로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함

상표 또는 상표의 사용

- 등록된 상표(명)가 있다면 등록된 것과 동일한 상표(명)를 라벨에 표기
- 시설에 등록된 상표명 또는 상표가 있는 경우 해당 상표권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상표명 또는 상표를 해당 상표의 표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만, 추가 가공할 경우 표시할 수 없음
- 사용된 브랜드명 또는 상표는 제품 이름과 함께 표시되어야 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 혼동 혹은 어떤 점에서든 그 성격이나 본질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됨
- 동일 제품 분류의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이미 등록된 상표명 또는 AO No.2005-0016에 근거한 공적 도덕에 위배되거나 외설적이거나 모욕적인 상표명과 동일한 브랜드 이름은 허용되지 않음
- 동일한 브랜드 소유자가 허가한 경우 동일한 브랜드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음

제조업자, 재포장업자, 포장업자, 수입업자, 무역업자 및 판매업자의 이름과 주소

- 식품의 제조업자, 재포장업자, 포장업자, 수입업자, 무역업자 및 배급업자의 이름과 주소는 현지에서 제조된 제품의 라벨에 표시해야 함
- 포장된 제품이 라벨에 표시된 사람 또는 회사에 의해 제조되지 않은 경우, 이름은 "Manufactured for" 또는 "Packed for"와 유사한 표현으로 기재되어야 함
-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자와 원산지 국가의 완전한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함
- 외국 브랜드를 소지하고 있거나 외국회사의 허가 하에 제조한 제품의 경우, 외국회사의 이름과 주소는 현지 회사에서 사용된 것보다 크지 않도록 표시되어야 함
- 제2국에서 가공되어 식품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경우, 가공되는 제2국은 라벨링 상의 원산국으로 간주함

순 내용물 및 순중량

- 순 내용물은 주요 디스플레이 패널 혹은 정보패널에 미터법과 같은 국제적 단위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함
 - 1) 액상 식품의 경우, 부피 기준
 - 2) 고체 식품의 경우, 무게로 표시함. 단, 해당 식품을 번호별로 판매할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해야 함
 - 3) 반고체 또는 점성식품의 경우 무게 또는 부피 중 하나를 선택함
- 액체 매질(소비되기 전에 버려지는)에 포장된 식품은 물이 빠진 순중량으로 기재되어야 함
- 다중 단위 소매 패키지의 경우, 외부 패키지의 내용량에 대한 설명은 개별단위의 수, 각 개별 단위의 순 내용물 및 괄호 안의 다중 단위 패키지의 전체 내용을 포함해야 함

제조일자, 유통기한

- 상품의 제조일자, 유통기한은 일, 월, 년 순으로 기재함.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날짜와 연도는 숫자로 기재하며, 월은 문자로 기재함 (예 : 01Jan12)

수입 제품의 라벨링

- 수입 물품은 필리핀 내 최종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위치에 알기 쉽게 필리핀 내 공식 언어(영어)로 표기해야 함
-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라벨링에는 원산지, 브랜드, 트레이드마크, 물리적/화학적 구성성분, 순중량이나 크기, 제조업자의 주소 등의 정보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라. 기타 유의사항

영양 및 의학적 성분

- 각 라벨에 포함된 영양 및 의학적 성분 내용은 수입제품을 등록하기 위한 신청서를 평가할 때 식품의약품에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입증될 수 없는 내용이 표기된 제품은 반입이 금지됨

영양 및 건강 정보의 광고

- 특정한 식이요법을 위해 마케팅되는 식품(예를 들어, 당뇨병자 식품)의 라벨은 식품의약품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식품의 비타민 및 무기질, 기타 식이특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함
- 식품의약품은 식품 광고에 대한 일반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권한을 가짐
 - 식품의약품은 다양한 매체에 소개되는 식품광고의 영양 및 의약 정보의 진위를 가리고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음
 - 식품의약품은 모든 제조업체, 유통업체 혹은 광고업체에 부정확하거나 소비자를 호도하는 영양 및 의약 정보를 광고에 포함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식품 제조업체, 유통업체, 광고업체가 거짓 정보 사용을 중단하라는 식품의약품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 법과 규제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식품의약품(FDA) 라벨 견본 제출

- 식품의약품은 수입업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라벨 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함
- 라벨의 내용은 국제 식품규격과 식품의약품의 요건 상 허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세히 검토됨

- 이러한 라벨에 포함된 영양 및 의학적 정보는 식품의약품이 필리핀으로 수입되기 위한 외국 상품, 특히 건강보조제, 유아식품 및 특수 식이요법을 위한 식품 등의 등록신청서를 평가할 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임
- 진위를 쉽게 입증하기 어려운 정보를 담은 라벨이 붙은 상품은 필리핀 반입이 금지될 수 있음

라벨링 규정 변경

- 필리핀은 라벨링 규정 등 수입규정이 자주 바뀌는 편이므로 수출용 영어포장을 별도로 개발하거나 스티커 라벨링 제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포장 및 용기에 대한 규제

- 우수 제조관행과 식품의 포장 재질 적합성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국제식품규격은 필리핀 식품의약품의 주요 참고 가이드가 되고 있음
- 따라서 포장 식품의 경우 국제 식품규격을 준수하면 필리핀의 규제를 준수하게 되는 편임

3. 식품 표시 예시



① 제품명 ② 영양성분표 ③ 재료 ④ 중량 ⑤ 제조사







제 5 절.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규정

□ 1. 식품첨가물 관련 규정

□ 가. 규정 주요 내용

- 1) 규정의 목적, 용어 정의
- 2) 일반 지침 내용에 대한 설명
 - 식품첨가물 사용의 일반 원칙
 - 라벨이 잘못 부착된 식품이나 불량식품에 대한 대비
 - 식품첨가물의 식품으로의 이월 원리

3) 식품첨가물 목록, 향미물질, 식품첨가물 목록의 검토 및 개정 사항

4) 부록

- 식품분류체계
- GMP에 따라 일반적으로 식품에 사용하도록 허용된 첨가물
- 일반 조건에서 제외된 식품 범주 또는 개별 식품
- 특정 식품 카테고리 또는 개별 식품 품목에서 특정 조건하에 사용이 허용된 첨가물 및 일정 범위의 식품에만 허용된 식품첨가물 목록
- 식품 가공보조제로만 허용된 식품첨가물 목록
- 식품에 사용되는 미네랄 소금, 아미노산 및 비타민 화합물 목록
- 영유아, 어린이 및 성인을 위한 식품에 사용되는 비타민 화합물 권고 목록
- 특수 비타민 형태
- 우수약품제조관리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식품에 사용이 허용되는 효소

□ 나. 식품첨가물 정의

■ 필리핀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의

- 식품첨가물규정 중 II. 용어 정의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음
 - “식품첨가물(Food Additive)은 의도된 사용을 위한 식품의 성분 혹은 식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결과적, 간접적으로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분(식품, 제조, 포장, 식품의 가공, 준비, 취급, 포장, 운송 또는 보관 등에 사용되는 모든 물질을 포함함. 또한 그러한 용도로 사용된 모든 방사선원 포함)을 의미함. 단, 이 물질은 전문적인(과학적 훈련에 의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의도된 사용 조건하에서 과학적 절차를 통해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어야 함 (RA NO. 3720)”

한국 식품첨가물 정의

- 한국 식품첨가물의 정의는 식품위생법 제 2조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함. 이 경우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이전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함
- 한국의 식품첨가물 정의와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제시되어 있음¹⁰⁾
-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첨가물의 “용도”란 식품의 제조·가공 시 식품에 발휘되는 식품첨가물의 기술적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서 각 용어에 대한 뜻은 다음과 같음
 - (1) “감미료”란 식품에 단맛을 부여하는 첨가물을 의미함
 - (2) “고결방지제”란 식품의 입자 등이 서로 부착되어 고형화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3) “거품제거제”란 식품의 거품 생성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4) “껌기초제”란 적당한 점성과 탄력성을 갖는 비영양성의 씹는 물질로서 껌 제조의 기초 원료가 되는 첨가물을 의미함
 - (5) “밀가루개량제”란 밀가루나 반죽에 첨가되어 제빵 품질이나 색을 증진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6) “발색제”란 식품의 색을 안정화시키거나, 유지 또는 강화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7) “보존료”란 미생물에 의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여 식품의 보존기간을 연장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8) “분사제”란 용기에서 식품을 방출시키는 가스 첨가물을 의미함

10) https://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04_01.jsp

- (9) "산도조절제"란 식품의 산도 또는 알칼리도를 조절하는 첨가물을 의미함
- (10) "산화방지제"란 산화에 의한 식품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 첨가물을 의미함
- (11) "살균제"란 식품 표면의 미생물을 단시간 내에 사멸시키는 작용을 하는 첨가물을 의미함
- (12) "습윤제"란 식품이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첨가물을 의미함
- (13) "안정제"란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성분을 일정한 분산 형태로 유지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14) "여과보조제"란 불순물 또는 미세한 입자를 흡착하여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을 의미함
- (15) "영양강화제"란 식품의 영양학적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제조과정 중 손실된 영양소를 복원하거나, 영양소를 강화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16) "유화제"란 물과 기름 등 섞이지 않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상(phases)을 균질하게 섞어주거나 유지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17) "이형제"란 식품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원료가 용기에 붙는 것을 방지하여 분리하기 쉽도록 하는 첨가물을 의미함
- (18) "응고제"란 식품 성분을 결합 또는 응고시키거나, 과일 및 채소류의 조직을 단단하거나 바삭하게 유지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19) "제조용제"란 식품의 제조·가공 시 촉매, 침전, 분해, 청징 등의 역할을 하는 가공보조제를 의미함
- (20) "젤형성제"란 젤을 형성하여 식품에 물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을 의미함
- (21) "증점제"란 식품의 점도를 증가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22) "착색료"란 식품에 색을 부여하거나 복원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23) "청관제"란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스팀을 생산하는 보일러 내부의 결석, 물때 형성,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첨가물을 의미함
- (24) "추출용제"란 유용한 성분 등을 추출하거나 용해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25) "충전제"란 산화나 부패로부터 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의 제조 시 포장 용기에 의도적으로 주입시키는 가스 첨가물을 의미함
- (26) "팽창제"란 가스를 방출하여 반죽의 부피를 증가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27) "표백제"란 식품의 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을 의미함
- (28) "표면처리제"란 식품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거나 정돈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을 의미함
- (29) "피막제"란 식품의 표면에 광택을 내거나 보호막을 형성하는 첨가물을 의미함
- (30) "향미증진제"란 식품의 맛 또는 향미를 증진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31) "향료"란 식품에 특유한 향을 부여하거나 제조과정 중 손실된 식품 본래의 향을 보강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32) "효소제"란 특정한 생화학 반응의 촉매 작용을 하는 첨가물을 의미함

□ 다. 식품첨가물 범례

필리핀 식품첨가물의 범례

- ① 우수제조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준수 : 식품첨가물 목록에 등재되어 해당 품목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기준이 없는 경우로, 우수제조관리기준(GMP)에 따라 사용 가능
-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의도된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식품첨가물의 사용 수준을 말함

- ② 향미물질(Flavoring Substances) : 식물/동물 제품 및/또는 식품에서 중요 기능이 영양이 아닌 향미로서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로 구성된 향미제를 의미함
- ③ 1일 허용섭취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 :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협의회(JECFA)에 의해 추정된 식품첨가물량의 예상치를 의미함
 - 체중 기준으로 표현된 (참조 성인-60kg), 주목할 만한 건강의 위험 없이 평생 매일 섭취 가능한 양을 의미함 (Codex STAN 192-1995, Rev.6. 2005), (WHO Environmental Health Criteria No. 70, 1987)
- ④ 식품첨가물 이월(carry over)
 - 직접적인 추가 이외에 첨가물은 식품 성분으로부터의 이월에 의해 식품에 존재할 수도 있음. 단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 a. 식품첨가물은 규정에 따라 원료 또는 기타 성분(식품첨가물 포함)에 허용됨
 - b. 원료 또는 기타 성분(식품첨가물 포함)에 함유된 식품첨가물의 양은 허용되는 최대치를 초과하면 안 됨
 - c. 첨가물이 이월된 식품은 적절한 기술적 조건이나 제조 관행 하에서 성분을 사용함으로써 유입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식품첨가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함
- ⑤ 식품분류체계
 - 규정의 부록에 첨부된 식품분류체계는 식품첨가물 사용의 구분을 위한 도구임. 이 식품분류체계는 첨가물이 허용되지 않는 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에 적용됨
 - 식품 기술어는 합법적인 제품 명칭이 될 수도 없고, 라벨을 붙이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된 것이 아님
 - 식품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근거함
 - a. 식품분류체계는 계층적 구조로서, 첨가물의 사용이 일반 범주에서 허용되는 경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하위 범주에서 자동으로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함. 마찬가지로, 하위 범주에서 첨가물이 허용되는 경우, 첨가물의 사용은 또한 추가 하위 범주 그리고 기술어 그리고 하위 범주에서 언급된 개별 식품에 허용됨
 - b. 식품분류체계는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시판된 식품의 제품 기술어에 기초함

- c. 식품분류체계는 이월 원칙을 고려함. 이에 식품분류체계는 복합식품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음. 식품 화합물이 해당 구성 요소에 허가되지 않은 첨가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구성 요소에 비례하는 허용되는 모든 첨가물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임
- d. 식품분류체계는 식품첨가물규정 구축을 위한 식품첨가물 사용의 보고를 단순화하기 위해 사용됨

■ 한국 식품첨가물의 범례

- ① 일반사용기준 :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되어 있어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함에 있어 사용량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는 경우로 식품첨가물 일반 사용기준에 따라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최소 적정량을 사용하여야 함
- ② 사용금지 :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해당 품목에 사용할 수 없음

□ 2. 유해물질 관련 규정

□ 가. 규정 개요 및 내용

- 필리핀의 경우 따로 유해물질규정집을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식품별 기준규격 내 '위생', '오염물질' 혹은 '부록'에 관련규정이 산재되어 있음
- 식품별 기준규격에 포함된 유해물질 기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 금속 오염물질인 납, 구리, 비소, 주석, 카드뮴, 수은, 메틸수은, 크롬, 니켈 등의 식품에서의 허용기준
 - 세균, 곰팡이 등 미생물 허용기준
 - 농작 오염물질 및 자연발생적 독소 물질의 목록, 식품에서의 허용기준

-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정의, 식품에서의 허용기준
- 항생제 및 타 약리학 작용물질의 목록 및 허용기준
- 어류 및 수산물의 생물독소의 허용기준
- 기타 오염물질의 목록 및 허용기준

□ 나. 유해물질 정의

■ 필리핀의 유해물질에 대한 정의

- 필리핀은 가공식품에 대한 유해물질규정이 따로 없지만, 농축수산물 원물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정한 <식품과 사료의 오염물질 및 독소에 대한 일반 규정>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음
 - “식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되지 않은 물질로, 이는 해당 식품의 생산(작물 경작, 축산 및 수의학에서 수행되는 제반 작업(operations) 포함), 제조, 가공, 조제, 처리, 묶음, 포장, 운송 또는 보유, 또는 환경오염의 결과로 해당 식품에 존재할 수 있음. 여기에는 곤충의 파편, 설치류의 털 및 기타 외부 물질은 포함되지 않음”
 - 1) 오염물질의 정의에는 식품과 사료에 의도적으로 첨가되지 않은 특정 미세균류(microfungi)의 독성 대사물질(곰팡이 독소, mycotoxins)을 포함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독성물질이 암묵적으로 포함됨
 - 2) 조류(algae)가 생산하고 조개류와 같은 식용 수생생물에 축적될 수 있는 독소(조류독소, phycotoxins)가 여기에 포함됨
 - 3) 일반적으로 독성 위험수준의 대사물질을 생성하는 속(genus), 종(species), 또는 변종(strain)의 결과로 발생하는, 식품과 사료의 암묵적 성분인 내생 천연 독성물질(예: 감자의 솔라닌), 즉 식물독소(phytotoxins)는 이 표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한국 유해물질 정의

- 한국 식품위생법에서는 '위해'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 2조에서는 '유해물질'을 원재료 또는 제조과정 중 오염 또는 잔류의 가능성이 있어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미생물, 중금속, 잔류농약, 잔류용매 등으로 정의함
- 따라서 식품 및 기능성 식품관련법을 비추어 해석하자면 식품 중 유해물질이라 함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에 존재하여 인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적 요인으로 간주됨
- 한국의 유해물질 정의와 기준은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제시되어 있음¹¹⁾

3. 필리핀 식품첨가물/유해물질 분류

- 본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규정에서 식품을 분류하는 방법은 두 가지임
 - ① 식품첨가물 관련 식품분류체계:
 - 식품첨가물규정은 필리핀 식품의약청(FDA, ww2.fda.gov.ph) → ISSUANCE → FOOD → FDA Circular → "Bureau Circular No. 2006-016 || Updated List of Food Additives"에 제시되어 있음
 - * <https://ww2.fda.gov.ph/attachments/article/19772/BC%202006-016.pdf>
 - 식품분류체계는 식품첨가물규정 중 <표 1>의 '식품분류체계'와 <표 2>의 부록 '표 2의 일반 조건에서 제외된 식품 범주 또는 개별 식품'에 제시됨. 따라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명시하는 식품 분류는 이 두 가지 분류체계를 통합하여 정리함

11)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specialinfo/infoMapCodex.do?menu_grp=MENU_NEW04&menu_no=2848

② 유해물질 관련 식품분류체계:

- 필리핀의 경우 따로 유해물질규정집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필리핀 식품의약청에서 제공하는 식품별 기준규격 내 '위생', '오염물질' 혹은 '부록'에 포함된 식품유형을 바탕으로 재편집함
- 식품별 기준규격은 FDA(ww2.fda.gov.ph) → INDUSTRY CORNER→ FOOD INDUSTRY→ Philippine National Standards(PNS)에서 PNS/FDA 필리핀 식품별 기준규격을 제시함
 - * <https://ww2.fda.gov.ph/index.php/industry-corner/food-industry-all-registered-food-distributor-manufacturer-and-trader/philippine-national-standards>
- 따라서 유해물질은 이 PNS 기준규격에 제시된 식품을 중심으로 연구진이 분류체계를 만들
- PNS에서 제공하는 식품별 기준규격에도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이 식품첨가물규정에 제시된 것과 다른 포맷으로 일부 제시됨
 - 따라서 식품첨가물규정에 제시된 첨가물 기준뿐만 아니라 식품별 기준규격에 제시된 식품첨가물 기준도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 PNS를 기준으로 한 분류체계를 활용하여야 함
- 한국의 식품공전에 따른 식품유형에 필리핀의 유사기준을 적용하여 해석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리핀의 현행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표 2-5] 한국 식품공전 분류에 따른 필리핀 식품첨가물규정 식품유형 분류

| 신식품공전 | | | 필리핀 :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식품유형) | Food category number | 필리핀 식품유형(한국어) |
|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 과자 | 05.0 | 제과류 |
| | | | 07.1.2 | 크래커, 스위트 크래커 제외 |
| | | | 07.2.1 | 케이크, 쿠키 및 파이 (예. 과일필링 및 커스터드 타입) |
| | | 캔디류 | 04.1.2.5 | 잼, 젤리, 마말레이드 |
| | | | 05.2 | 하드 및 소프트 캔디, 누가 등을 포함한 설탕 기반 제과류, 식품 카테고리 05.1, 05.3, 05.4 이외 |
| | | 추잉껌 | 05.3 | 추잉껌 |
| | | 빵류 | 07.0 | 베이커리 제품 |
| | | | 07.1 | 빵 및 일반 베이커리 제품 |
| | | | 07.1.1 | 빵과 롤 |
| | | | 07.1.3 | 기타 일반 베이커리 제품 (예. 베이글, 피타, 잉글리시 머핀) |
| | | | 07.1.4 | 빵 고물과 빵가루를 포함한 빵 타입 제품 |
| | | | 07.1.5 | 짬뽕 및 번 |
| | | | 07.2 | 파인베이커리 |
| | | | 07.2.1 | 케이크, 쿠키 및 파이 (예. 과일필링 및 커스터드 타입) |
| | | | 07.2.2 | 기타 파인베이커리 (예. 도넛, 스위트롤, 스콘 및 머핀) |
| | | 07.2.3 | 파인베이커리용 믹스 (예. 케이크, 팬케이크) | |
| | | 떡류 | 06.7 | 떡 (동양식만 포함) |
| 2. 빙과류 | 2. 빙과류의 모든 중/세분류는 필리핀의 식품첨가물규정 내 식품분류 중 우측의 식품유형("03.0 식용 빙과류, 셔벗 및 소르베 포함")에 모두 해당됨 | | 03.0 | 식용 빙과류, 셔벗 및 소르베 포함 |
| | 2-1. 아이스크림류 | 아이스크림 저지방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 01.7 | 유제품 기반 디저트 (예.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푸딩, 과일 및 향첨가 요거트) |

| 신식품공전 | | | 필리핀 :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식품유형) | Food category number | 필리핀 식품유형(한국어) |
| | 2-2. 아이스크림믹스류 | 아이스크림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 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 림믹스 | | |
| | 2-3. 병과 | 병과 | | |
| | 2-4. 얼음류 | 식용얼음 어업용얼음 | | |
| 3.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 릿류 |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의 모든 중/세분류는 필리핀의 식 품첨가물규정 내 식품분류 중 우 측의 식품유형("05.1 코코아 및 초 콜릿, 모조 및 초콜릿 대체품 포함 ")에 모두 해당됨 | | 05.1 | 코코아 및 초콜릿, 모조 및 초콜릿 대체 품 포함 |
| | 3-1. 코코아 가공품류 | 코코아매스 | 05.1.1 | 코코아 믹스 (파우더 및 시럽) |
| | | 코코아버터 | 05.1.2 | 코코아 기반 스프레드, 필링 포함 |
| | | 코코아분말 기타 코코아가공품 | 05.1.3 | 코코아 및 초콜릿 제품 (예. 밀크초콜릿 바, 초콜릿 플레이크, 화이트 초콜릿) 식 품 카테고리 05.1.1, 05.1.2, 05.1.4 이외 |
| | 3-2. 초콜릿류 | 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 05.1.3 | 코코아 및 초콜릿 제품 (예. 밀크초콜릿 바, 초콜릿 플레이크, 화이트 초콜릿) 식 품 카테고리 05.1.1, 05.1.2, 05.1.4 이외 |
| | | 05.1.4 | 모조 초콜릿 및 초콜릿 대체품 | |
| 4. 당류 | 4. 당류의 모든 중/세분류는 필리 핀의 식품첨가물규정 내 식품분류 중 우측의 식품유형("11.0 감미료, 꿀 포함")에 모두 해당됨 | | 11.0 | 감미료, 꿀 포함 |
| | 4-1. 설탕류 | 설탕 | 11.1 | 백설탕 및 반백설탕 (수크로스 및 사카로 스(자당)), 과당, 포도당 (덱스트로스), 자 일로스; 설탕 용액 및 시럽, (부분)전화당 (당밀, 트리클 및 설탕 토폰 포함) |
| | | 기타설탕 | 11.2 | 기타 설탕 및 시럽 (예. 갈색설탕, 메이플 시럽) |

| 신식품공전 | | | 필리핀 :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식품유형) | Food category number | 필리핀 식품유형(한국어) |
| | 4-2. 당시럽류 | 당시럽류 | 11.1 | 백설탕 및 반백설탕 (수크로스 및 사카로스(자당)), 과당, 포도당 (덱스트로스), 자일로스; 설탕 용액 및 시럽, (부분)전화당 (당밀, 트리클 및 설탕 토폰 포함) |
| | | | 11.2 | 기타 설탕 및 시럽 (예. 갈색설탕, 메이플 시럽) |
| | 4-3. 올리고당류 | 올리고당 | | |
| | | 올리고당가공품 | | |
| | 4-4. 포도당 | 포도당 | 11.1 | 백설탕 및 반백설탕 (수크로스 및 사카로스(자당)), 과당, 포도당 (덱스트로스), 자일로스; 설탕 용액 및 시럽, (부분)전화당 (당밀, 트리클 및 설탕 토폰 포함) |
| | 4-5. 과당류 | 과당 | 11.1 | 백설탕 및 반백설탕 (수크로스 및 사카로스(자당)), 과당, 포도당 (덱스트로스), 자일로스; 설탕 용액 및 시럽, (부분)전화당 (당밀, 트리클 및 설탕 토폰 포함) |
| | | 기타과당 | | |
| | 4-6. 엿류 | 물엿 | | |
| | | 기타엿 | | |
| | | 덱스트린 | | |
| | 4-7. 당류가공품류 | 당류가공품류 | 05.4 | 장식용 당과류 (예, 파인베이커리용), 토폰(과일 제외) 및 스위트소스 |
| | | | 11.1 | 백설탕 및 반백설탕 (수크로스 및 사카로스(자당)), 과당, 포도당 (덱스트로스), 자일로스; 설탕 용액 및 시럽, (부분)전화당 (당밀, 트리클 및 설탕 토폰 포함) |
| | | | 11.4 | 식탁용 감미료, 고농도 감미료 포함 |
| 5. 잼류 | 기타잼 | 잼 | 04.1.2.5 | 잼, 젤리, 마말레이드 |
| | | | 04.1.2.6 | 과일 기반 스프레드 (예. 처트니), 식품 카테고리 04.1.2.5 제외 |
| | | | 04.1.2.11 | 페이스트리용 과일 필링 |
| | | | 04.2.2.5 | 채소, 견과류 및 씨앗류 튀레 및 스프레드 (예. 땅콩버터) |
| | | | 12.7 | 샐러드 (예. 마카로니 샐러드, 감자 샐러드) 및 샌드위치 스프레드, 식품카테고리 04.2.2.5, 05.1.2의 코코아와 견과류 기반 스프레드 제외 |

| 신식품공전 | | | 필리핀 :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식품유형) | Food category number | 필리핀 식품유형(한국어) |
| 6. 두부류 또는 묵류 | | 두부 | | |
| | | 유바 | | |
| | | 가공두부 | | |
| | | 묵류 | | |
| 7. 식용유 지류 | 7-1. 식물성 유지류 | 7. 식용유지류의 모든 중/세분류는 필리핀의 식품첨가물규정 내 식품분류 중 우측의 식품유형("02.0 유지 및 지방 에멀션 (W/O 타입)")에 모두 해당됨 | 02.0 | 유지 및 지방 에멀션 (W/O 타입) |
| | | 7-1. 식물성유지류의 모든 세분류는 필리핀의 식품첨가물규정 내 식품분류 중 우측 두가지의 식품유형("02.1 무수 유지", "02.1.2 식물성 유지")에 모두 해당됨 | 02.1 | 무수 유지 |
| | | | 02.1.2 | 식물성 유지 |
| | | 콩기름(대두유) | | |
| | | 옥수수기름(옥배유) | | |
| | |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 | |
| | | 미강유(현미유) | | |
| | | 참기름 | | |
| | | 추출참깨유 | | |
| | | 들기름 | | |
| | | 추출들깨유 | | |
| | |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 | |
| | | 해바라기유 | | |
| | | 목화씨기름(면실유) | | |
| | | 땅콩기름(낙화생유) | | |
| | | 올리브유 | | |
| 팜유 | | | | |
| 팜올레인유 | | | | |
| 팜스테아린유 | | | | |
| 팜핵유 | | | | |
| 야자유 | | | | |
| 고추씨기름 | | | | |
| 기타식물성유지 | | | | |

| 신식품공전 | | | 필리핀 :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 |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식품유형) | Food category number | 필리핀 식품유형(한국어) | |
| | 7-2. 동물성 유지류 | 7-2. 동물성유지류의 모든 세분류는 필리 핀의 식품첨가물규 정 내 식품분류 중 우측 두가지의 식품 유형("02.1 무수 유 지", "02.1.3 돈지, 우 지, 생선 기름 및 기 타 동물성 지방")에 모두 해당됨 | 02.1 | 무수 유지 | |
| | | | 02.1.3 | 돈지, 우지, 생선 기름 및 기타 동물성 지방 | |
| | | 식용우지 원료우지 | | | |
| | | 식용돈지 원료돈지 | | | |
| | | 기타동물성유지 | | | |
| | 7-3. 식용 유지가공품 | 혼합식용유 | | 02.1 | 무수 유지 |
| | | | | 02.1.2 | 식물성 유지 |
| | | 향미유 | | 02.1.2 | 식물성 유지 |
| | | | 가공유지 | | 02.1 |
| | | | | 02.1.2 | 식물성 유지 |
| | | | | 02.1.3 | 돈지, 우지, 생선 기름 및 기타 동물성 지방 |
| | | 쇼트닝 | | 02.1.2 | 식물성 유지 |
| | | | | 02.1.3 | 돈지, 우지, 생선 기름 및 기타 동물성 지방 |
| | | 마가린류 | | 02.1.2 | 식물성 유지 |
| | | | | 02.1.3 | 돈지, 우지, 생선 기름 및 기타 동물성 지방 |
| | | | | 02.2.1.2 | 마가린 및 유사제품 (예. 버터마가린 혼 합물) |
| | | | | 02.2.2 | 에멀션 (지방 최대 80% 미만 포함) (예. 마가린) |
| | | 모조치즈 | | 02.1.2 | 식물성 유지 |
| | | 식물성크림 | | 02.1.2 | 식물성 유지 |
| | | | 기타 식용유지 가공품 | | 02.1 |
| | 02.1.1 | 버터오일, 무수유지방, 기(ghee) | | | |
| | 02.1.2 | 식물성 유지 | | | |
| | 02.1.3 | 돈지, 우지, 생선 기름 및 기타 동물성 지방 | | | |
| | 02.2 | 지방 에멀션 (W/O 타입) | | | |

| 신식품공전 | | | 필리핀 :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 |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식품유형) | Food category number | 필리핀 식품유형(한국어) | |
| | | | 02.2.1 | 에멀션(지방 최소 80% 이상 포함) | |
| | | | 02.3 | 지방 에멀션, 이를 기반으로 한 혼합 및 향첨가 제품 포함 (카테고리 02.2 이외) | |
| | | | 02.4 | 지방 기반 디저트, 카테고리 01.7 유제품 기반 디저트 제외 | |
| 8. 면류 | 8. 면류의 모든 세분류는 필리핀의 식품첨가물규정 내 식품분류 중 우 측의 식품유형("06.4 파스타 및 면류 및 유사제품 (예. 라이스페이퍼, 라이 스 버미첼리)"에 모두 해당됨 | | 06.4 | 파스타 및 면류 및 유사제품 (예. 라이스 페이퍼, 라이스 버미첼리) | |
| | | 생면 | 06.4.1 | 생파스타 및 면류 및 유사제품 | |
| | | 숙면 | | | |
| | | 건면 | 06.4.2 | 조리된 혹은 건조 파스타 및 면류와 유사 제품 | |
| | | 유탕면 | 06.4.2 | 조리된 혹은 건조 파스타 및 면류와 유사 제품 | |
| 9. 음료류 | 9. 음료류의 모든 중/세분류는 필 리핀의 식품첨가물규정 내 식품분 류 중 우측의 식품유형("14.0 음료, 유제품 제외"에 모두 해당됨 | | 14.0 | 음료, 유제품 제외 | |
| | 9-1. 다류 | 침출차 | 14.1.5 | 커피, 커피 대체품, 차, 허브음료, 코코아 를 제외한 기타 핫시리얼 및 곡물 음료 | |
| | | 액상차 | 14.1.5 | 커피, 커피 대체품, 차, 허브음료, 코코아 를 제외한 기타 핫시리얼 및 곡물 음료 | |
| | | 고형차 | 14.1.5 | 커피, 커피 대체품, 차, 허브음료, 코코아 를 제외한 기타 핫시리얼 및 곡물 음료 | |
| | 9-2. 커피 | 커피 | 14.1.5 | 커피, 커피 대체품, 차, 허브음료, 코코아 를 제외한 기타 핫시리얼 및 곡물 음료 | |
| | 9-3. 과일·채 소류음료 | 농축과·채즙 과·채주스 과·채음료 | | 14.1.2 | 과일 및 채소주스 |
| | | | | 14.1.2.1 | 캔포장 및 병포장 (저온살균) 과일주스 |
| | | | | 14.1.2.2 | 캔포장 및 병포장 (저온살균) 채소주스 |
| | | | | 14.1.2.3 | 과일주스 농축 (액상 및 고형) |
| | | | | 14.1.2.4 | 채소주스 농축 (액상 및 고형) |
| | | | 14.1.3 | 과일 및 채소넥타 | |
| | | | 14.1.3.1 | 캔포장 및 병포장 (저온살균한) 과일넥타 | |
| | | | 14.1.3.2 | 캔포장 및 병포장 (저온살균한) 채소넥타 | |
| | 14.1.3.3 | 과일넥타 농축 (액상 및 고형) | | | |
| | 14.1.3.4 | 채소넥타 농축 (액상 및 고형) | | | |

| 신식품공전 | | | 필리핀 :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식품유형) | Food category number | 필리핀 식품유형(한국어) |
| | 9-4. 탄산음료류 | 탄산음료 | 14.1 | 무알코올 ("탄산") 음료 |
| | | | 14.1.1.2 | 식용 물 및 소다류 |
| | | 탄산수 | 14.1.2 | 과일 및 채소주스 |
| | | | 14.1.4.1 | 탄산음료 |
| | 9-5. দুয়ু류 | 원액두유 가공두유 | | |
| | 9-6. 발효음료류 |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 | |
| | 9-7. 인삼, 홍삼음료 | 인삼, 홍삼음료 | | |
| | 9-8. 기타음료 | 혼합음료 음료베이스 | 14.1.4 | 물 기반 향첨가 음료, "스포츠" 및 "전해질" 음료, 미립자 음료 포함 |
| | | | 14.1.4.2 | 비탄산음료, 펀치 및 에이드 포함 |
| | | | 14.1.4.3 | 음료 농축 (액상 및 고형) |
| 10. 특수용도식품 | 10. 특수용도식품의 모든 중/세분류는 필리핀의 식품첨가물규정 내 식품분류 중 우측의 식품유형("13.0 특수영양제품"에 모두 해당됨) | | 13.0 | 특수영양제품 |
| | 10-1. 조제유류 | 영아용 조제유 | 01.5 | 우유분말 및 크림분말 |
| | | | 01.5.1 | 우유분말 및 크림분말(플레인) |
| | | 성장기용 조제유 | 01.5.2 | 우유 및 크림분말 유사제품 |
| | | | 01.5.3 | 우유 및 크림(혼합)분말(플레인 및 향첨가) |
| | 10-2. 영아용 조제식 | 영아용 조제식 | 13.1 | 영아용, 성장기용 조제식 |
| | | | 13.2 | 영아용 및 성장기용 이유식 |
| | 10-3. 성장기용 조제식 | 성장기용 조제식 | 13.1 | 영아용, 성장기용 조제식 |
| | | | 13.2 | 영아용 및 성장기용 이유식 |
| | 10-4. 영아용 곡류 조제식 | 영아용곡류조제식 | 13.1 | 영아용, 성장기용 조제식 |
| | | | 13.2 | 영아용 및 성장기용 이유식 |
| | 10-5. 기타 영·유아식 | 기타영·유아식 | 13.1 | 영아용, 성장기용 조제식 |
| | | | 13.2 | 영아용 및 성장기용 이유식 |

| 신식품공전 | | | 필리핀 :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식품유형) | Food category number | 필리핀 식품유형(한국어) | | |
| | 10-6. 특수 의료용도등 식품 | 환자용식품 선천성 대사질환 자용 식품 유단백알레르기영· 유아용특수조제식품 영·유아용 특수조 제식품 | 13.3 | 특수의료용도 식사요법 식품, 영유아용 포함 | | |
| | 10-7. 체중 조절용 조 제식품 |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 | 13.4 | 체중조절용 조제식 | | |
| | | | 13.5 | 다이어트 식품 (예. 체중조절용 보충식), 식품 카테고리 13.1 - 13.4 제외 | | |
| 10-8. 임신·수 유부용식품 | 임산·수유부용식품 | | | | | |
| 11. 장류 | | 한식메주 | | | | |
| | | 개량메주 | | | | |
| | | 한식간장 | | | | |
| | | 양조간장 | | | | |
| | | 산분해간장 | | | | |
| | | 효소분해간장 | | | | |
| | | 혼합간장 | | | | |
| | | 한식된장 | | | | |
| 12. 조미식품 | 12-1. 식초 | 발효식초 | 12.3 | 식초 | | |
| | | 희석초산 | | | | |
| | | 소스 | | | 12.0 | 소금, 향신료, 수프, 소스, 샐러드, 단백질 제품 등 |
| | | | | | 12.4 | 머스타드 |
| | | | | | 12.6 | 소스 및 유사제품 |
| | | | | | 12.6.1 | 에멀션 소스 (예. 마요네즈, 샐러드 드레 싱, 대두소스) |
| | | | | | 12.6.2 | 비에멀션 소스 (예. 케첩, 치즈소스, 크림 소스, 브라운그레이비) |
| 12.6.3 | 소스와 그레이비소스용 믹스 | | | | | |
| 12.6.4 | 맑은 소스 (예. 대두소스, 생선소스) | | | | | |

| 신식품공전 | | | 필리핀 :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식품유형) | Food category number | 필리핀 식품유형(한국어) |
| | 12-3. 카레 (커리) | 카레(커리)분 | 12.0 | 소금, 향신료, 수프, 소스, 샐러드, 단백질 제품 등 |
| | | 카레(커리) | 12.2 | 허브, 향신료, 양념 (소금 대체품 포함) 및 콘디멘트 |
| | 12-4. 고춧 가루 또는 실고추 | 고춧가루 | 12.0 | 소금, 향신료, 수프, 소스, 샐러드, 단백질 제품 등 |
| | | 실고추 | | |
| | 12-5. 향신 료가공품 | 천연향신료 | 12.0 | 소금, 향신료, 수프, 소스, 샐러드, 단백질 제품 등 |
| | | 향신료조제품 | 12.2 | 허브, 향신료, 양념 (소금 대체품 포함) 및 콘디멘트 |
| | | | 12.2.1 | 허브 및 향신료 (허브만) |
| | 12-6. 식염 | 천일염 재제소금 (재제조소금) | 12.0 | 소금, 향신료, 수프, 소스, 샐러드, 단백질 제품 등 |
| | |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 12.1 | 소금 |
| | 13. 절임류 또는 조림류 | 13-1. 김치류 | 김치속 김치 | |
| 13-2. 절임류 | | 절임식품 | 04.1.2.3 | 식초, 오일, 소금물에 절인 과일 |
| | | 당절임 | 04.1.2.7 | 당절임 과일 |
| 13-3. 조림류 | | 조림류 | 04.2.2.3 | 식초, 오일, 소금물 및 대두소스에 절인 채소 및 해조류 |
| 14. 주류 | 14. 주류의 모든 세분류는 필리핀 의 식품첨가물규정 내 식품분류 중 우측의 식품유형("14.2알코올음 료, 무알코올 및 저알코올 포함"에 모두 해당됨 | | 14.2 | 알코올음료, 무알코올 및 저알코올 포함 |
| | | 탁주 | | |
| | | 약주 | | |
| | | 청주 | | |
| | | 맥주 | 14.2.1 | 맥주 및 맥아음료 |
| | 과실주 | | 14.2.2 | 사과주 및 페리 |
| | | | 14.2.3 | 와인 |
| | | 14.2.3.1 | 스틸와인 | |

| 신식품공전 | | | 필리핀 :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식품유형) | Food category number | 필리핀 식품유형(한국어) | | |
| | | | 14.2.3.2 | 탄산/반탄산 와인 | | |
| | | | 14.2.3.3 | 알코올강화 와인 및 리큐어(liqueur) 와인 | | |
| | | | 14.2.3.4 | 아로마와인 | | |
| | | | 14.2.4 | 과일와인 | | |
| | | 소주 | 14.2.6 | 증류주 | | |
| | | | 14.2.6.1 | 알코올 함유 15% 이상 증류주 | | |
| | | 위스키 | 14.2.6 | 증류주 | | |
| | | | 14.2.6.1 | 알코올 함유 15% 이상 증류주 | | |
| | | 브랜디 | 14.2.6 | 증류주 | | |
| | | | 14.2.6.1 | 알코올 함유 15% 이상 증류주 | | |
| | | 일반증류주 | 14.2.6 | 증류주 | | |
| | | | 14.2.6.1 | 알코올 함유 15% 이상 증류주 | | |
| | | 리큐르 | 14.2.6 | 증류주 | | |
| | | | 14.2.6.1 | 알코올 함유 15% 이상 증류주 | | |
| | | | 14.2.6.2 | 알코올 함유 15% 미만 증류주 | | |
| | | 기타 주류 | 14.2.5 | 꿀술 | | |
| | | 주정 | | | | |
| | | 15. 농산가 공식품류 | 15-1. 전분류 | 전분 | 06.0 | 곡류 및 곡류 가공품 (뿌리 및 줄기(과경), 콩류 및 콩과식물 전분 및 밀가루를 포함하나, 식품 카테고리 07.0의 베이커리용 제외) |
| | | | | | 06.2 | 밀가루 및 전분 |
| | | | | 전분가공품 | 15.1 | 스낵 - 감자, 곡물, 밀가루 및 (뿌리 및 줄기(과경), 콩류 및 콩과식물로부터의) 전분 기반 |
| 15-2. 밀가루류 | 밀가루 | | 06.0 | 곡류 및 곡류 가공품 (뿌리 및 줄기(과경), 콩류 및 콩과식물 전분 및 밀가루를 포함하나, 식품 카테고리 07.0의 베이커리용 제외) | | |
| | 영양강화 밀가루 | | 06.2 | 밀가루 및 전분 | | |
| 15-3.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 땅콩 버터 | | 04.2.1.2 | 신선 채소, 견과류 및 씨앗류 (표면처리) | | |
| | | | 04.2.1.3 | 채소류, 견과류 및 씨앗류 (껍질을 벗기거나 자른, 세절한) | | |
| | | | 04.2.2 | 가공 채소, 해조류, 견과류 및 씨앗류 | | |
|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 | 04.2.2.2 | 건조 채소, 해조류, 견과류 및 씨앗류 | | |
| | | | 04.2.2.5 | 채소, 견과류 및 씨앗류 푸레 및 스프레드 (예. 땅콩버터) | | |
| | | | 04.2.2.6 | 채소, 견과류 및 씨앗류 가공용 재료 (예. 채소 디저트 및 소스, 당절임 채소, 대두 커드), 식품카테고리 이외 | | |
| 15.2 | 가공 견과류, 코팅된 견과류 및 견과류 믹스 포함 (예. 건조 과일) | | | | | |

| 신식품공전 | | | 필리핀 :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식품유형) | Food category number | 필리핀 식품유형(한국어) |
| | 15-4. 시리얼류 | 시리얼류 | 06.0 | 곡류 및 곡류 가공품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및 콩과식물 전분 및 밀가루를 포함하나, 식품 카테고리 07.0의 베이커리용 제외) |
| | | | 06.3 | 아침식사용 시리얼, 으깬 귀리 포함 |
| | 15-5. 찌낱 | 찌낱 | 06.0 | 곡류 및 곡류 가공품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및 콩과식물 전분 및 밀가루를 포함하나, 식품 카테고리 07.0의 베이커리용 제외) |
| | 15-6. 효소식품 | 효소식품 | | |
| 15-7. 기타 농산가공품 | 과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 | 과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 | 04.0 | 과일 및 채소 (버섯 및 균류,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및 콩과식물 포함), 해조류, 견과류 및 씨앗류 |
| | | | 04.1.1.2 | 신선 과일 (표면처리) |
| | | | 04.1.1.3 | 신선 과일 (껍질을 벗기거나 자른) |
| | | | 04.1.2 | 가공 과일 |
| | | | 04.1.2.1 | 냉동 과일 |
| | | | 04.1.2.2 | 건조 과일 |
| | | | 04.1.2.8 | 가공용 과일재료, 펄프, 껴레, 과일 토폰 및 코코넛 우유 포함 |
| | | | 04.1.2.9 | 과일 기반 디저트, 과일 향첨가 물 기반 디저트 포함 |
| | | | 04.1.2.12 | 조리 및 튀긴 과일 |
| | | | 04.2 | 채소 (버섯 및 균류,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및 콩과식물 포함), 해조류, 견과류 및 씨앗류 |
| | | | 04.2.1.2 | 신선 채소, 견과류 및 씨앗류 (표면처리) |
| | | | 04.2.1.3 | 채소류, 견과류 및 씨앗류 (껍질을 벗기거나 자른, 세절한) |
| | | | 04.2.2 | 가공 채소, 해조류, 견과류 및 씨앗류 |
| | | | 04.2.2.1 | 냉동 채소 |
| | | | 04.2.2.2 | 건조 채소, 해조류, 견과류 및 씨앗류 |
| | | | 04.2.2.6 | 채소, 견과류 및 씨앗류 가공용 재료 (예. 채소 디저트 및 소스, 당절임 채소, 대두 커드), 식품카테고리 이외 |
| 04.2.2.8 | 조리 및 튀긴 채소, 해조류 | | | |
| | | 06.0 | 곡류 및 곡류 가공품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및 콩과식물 전분 및 밀가루를 포함하나, 식품 카테고리 07.0의 베이커리용 제외) | |

| 신식품공전 | | | 필리핀 :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 |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식품유형) | Food category number | 필리핀 식품유형(한국어) | | | | |
| 16. 식육 가공품 | | | 06.1 | 통곡, 분쇄곡 및 플레이크 곡물 (쌀 포함) | | | | |
| | | | 06.5 | 곡류 및 전분 기반 디저트 (예. 라이스푸딩, 타피오카푸딩) | | | | |
| | | | 06.6 | 배터(튀김반죽) (예. 생선 및 가금육 배터 및 브레딩용) | | | | |
| | 16-1. 햄류 | 햄 생햄 프레스햄 | | 08.0 | 육류 및 식육가공품, 가금육 및 수렵육 포함 | | | |
| | | | | 08.2 | 가공 육류, 가금육, 수렵육 (덩어리 및 자른) | | | |
| | | | | 08.2.1 | 비열처리 가공 육류, 가금육, 수렵육 (덩어리 및 자른) | | | |
| | | | | 08.2.1.1 | 큐어링(염장 포함)한 비열처리 가공 육류, 가금육, 수렵육 (덩어리 및 자른) | | | |
| | | | | 08.2.1.2 | 큐어링(염장 포함)한 건조 비열처리 가공 육류, 가금육, 수렵육 (덩어리 및 자른) | | | |
| | | | | 08.2.1.3 | 숙성 비열처리 가공 육류, 가금육, 수렵육 (덩어리 및 자른) | | | |
| | | | | 08.2.2 | 열처리 가공 육류, 가금육, 수렵육 (덩어리 및 자른) | | | |
| | | | | 16-2. 소시지류 |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 | 08.3 | 분쇄 가공 육류, 가금육, 수렵육 |
| | | | | | | | 08.3.1 | 비열처리 분쇄 가공 육류, 가금육, 수렵육 |
| | | | | | | | 08.3.1.1 | 큐어링(염장 포함)한 비열처리 분쇄 가공 육류, 가금육, 수렵육 |
| | | | | | | | 08.3.1.2 | 큐어링(염장 포함) 및 건조 비열처리 분쇄 가공 육류, 가금육, 수렵육 |
| | | | | | | | 08.3.1.3 | 숙성 비열처리 분쇄 가공 육류, 가금육, 수렵육 |
| 08.3.2 | 열처리 분쇄 가공 육류, 가금육, 수렵육 | | | | | | | |
| 16-3. 베이컨류 | 베이컨류 | | 08.2 | 가공 육류, 가금육, 수렵육 (덩어리 및 자른) | | | | |
| | | | 08.2.2 | 열처리 가공 육류, 가금육, 수렵육 (덩어리 및 자른) | | | | |

| 신식품공전 | | | 필리핀 :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식품유형) | Food category number | 필리핀 식품유형(한국어) |
| | 16-4. 건조 저장육류 | 건조저장육류 | 08.2.1.2 | 큐어링(염장 포함)한 건조 비열처리 가공 육류, 가금육, 수렵육 (덩어리 및 자른) |
| | | | 08.3.1.2 | 큐어링(염장 포함) 및 건조 비열처리 분쇄 가공 육류, 가금육, 수렵육 |
| | 16-5. 양념육류 | 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천연케이싱 | 08.2 | 가공 육류, 가금육, 수렵육 (덩어리 및 자른) |
| | | | 08.3 | 분쇄 가공 육류, 가금육, 수렵육 |
| | | | 08.4 | 케이싱 (예. 소시지 케이싱) |
| | 16-6. 식육 추출가공품 | 식육추출가공품 | | |
| | 16-7. 식육 함유가공품 | 식육함유가공품 | 08.2 | 가공 육류, 가금육, 수렵육 (덩어리 및 자른) |
| | | | 08.3 | 분쇄 가공 육류, 가금육, 수렵육 |
| | 16-8. 포장육 | 포장육 | 08.1.1 | 신선 육류, 가금육, 수렵육 (덩어리 및 자른) |
| | | | 08.1.2 | 신선 육류, 가금육, 수렵육 (다진) |
| | | | 08.2.3 | 냉동 가공 육류, 가금육, 수렵육 (덩어리 및 자른) |
| | | | 08.3.3 | 냉동 분쇄 가공 육류, 가금육, 수렵육 |
| 17. 알가 공품류 | 17. 알가공품의 모든 중/세분류는 필리핀의 식품첨가물규정 내 식품분류 중 우측의 식품유형("10.0 계란 및 계란가공품")에 모두 해당됨 | | 10.0 | 계란 및 계란가공품 |
| | 17-1. 알 가공품 |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 10.2 | 계란가공품 |
| | | | 10.2.1 | 액상 전란 |
| | | | 10.2.2 | 냉동 계란 |
| | | | 10.2.3 | 건조 및 열처리 응고 계란 |
| | 10.3 | 보존처리한 계란, 알칼리, 염장, 통조림 계란 포함 | | |
| 17-2. 알 함유가공품 | 알함유가공품 | 10.4 | 계란 기반 디저트 (예. 커스터드) | |
| 18. 유가공품 | 18. 유가공품의 모든 중/세분류는 필리핀의 식품첨가물규정 내 식품분류 중 우측의 식품유형("1.0 유제품, 카테고리 02.0 제외")에 모두 해당됨 | | 01.0 | 유제품, 카테고리 02.0 제외 |
| | 18-1. 우유류 | 우유 환원유 | 01.1 | 우유 및 유제품 기반 음료 |
| | | | 01.1.1 | 우유 및 버터밀크 |
| | | | 01.1.1.1 | 우유, 살균 및 UHT 염소 우유 포함 |

| 신식품공전 | | | 필리핀 :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식품유형) | Food category number | 필리핀 식품유형(한국어) |
| | 18-2. 가공유류 | 강화우유 | 01.1 | 우유 및 유제품 기반 음료 |
| | | 유산균첨가우유 | 01.1.1 | 우유 및 버터밀크 |
| | |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 01.1.2 | 유제품 기반 음료, 향첨가 및 발효된 (예. 초콜렛 우유, 코코아, 에그노그, 드링킹요거트, 유청 기반 음료) |
| | 18-3. 산양유 | 산양유 | 01.1.1.1 | 우유, 살균 및 UHT 염소 우유 포함 |
| | 18-4. 발효유류 | 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 01.2 | 발효 및 레닛우유 제품 (플레인), 카테고리 01.1.2 (유제품 기반 음료) 제외 |
| | | | 01.2.1 | 발효우유(플레인) |
| | | | 01.2.1.1 | 발효우유(플레인), 발효 후 비열처리 |
| | | | 01.2.1.2 | 발효우유(플레인), 발효 후 열처리 |
| | | | 01.2.2 | 레닛우유 |
| | 18-5. 버터유 | 버터유 | 01.1.1 | 우유 및 버터밀크 |
| | | | 01.1.1.2 | 버터밀크(플레인) |
| | 18-6. 농축유류 |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 01.1 | 우유 및 유제품 기반 음료 |
| | | | 1.3 | 연유 및 유사제품 |
| | | | 01.3.1 | 연유(플레인) |
| | | | 01.3.3 | 가당연유(플레인 및 향첨가) 및 유사제품 |
| | 18-7. 유크림류 | 유크림 | 01.3.2 | 음료 화이트너 |
| | | | 01.4 | 크림 및 유사제품(플레인) |
| | | | 01.4.1 | 저온살균크림 |
| | | | 01.4.2 | 살균크림, UHT크림, 휘핑크림, 휘핑크림, 저지방크림 |
| | | | 01.4.3 | 응고크림 |
| | | 가공유크림 | 01.4.4 | 크림 유사제품 |
| | | | 01.5 | 우유분말 및 크림분말 |
| | | | 01.5.1 | 우유분말 및 크림분말(플레인) |
| | | | 01.5.2 | 우유 및 크림분말 유사제품 |
| | | | 01.5.3 | 우유 및 크림(혼합)분말(플레인 및 향첨가) |
| | 18-8. 버터류 | 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 02.1.1 | 버터오일, 무수유지방, 기(ghee) |
| | | | 02.2.1.1 | 버터 및 농축버터 |
| | 18-9. 치즈류 | 자연치즈 | 01.6 | 치즈 |
| | | | 01.6.1 | 비숙성 치즈 |
| | | | 01.6.2 | 숙성치즈 |
| | | | 01.6.2.1 | 숙성치즈, 껍질 포함 |
| | | | 01.6.2.2 | 숙성치즈 껍질 |
| | | | 01.6.2.3 | 치즈분말 (재가공용; 예. 치즈소스용) |
| 가공치즈 | | 01.6.3 | 유청치즈 | |
| | | 01.6.4 | 가공치즈 | |
| | | 01.6.4.1 | 플레인 가공치즈 | |

| 신식품공전 | | | 필리핀 :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 |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식품유형) | Food category number | 필리핀 식품유형(한국어) | |
| | | | 01.6.4.2 | 향첨가 가공치즈, 과일, 채소, 고기 포함 | |
| | | | 01.6.5 | 치즈 유사제품 | |
| | | | 01.6.6 | 유청단백질치즈 | |
| | 18-10. 분유류 |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 | 01.5 | 우유분말 및 크림분말 |
| | | | | 01.5.1 | 우유분말 및 크림분말(플레인) |
| | | | | 01.5.2 | 우유 및 크림분말 유사제품 |
| | | | | 01.5.3 | 우유 및 크림(혼합)분말(플레인 및 향첨가) |
| | 18-11. 유청류 | 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 | 01.8 | 유청 및 유청제품, 유청치즈 제외 |
| | 18-12. 유당 | 유당 | | | |
| | 18-13. 유단 백가수분해 식품 | 유단백가수분해식품 | | | |
| | 19. 수산가 공식품류 | 19. 수산가공식품의 모든 중/세분류 필리핀의 식품첨가물규정 내 식품분류 중 우측의 식품유형 ("09.0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에 모두 해당됨 | | 09.0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
| | | 19-1. 어육 가공품류 | 어육살 | | 09.2 |
| 연육 | | | | 09.2.1 | 냉동 수산물, 필릿 및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
| 어육반제품 | | | | 09.2.2 | 반죽을 입힌 냉동 수산물, 필릿 및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
| 어묵 | | | | 09.2.3 | 다진 수산가공품 및 연육 (냉동)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
| 어육소시지 | | | | 09.2.4 | 조리 및 튀긴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
| | | | | 09.2.4.1 | 조리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 | | | | 09.2.4.2 | 조리된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
| 기타 어육가공품 | | | | 09.2.4.3 | 튀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

| 신식품공전 | | | 필리핀 :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식품유형) | Food category number | 필리핀 식품유형(한국어) |
| | 19-2. 젓갈류 | 젓갈 | 09.2 |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
| | | | 09.2.5 | 훈제 건조 숙성 및 염장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
| | | 양념젓갈 | 09.3 | 반보존처리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
| | | | 09.3.1 | 젤리 및 마리네이드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
| | | 액젓 | 09.3.2 | 식초나 소금물에 절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
| | | | 09.3.4 | 반보존처리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예. 생선 페이스트), 식품 카테고리 09.3.1 - 09.3.3 제외 |
| | | 조미액젓 | 09.4 | 보존처리한 (통조림 및 숙성)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
| | 09.2 | |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 |
| | 19-3. 건포류 | 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 건포류 | 09.2.5 | 훈제 건조 숙성 및 염장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
| | | | | |
| | 19-4. 조미김 | 조미김 | | |
| | 19-5. 한천 | 한천 | | |
| | 19-6. 기타 수산물 가공품 | 기타 수산물가공품 | 09.2 |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
| | | | 09.2.1 | 냉동 수산물, 필릿 및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
| | | | 09.2.2 | 반죽을 입힌 냉동 수산물, 필릿 및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
| | | | 09.2.3 | 다진 수산가공품 및 연육 (냉동)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
| | | | 09.2.4 | 조리 및 튀긴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
| | | | 09.2.4.1 | 조리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 | | | 09.2.4.2 | 조리된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
| | | | 09.2.4.3 | 튀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
| | | | 09.2.5 | 훈제 건조 숙성 및 염장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
| | | | 09.3 | 반보존처리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
| | | | 09.3.1 | 젤리 및 마리네이드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

| 신식품공전 | | | 필리핀 :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식품유형) | Food category number | 필리핀 식품유형(한국어) |
| | | | 09.3.2 | 식초나 소금물에 절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
| | | | 09.3.3 | 연어 대체품, 캐비어 및 기타 어란류 |
| | | | 09.3.4 | 반보존처리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예. 생선 페이스트), 식품 카테고리 09.3.1 - 09.3.3 제외 |
| | | | 09.4 | 보존처리한 (통조림 및 숙성)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
| | | | 15.3 | 스낵 - 수산물 기반 |
| 20. 동물성 가공식품류 | 20-1. 기타 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 기타식육 또는 기타 알 기타동물성가공식품 | | |
| | 20-2. 곤충 가공식품 | 곤충가공식품 | | |
| | 20-3. 자라 가공식품 | 자라분말 자라분말제품 자라유제품 | | |
| | 20-4. 추출 가공식품 | 추출가공식품 | | |
| 21. 벌꿀 및 화분가공품 | 21-1. 벌꿀류 | 벌집꿀 벌꿀 사양벌집꿀 사양벌꿀 | 11.3 | 꿀 |
| | 21-2. 로얄 젤리류 | 로얄젤리 로얄젤리제품 | | |
| | 21-2. 화분 식품 | 가공화분 화분함유제품 | | |
| 22. 즉석 식품류 | 22-1. 생식류 | 생식제품 생식함유제품 | | |
| | 22-2. 즉석 섭취·편의식 품류 | 즉석섭취식품 | 12.5 | 수프와 브로스(broth) |
| | | | 12.5.1 | 즉석섭취 수프와 브로스(broth), 통조림, 병포장 및 냉동 포함 |
| | | 신선편의식품 | 12.5.2 | 수프와 브로스(broth) 믹스 |
| | | | 15.0 | 즉석섭취 사보리(savory)스낵 |
| | | 즉석조리식품 | 15.1 | 스낵 - 감자, 곡물, 밀가루 및 (뿌리 및 줄기 (괴경), 콩류 및 콩과식물로부터의) 전분 기반 가공 견과류, 코팅된 견과류 및 견과류 믹스 포함 (예. 건조 과일) |
| | | | 15.2 | 스낵 - 수산물 기반 |
| | | | | 15.3 |

| 신식품공전 | | | 필리핀 :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 |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식품유형) | Food category number | 필리핀 식품유형(한국어) | |
| | 22-3. 만두류 | 만두 만두피 | | | |
| 23. 기타 식품류 | 23-1. 효모식품 | 효모식품 | 12.8 | 이스트 및 유사제품 | |
| | 23-2. 기타가공품 | 기타가공품 | 12.9 | 단백질 제품 | |
| 24. 그 외 분류 | 장기보존식품 | 병통조림식품 | 04.1.2.4 | 통조림 및 병조림(저온살균)과일 | |
| | | | 04.2.2.4 | 통조림, 병조림(저온살균), 레토르트 포장 채소 | |
| | | | 09.4 | 보존처리한 (통조림 및 숙성) 수산물 및 수 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 |
| | | | 10.3 | 보존처리한 계란, 알칼리, 염장, 통조림 계란 포함 | |
| | | | 12.5.1 | 즉석섭취 수프와 브로스(broth), 통조림, 병포장 및 냉동 포함 | |
| | | 레토르트식품 | | | |
| | | 냉동식품 | | | |
| | 식품원료 | 식물성 원료 동물성 원료 | | | |
| | | | | | |
| | 그외 분류 | 그외 분류 | 14.1.1 | 음용수 | |
| 16.0 | | | 혼합식품 (예. 캐서롤, 미트파이, 다진고 기) - 카테고리 01 - 15 외 식품 |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들은 그 외의 분류로 구분하였으며, at KATI에도 올라가 있음

*식품첨가물규정 내 식품유형 중 원물과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 품목 제외

[표 2-6] 한국 식품공전 분류에 따른 필리핀 유해물질규정 식품유형 분류

| 신식품공전 | | | 필리핀 : 유해물질규정 기준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식품유형) | 필리핀 식품유형(한국어) |
|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 과자 | 옥수수튀김 스낵(Chichacorn) |
| | | | 밀가루 기반 전통 제과류(Polvoron, Piaya 및 Barquillos) |
| | | | 우유 기반 전통제과류(Pastillas 및 yema) |
| | | | 우유 기반 전통제과류(Pastillas 및 yema): 파스티야(Pastillas) |
| | | | 우유 기반 전통제과류(Pastillas 및 yema): 예마(Yema) |
| | | 캔디류 | |
| | | 주잉껌 | |
| 2. 빙과류 | 2-1. 아이스크림류 | 아이스크림 | |
| | | 저지방아이스크림 | |
| | | 아이스밀크 | |
| | | 샤베트 | |
| | 2-2. 아이스크림믹스류 | 비유지방아이스크림 | |
| | | 아이스크림믹스 | |
| | |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 |
| 2-3. 빙과 | 아이스밀크믹스 | | |
| | 샤베트믹스 | | |
| 2-4. 얼음류 |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 | |
| | 빙과 | | |
| 3. 코코아가 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3-1. 코코아가공품류 | 식용얼음 | |
| | | 어업용얼음 | |
| | 3-2. 초콜릿류 | 코코아매스 | |
| | | 코코아버터 | |
| 4. 당류 | 4-1. 설탕류 | 코코아분말 | |
| | | 기타 코코아가공품 | |
| 4-2. 당시럽류 | 4-1. 설탕류 | 초콜릿 | |
| | | 밀크초콜릿 | |
| 4-2. 당시럽류 | 4-1. 설탕류 | 화이트초콜릿 | |
| | | 준초콜릿 | |
| 4-2. 당시럽류 | 4-1. 설탕류 | 초콜릿가공품 | |
| | | 4-2. 당시럽류 | 백설탕 |
| 4-2. 당시럽류 | 4-1. 설탕류 | 설탕 | 백설탕, 고급 및 표준 등급 |
| | | 기타설탕 | 경지백당 |
| 4-2. 당시럽류 | 4-1. 설탕류 | 당시럽류 | |
| | | | |

| 신식품공전 | | | 필리핀 : 유해물질규정 기준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식품유형) | 필리핀 식품유형(한국어) |
| | 4-3. 올리고당류 | 올리고당 | |
| | | 올리고당가공품 | |
| | 4-4. 포도당 | 포도당 | |
| | 4-5. 과당류 | 과당 | |
| | | 기타과당 | |
| | 4-6. 엿류 | 물엿 | |
| | | 기타엿 | |
| | | 덱스트린 | |
| | 4-7. 당류 가공품류 | 당류가공품류 | 코코넛젤리 시럽 |
| | | | 코코넛젤리 시럽: 산성 코코넛젤리 시럽 |
| 5. 잼류 | | 잼 | 자색고구마(우베) 잼(halaya) |
| | | 기타잼 | |
| 6. 두부류 또는 목류 | | 두부 | |
| | | 유바 | |
| | | 가공두부 | |
| | | 목류 | |
| 7. 식용유지류 | 7-1. 식물성 유지류 | 콩기름(대두유) | |
| | | 옥수수기름(옥배유) | |
| | |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 |
| | | 미강유(현미유) | |
| | | 참기름 | |
| | | 추출참깨유 | |
| | | 들기름 | |
| | | 추출들깨유 | |
| | |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 |
| | | 해바라기유 | |
| | | 목화씨기름(면실유) | |
| | | 땅콩기름(낙화생유) | |
| | | 올리브유 | |
| | | 팜유 | |
| | | 팜올레인유 | |
| | 팜스테아린유 | | |
| | 팜핵유 | | |
| 야자유 | | | |
| 고추씨기름 | | | |
| 기타식물성유지 | 버진 코코넛 오일(VCO) | | |
| 7-2. 동물성 유지류 | | 식용우지 | |
| | | 원료우지 | |

| 신식품공전 | | | 필리핀 : 유해물질규정 기준 |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식품유형) | 필리핀 식품유형(한국어) | |
| | 7-3. 식용유지 가공품 | 식용단지 | | |
| | | 원료단지 | | |
| | | 기타동물성유지 | | |
| | | 혼합식용유 | | |
| | | 향미유 | | |
| | | 가공유지 | | |
| | | 쇼트닝 | | |
| | | 마가린류 | | |
| | | 모조치즈 | | |
| | | 식물성크림 | | |
|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 | | | |
| 8. 면류 | | 생면 | | |
| | | 숙면 | | |
| | | 건면 | | |
| | | 유탕면 | 유탕면(Pancit canto) | |
| 9. 음료류 | 9-1. 다류 | 침출차 | | |
| | | 액상차 | | |
| | | 고형차 | | |
| | 9-2. 커피 | 커피 | | |
| | | 농축과·채즙 과·채주스 과·채음료 | 망고음료 제품 망고음료 제품: 휘레 망고음료 제품: 넥타 망고음료 제품: 주스 망고음료 제품: 과즙음료 망고음료 제품: 향첨가 과즙음료 망고음료 제품: 분말주스/음료 | |
| | 9-3. 과일·채소류 음료 | | 감귤류 음료 제품 | |
| | | | 감귤류 음료 제품: 설탕 농축물 | |
| | | | 감귤류 음료 제품: 설탕 농축물: 칼라만시 설탕 농축물 | |
| | | | 감귤류 음료 제품: 설탕 농축물: 오렌지 설탕 농축물 | |
| | | | 감귤류 음료 제품: 칼라만시 주스 | |
| | | | 감귤류 음료 제품: 오렌지 주스 | |
| | | | 감귤류 음료 제품: 향 첨가 과즙음료 | |
| | | | 감귤류 음료 제품: 탄산음료(소다) | |
| | | | 감귤류 음료 제품: 분말주스/음료 | |
| | | | 냉장 미숙 코코넛 물/음료 | |
| | 9-4. 탄산음료류 | 탄산음료 | | |
| | | 탄산수 | 감귤류 음료 제품: 탄산음료(소다) | |
| 9-5. 두유류 | 원액두유 | | | |
| | 가공두유 | | | |

| 신식품공전 | | | 필리핀 : 유해물질규정 기준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식품유형) | 필리핀 식품유형(한국어) |
| | 9-6. 발효음료류 |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 |
| | 9-7. 인삼, 홍삼음료 | 인삼, 홍삼음료 | |
| | 9-8. 기타음료 | 혼합음료 음료베이스 | |
| 10. 특수 용도식품 | 10-1. 조제유류 |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 |
| | 10-2. 영아용 조제식 | 영아용 조제식 | |
| | 10-3. 성장기용 조제식 | 성장기용 조제식 | |
| | 10-4.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 영·유아용곡류조제식 | |
| | 10-5. 기타 영·유아식 | 기타영·유아식 | |
| | 10-6. 특수의료 용도등 식품 | 환자용식품 산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유단백알레르기영·유 아용특수조제식품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 |
| | 10-7. 체중조 절용 조제식품 |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
| | 10-8. 임신· 수유부용식품 | 임산·수유부용식품 | |
| 11. 장류 | | 한식메주 | |
| | | 개량메주 | |
| | | 한식간장 | |
| | | 양조간장 | |
| | | 산분해간장 | |
| | | 효소분해간장 | |
| | | 혼합간장 | |
| | | 한식된장 | |
| | | 된장 | |
| 고추장 | | | |
| 춘장 | | | |
| 청국장 | | | |
| 혼합장 | | | |
| 기타장류 | | | |

| 신식품공전 | | | 필리핀 : 유해물질규정 기준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식품유형) | 필리핀 식품유형(한국어) |
| 12. 조미식품 | 12-1. 식초 | 발효식초 희석초산 | |
| | 12-2. 소스류 | 소스 | 전통식품 - 수프 및 소스용 건조 베이스 믹스 전통식품 - 수프 및 소스용 건조 베이스 믹스: 수프용 |
| | | 마요네즈 | 전통식품 - 수프 및 소스용 건조 베이스 믹스: 면제품용 |
| | | 토마토케첩 | 전통식품 - 수프 및 소스용 건조 베이스 믹스: 고기 및 해산물 요리용 |
| | | 복합조미식품 | 전통식품 - 수프 및 소스용 건조 베이스 믹스: 채소용 |
| | 12-3. 카레(커리) | 카레(커리)분 카레(커리) | |
| | 12-4.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 고춧가루 실고추 | |
| | 12-5. 향신료 가공품 | 천연향신료 향신료조제품 | |
| 12-6. 식염 | 천일염 재제소금(재제조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 | |
| 13. 절임류 또는 조림류 | 13-1. 김치류 | 김치속 김치 | |
| | 13-2. 절임류 | 절임식품 당절임 | 전통식품 - 당절임 |
| | | | 전통식품 - 당절임: 사탕야자나무 시럽 |
| | | | 전통식품 - 당절임: 잭프루트 시럽 |
| 전통식품 - 당절임: 바나나 시럽 | | | |
| 전통식품 - 당절임: 콩과식물(협과) 시럽 | | | |
| 전통식품 - 당절임: 코코넛 시럽 | | | |
| 전통식품 - 당절임: 혼합가공 시럽 | | | |
| 13-3. 조림류 | 조림류 | | |
| 14. 주류 | | 탁주 | |
| | | 약주 | |
| | | 청주 | |
| | | 맥주 | |
| | 과실주 | 과실주 | 사탕수수 와인(바시(basi)) |
| | | | 열대과일 와인 |
| | | | 열대과일 와인: 스파클링 와인 |
| 소주 | 열대과일 와인: 강화 와인 | | |

| 신식품공전 | | | 필리핀 : 유해물질규정 기준 |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식품유형) | 필리핀 식품유형(한국어) | |
| 15. 농산가 공식품류 | | 위스키 | | |
| | | 브랜디 | | |
| | | 일반증류주 | | |
| | | 리큐르 | | |
| | | 기타 주류 | | |
| | | | 주정 | |
| | | 15-1. 전분류 | 전분 전분가공품 | |
| | | 15-2. 밀가루 류 | 밀가루 영양강화 밀가루 | |
| | | 15-3.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류 | 땅콩 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 공품류 | 가공 필리 너트 제품 가공 필리 너트 제품: 통 필리너트 제품 가공 필리 너트 제품: 분리 필리너트 제품 가공 필리 너트 제품: 분쇄 필리너트 제품 |
| | | 15-4. 시리얼류 | 시리얼류 | |
| | | 15-5. 찌쌀 | 찌쌀 | |
| | | 15-6. 효소식품 | 효소식품 | |
| | | 15-7. 기타 농 산가공품 | 과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 | 바나나칩 건조 망고 제품 건조 열대과일 옥수수튀김 스낵(Chichacorn) 건조 코코넛 코코넛 가루 마링게이(모린가) 가루 마링게이(모린가) 오일 |
| | 16. 식육 가공품 | 16-1. 햄류 | 햄 생햄 프레스햄 | |
| | | 16-2. 소시지류 |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 |
| 16-3. 베이컨류 | | 베이컨류 | | |
| 16-4. 건조 저장육류 | | 건조저장육류 | | |
| 16-5. 양념육류 | | 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천연케이싱 | | |
| 16-6. 식육 추출가공품 | | 식육추출가공품 | | |

| 신식품공전 | | | 필리핀 : 유해물질규정 기준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식품유형) | 필리핀 식품유형(한국어) |
| | 16-7. 식육 함유가공품 | 식육함유가공품 | |
| | 16-8. 포장육 | 포장육 | |
| 17. 알가공 품류 | 17-1. 알가공품 |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 |
| | | 17-2. 알함유 가공품 | 알함유가공품 |
| 18. 유가공품 | 18-1. 우유류 | 우유 환원유 | 생우유 |
| | 18-2. 가공우유 | 강화우유 | |
| | | 유산균첨가우유 | |
| | |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 |
| | 18-3. 산양유 | 산양유 | |
| | 18-4. 발효유류 | 발효유 | 발효우유 |
| | | 농후발효유 | 발효우유: 요거트 |
| | | 크림발효유 | 발효우유: 대체 배양균 요거트 |
| | | 농후크림발효유 | 발효우유: 유산균 우유 |
| | | 발효버터유 | 발효우유: 케피르 (발효 알코올 유제품) |
| | | 발효유분말 | 발효우유: 크므즈 (마유 발효 알코올 유제품) |
| | | 발효우유: 농축 발효우유 | |
| | | 발효우유: 향첨가 발효우유 | |
| 18-5. 버터유 | 버터유 | 발효우유: 열처리 발효우유 | |
| 18-6. 농축우유 | 농축우유 | | |
| | 탈지농축우유 | | |
| |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 | |
| 18-7. 유크림류 | 유크림 가공유크림 | | |
| 18-8. 버터류 | 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 | |

| 신식품공전 | | | 필리핀 : 유해물질규정 기준 |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식품유형) | 필리핀 식품유형(한국어) | |
| | 18-9. 치즈류 | 자연치즈 가공치즈 | | |
| | 18-10. 분유류 |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 | |
| | | 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 | |
| | 18-12. 유당 | 유당 | | |
| | 18-13. 유단백 가수분해식품 | 유단백가수분해식품 | | |
| 19. 수산 가공식품류 | 19-1. 어육 가공품류 | 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어육소시지 기타 어육가공품 | 훈제 생선 필릿 | |
| | | 19-2. 젓갈류 |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 전통 식품 - 건조 염장 생선 |
| | | 19-3. 건포류 | 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 건포류 | 열처리 생선 제품 전통 식품 - 건조 염장 생선 |
| | | | 19-4. 조미김 | 조미김 |
| | | 19-5. 한천 | 한천 | |
| | 19-6. 기타 수 산물가공품 | 기타 수산물가공품 | 전통 식품 - 건조 염장 생선 열처리 생선 제품 훈제 생선 훈제 생선: 통훈제 생선 훈제 생선: 절단 훈제 생선 훈제 생선 필릿 어류 및 수산물 - 갯농어 - 신선냉장 및 신선냉동 어류 및 수산물 - 갯농어 - 신선냉장 및 신선냉 동: 전체; 어류 및 수산물 - 갯농어 - 신선냉장 및 신선냉 동: 전체-내장 제거 어류 및 수산물 - 갯농어 - 신선냉장 및 신선냉 동: 신선 뼈 제거 (양념된, 양념 되지 않은) 어류 및 수산물 - 갯농어 - 신선냉장 및 신선냉 동: 절단 (양념된, 양념 되지 않은) 신선-냉동 연계개 | |

| 신식품공전 | | | 필리핀 : 유해물질규정 기준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식품유형) | 필리핀 식품유형(한국어) |
| 20. 동물성 가공식품류 | 20-1. 기타식 육 또는 기타 알제품 |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기타동물성가공식품 | |
| | 20-2. 곤충 가공식품 | 곤충가공식품 | |
| | 20-3. 자라 가공식품 | 자라분말 자라분말제품 자라유제품 | |
| | 20-4. 추출 가공식품 | 추출가공식품 | |
| 21. 벌꿀 및 화분가공품 | 21-1. 벌꿀류 | 벌집꿀 벌꿀 사양벌집꿀 사양벌꿀 | |
| | 21-2. 로알젤 리류 | 로알젤리 로알젤리제품 | |
| | 21-2. 화분식품 | 가공화분 화분함유제품 | |
| 22. 즉석식품류 | 22-1. 생식류 | 생식제품 생식함유제품 | |
| | 22-2. 즉석섭 취·편의식품류 |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즉석조리식품 | 전통식품 - 수프 및 소스용 건조 베이스 믹스: 수프용 |
| | 22-3. 만두류 | 만두 만두피 | |
| 23. 기타식품류 | 23-1. 효모식품 | 효모식품 | |
| | 23-2. 기타 가공품 | 기타가공품 | 산업가공 작물 - 코코넛(Copra) |
| 24. 그외분류 | 장기보존식품 | 병통조림식품 | |
| | | 레토르트식품 | |
| | | 냉동식품 | |
| | 식품원료 | 식물성 원료 | |
| 동물성 원료 | | | |
| 그외 분류 | 그외 분류 | 음용수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들은 그 외의 분류로 구분하였으며, aT KATI에도 올라가 있음

4. 식품첨가물/유해물질 기준 데이터베이스 활용

- 주요 수출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에 대한 허용기준은 KATI(농식품수출정보) →제도→식품첨가물/유해물질을 통해 검색이 가능함

* <http://www.kati.net/additive/additiveList.do>

The screenshot shows the KATI website interface for the 'Food Additives' database.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three columns: 'Material Category' (식품첨가물 selected), 'Country Selection' (국가선택: 한국 selected), and 'Additive Type' (식품유형). Below these filters, a list of additives is shown, including categories like 'Preservatives' (보존료), 'Sweeteners' (감미료), and 'Flavorings' (향료). On the right side, there are sections for 'Related News' (관련뉴스) and 'Related Standards' (관련자료), which list various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ood additives.

[그림 2-6] 식품첨가물/유해물질 기준 DB 수출지원정보 사이트(aT KATI)

-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베트남, 호주,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홍콩, 아랍에미리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캐나다, 인도,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19개국 식품첨가물과 관련하여 사용기준, 식품유형, 함량정보 등에 관한 정보와 유해물질의 허용 여부 및 한계치를 제공함
- 해당 정보는 관심국가와 관심품목을 선택하면 해당 국가의 함량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의 식품공전을 기준으로 매칭됨

- KATI 홈페이지는 농·식품 수출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별도의 아이디가 없어도 홈페이지의 자료와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내용에 대한 간단한 검색 결과는 [표 2-7], [표 2-8]과 같음

[표 2-7]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검색 결과 예시

| 번호 | 물질 | 식품유형 | 기준 | |
|------|----------------------|------|-------------|--|
| | | | 한국 | 일본 |
| 1545 | acesulfame potassium | 유당면 | 0.35g/kg 이하 | 0.35g/kg 이하 (특별용도 표시허가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않음) |
| 1549 | 5'-deaminase | 과자 | 일반사용기준 | 일반사용기준 |
| 1548 | acacia (gum arabic) | 포장육 | 일반사용기준 | 일반사용기준 |

[표 2-8] 유해물질 허용기준 검색 결과 예시

| 번호 | 물질 | 한국 | 인도 | | 분류PVO* |
|----|----------------|----------|---------------|-----------------------------|--------|
| | | 식품유형 | 식품유형 | 함량정보 | |
| 1 | triazophos | 콩기름(대두유) | 기름: 대두유 | 0.05mg/kg | p |
| 2 | spinetoram | 콩기름(대두유) | 기름: 대두유 | 0.02mg/kg | p |
| 3 | pyraclostrobin | 빵류 | 빵류: 땅콩 케이크 | 0.05mg/kg (fixed at LOQ) | p |

* 유해물질 분류: 농약(Pesticide), 동물용의약품(Veterinary medicine), 기타(Others)



제 6 절. 기타 식품안전 및 수입식품 관련 이슈

□ 1. 식품 관련 주요 비관세 장벽

■ 각종 증명서

- 동물성제품의 경우 동물산업국(BAI)에서 발행한 수의학증명서(Veterinary Quarantine Clearance VQC)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함
 - 증명서는 최대 60일까지 사용 가능함
 - 수입 육류제품의 포장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필리핀 농림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30개월 미만의 도축된 소와 도축 전 중추신경 관련 질병이 없는 소만 수입 가능함

- 식물성 제품의 경우 식물산업국(BPI)에서 발행한 식물위생증명서 발급이 필수. 식물성 제품의 선적은 필리핀 인허가 획득 후에만 가능하며, 위반 시 통관 불가능함
- 수산 제품은 양식자원국에서 발행한 검역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수산물 수입은 농림부 관할로 관리되며, 신선/냉장/냉동 등 모든 형태의 제품은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허가받은 수입자만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 수산물은 HACCP 기준에 부합하고 수출국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 제출이 필수임
- 필리핀에서 재가공 목적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은 수출국에 있는 공식기관에서 발행한 국제보건증명서가 필요함

■ 식품의약품 등록 및 모니터링

- 식품 수입 전 필리핀 식품의약품(FDA)에 등록해야 하는데, 식품 등록의 경우 각 식품의 첨가물과 재료별로 등록해야 함(용량별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됨)
 - 현실적으로 모든 종류의 식품을 등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식품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되어 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역학데이터가 조사되며, 만약 수입식품에 문제가 생기면 회수명령을 내리고 해당하는 모든 제품을 회수함
- 필리핀으로 수입된 한국 식품의 부적합 리스트 항목은 수입식품검사시스템이 없어 따로 홈페이지에 공고되지 않으며, 수입국가로부터 해당 식품이 문제가 있다는 검사성적서를 받아서 공고를 진행하게 됨

통관 지연과 비공식 통관 협의금

- 필리핀 관세청(BOC)의 전산화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어 여러 국내진출업체가 금전, 시간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음
 - 필리핀은 아직 전산화되지 않은 수입통관 및 검역 과정과 뒤쳐진 통관 시스템 등으로 인해 수입 품목별 통관 검사가 아닌 컨테이너별 수입통관 검사가 시행되고 있음
- 또 세관 담당자가 빠른 통관 진행방안으로 수입업체에 비공식 통관 협의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수입자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관원들에게 협의금을 지불하여 비공식 통관을 하는 경우도 있음
- 현지 통관 브로커를 이용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거의 불가능한 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지 통관 브로커들의 지인이 통관 관련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항구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실시해야 빠르게 통관이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유통과정의 어려움

- 국가가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물류 인프라가 부족함. 이로 인해 개척 가능한 타겟 지역이 한정적이고, 메트로 마닐라, 세부 등 대도시 중심으로 타겟 지역을 선정할 수밖에 없음
- 현지 대량유통이 가능한 대형유통업체가 과점형태이기 때문에 입점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듦

분쟁해결절차

- 분쟁해결방법에는 소송, 중재, 협상이 있으나 국제소송은 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중재는 법적인 효력이 없기에 될 수 있으면 협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주로 결제 과정에서의 무역사고가 잦은데, 선결제, 신용장(L/C), 또는 무역보험으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함

주류 및 담배에 대한 소비세

- 필리핀은 증류주 제품별로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설탕, 야자나무 등 필리핀 내 생산 원료로 주조된 증류주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나, 수입 증류주에 대해서는 10~40배가량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주류 및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Sin Tax)가 도입되었는데, 증류주는 2016년부터 적용되었고, 담배는 2018년부터 매년 4%씩 세율이 인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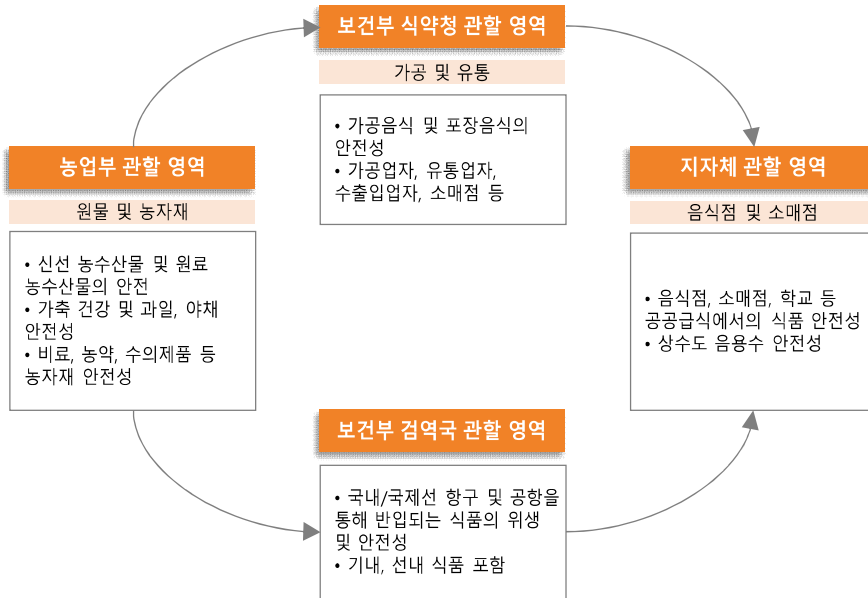
2. 세관현대화·관세법(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 RA 10863)

- 기존의 세관·관세법 개정안으로 2016년 5월에 승인됨
- 주요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음
 - 특정 소비 제품의 약식 신고(informal entry clearance) 허가
 - 5만 페소 이하의 본선인도(Free on Board) 또는 운송인 인도조건(Free Carrier Arrangement)에 해당하는 상업성 제품(개정 전 2천 페소 또는 500달러로 제한)
 - 소량의 개인 소유 제품

- 세관 신고 기간 변경
 - 관세청 통지 15일 이내에 세관 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15일 추가 연장 가능 (개정 전 30일 지급)
 - 평가 결과 고지 15일 이내에 관세 납부를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 관세 지불 후 30일 내 물품 수령 가능 (개정 전 15일 내로 제한)
- 임시 세관신고(provisional goods declaration)제도 도입
 - 수입자가 국경에서 납부해야 하는 관세 관련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45일 내 (45일 추가 연장 가능) 제출할 수 있으며 보증금 지불 후 제품 선 수령 가능
- 세관 모든 절차 자동화
 - 세관 신고, 평가, 납세, 물품 인도 등 수입 및 수출의 모든 절차에 자동화 시스템 도입
 - 자동화 실시로 세관 보세창고 물품의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 가능
- 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제도 도입
 - 저리스크 및 규율준수업체에 대해 "우수공인업체" 인가를 하고, 동 업체에 대해서는 빠른 절차(fast lane) 허용
- 압류품 또는 몰수품 상환 가능
 - 경고명령(Alert Order)이 발행 시에만 압류 또는 몰수 가능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 완료 필수
 - 부패하기 쉬운 물품에 대한 각 절차 소요시간 단축
 - 수입자는 부패성 물품을 임치제도(escrow)를 이용하여 판매 가능
 - 수입자는 압류품 또는 몰수품에 대해 최종 단계 전에 관세 지불 또는 상환 가능
- 국가재난사태 선포 시 구호 물품 관세 및 세금 감면
 - 구호물품은 임시 세관 신고, 사전 도착, 추가비용 지불 없이 운영시간 이외의 통관신고, 특수 상황 이외 검사 미실시 등 허용

- 관세 및 세금 납세 후 3년 이내에 사후감사 실시 및 수입자와 관련 기관의 기록 검토 가능 권한 부여
- 통과(transit) 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법 명시
 - 소비용 물품은 도착 항구에서 관세 지불
 - 자유지역(free zone) 및 보관용 물품은 세금부과 지역 도착 시 관세 지불
- 화물검사 방법 투명성 확대
 - 검사 시 화물 소유자 또는 대표자 동행 가능
 - 엑스레이 등 비해체(non-intrusive) 기술 도입
 - 물리적 검사는 특이사항이 있거나 요청 시에만 실시
- 관세청 근무자의 근무 조건 변화
 - 평가 담당 관세청 근무자는 최대 3년 이상 평가 업무 불가
 - 추가 수당은 관세청 이외 제3자로부터 수령 불가
 - 관세청 공무원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3. 필리핀 식품안전관리체계



[그림 2-7] 필리핀 식품안전 체계

출처: 필리핀 식품의약청(FDA)

- 농업부(DA)
 - 신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이나 외식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물의 안전성 감독
 - 수렵육이나 낚시 등 야생식품도 포함
 - 가공식품이나 외식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물은 수확후처리(Post Harvest)를 거친 단계 혹은 원료로 사용되기 위해 필링, 커팅, 도축/포획 후 손질 등의 1차 가공을 거친 냉장, 냉동 제품까지 포함

- 보건부(DOH)-식품의약청(FDA)
 - 가공업자, 유통업자, 수출입업자, 소매점 등의 단계에서 국내 생산 및 수입된 가공음식 및 포장음식의 안전성 담당
 - 식품안전 표준 및 규격, 시장 모니터링, HACCP 등 리스크컨트롤방식 적용 등
- 내무행정지역부(DILG, Department of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 / 지방정부(LGUs, Local Government Units)
 - 지역 내 음식점, 소매점, 학교 등 공공급식에서의 식품 안전성 및 상수도 음용수 안전성
- 보건부(DOH)-검역청(BOQ, Bureau of Quarantine)
 - 국내/국제선 항구 및 공항을 통해 반입되는 식품의 위생 및 안전성

□ 4. 필리핀 수출 관련 Q & A

▮ 향후 필리핀으로의 수출 유망품목은?

▮ 건강음료

- 2019년 기준 필리핀의 음료 시장 총매출액은 4,619억 7,070만 페소(약 95억 5,115만 달러)로 전년 4,429억 2,640만 페소(약 91억 5,203만 달러) 대비 4.3% 증가함. 탄산음료 매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RTD 커피의 매출이 가능 낮게 나타남
- 한국산 음료 수입 규모는 2019년 기준 167만 달러에 달하며, 전년 대비 63.67% 증가함

- 음료/차 중에서 최근에 녹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비만도가 높은 필리핀 소비자에게 녹차가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진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또한 충치 예방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콜라 등 탄산음료 섭취가 많은 필리핀 소비자들이 선호함
- 경기 호황에 따른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 증가로 천연건강음료 수요가 증가 추세임. 필리핀 소비자들이 건강 및 웰빙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 향후 꾸준히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에서 천연건강음료는 무설탕, 무탄산의 음료를 의미하지만, 필리핀은 당, 탄산 함유와는 상관없이 과일, 채소가 함유된 음료를 건강음료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음
- 현재 한국산 천연건강음료 대부분은 교민 시장을 통해 소비되고 있으며, 에너지 드링크, 홍삼 드링크 등이 필리핀 시장에 유통되고 있음. 특히 한국산 제품이 필리핀 소비자들에게 달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기에 제품 수출 시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함

가공우유

- 필리핀은 우유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은 뉴질랜드, 미국 등임
- 날씨가 덥고 습하여 유제품이 쉽게 변질될 뿐만 아니라 유통 인프라 또한 열악하여 우유분말 수입이 많음
- 한국산 유제품은 바나나우유 등 소량제품이 시장개척 단계임
- 필리핀은 낙농업이 발달하지 않아 농식품 중 유제품은 밀과 콩 다음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음
- 경기호황에 따른 가계수입 증가, 중산층 확대, 식품가공업 확산 등의 영향으로 우유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
- 필리핀 소비자들의 경우 맛에 대한 익숙함과 기후 여건에 따른 장기간의 유통기간 필요에 따라 멸균우유를 선호함

- 한국산 수입은 대부분 필리핀 교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매우 미미한 수준임. 그러나 최근 연세우유, 빙그레 등이 편의점과 대형유통망을 통해 공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수입액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표 2-9] 최근 3개년 對 필리핀 우유 수출 실적

단위: 톤, 천 달러

| 구분 | 2017 | | 2018 | | 2019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우유 | 130.2 | 173.5 | 134.8 | 189.1 | 123.6 | 158.2 |

출처: www.kati.net(<https://www.kati.net/statistics/monthlyPerformanceByNation.do>)

- 필리핀 가공우유 시장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은 Nestlé임. 필리핀 현지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의 절반가량을 점유한 것으로 나타남. 그 외 Alaska Milk Corp.와 Fonterra Brands Inc. 등이 뒤를 잇고 있음
- 가공우유의 수입관세는 기본관세율 5%이나, 한국산의 경우 한-아세안 FTA에 따라 0% 세율이 적용됨. 그러나 시장 유통을 위해서는 수입업체를 통한 필리핀 식약청(FDA) 제품등록이 필수적임
- 필리핀 현지 우유산업 관계자 및 대형유통망 바이어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신선한 저온살균우유와 멸균우유(고온살균우유) 간 차이점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시중에서 Fresh Milk라는 이름으로 멸균우유가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은 Fresh milk를 한국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개념, 즉 유통기한이 짧고 신선한 우유가 아닌 영양이 풍부한 우유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베이비푸드

- 필리핀 유아식 시장은 2019년 매출액 기준 약 8억 3,590만 달러로 2018년 매출액 (약 7억 869만 달러) 대비 6.2% 증가하였으며,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¹²⁾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전통적으로 높은 편인 필리핀에서 모유 수유를 하기 쉽지 않아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간편 이유식 수요가 증가함
- 가계수입 증가, 중산층 확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여파로 아이들의 건강 및 영양섭취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면서 가격대가 높은 편인 특수분유, 유기농 유아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주요 경쟁업체로는 Mead Johnson Philippines, Alaska Milk Corp., Nestlé Philippines 등이 있음
- 유기농 이유식, 특수분유와 같은 틈새시장은 현지 생산업체가 아직 없고 유통 중인 브랜드 역시 소수임

▣ 라면

- 세계인스턴트누들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필리핀 라면시장은 세계 7위를 기록한 한국에 이어 8위에 랭크되어 있음. 같은 해 기준 총 38억 5,000만 인분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계속 시장 확대가 기대됨
 - 맛별이가 많아지면서 식사대용 제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통조림보다 더 편하게 한 끼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면류제품이 중저소득층에서 인기를 얻음
- 필리핀 라면시장은 컵라면과 봉지라면 중 봉지라면이 판매량과 판매액 면에서 모두 월등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외부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컵라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12) 출처 :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757764/retail-sales-value-of-baby-food-in-philippines/>

▣ 한국라면 수출 현황

- 수입라면에 대한 관세는 기준세율이 15%인데 반해 한국산의 경우 한-아세안 FTA에 따라 5%가 적용됨. 라면제품의 현지 유통을 위해서는 식약청(FDA) 제품 등록이 필수임
- 2019년 기준 한국라면의 수출액은 1,443만 6,400달러로 전년 대비 19.4%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이는 지속적인 한류열풍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더불어 소비재를 비롯한 한국 제품에 대한 호기심과 구매 욕구 역시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2-10] 한국산 라면의 필리핀 수출실적

단위 : 톤, 천 달러

| 구분 | 2015 | | 2016 | | 2017 | | 2018 | | 2019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면류 | 3,757 | 12,181 | 5,093 | 12,062 | 8,121 | 20,823 | 6,754 | 16,533 | 7,777 | 19,763 |
| 라면 | 2,028 | 9,356 | 2,460 | 8,935 | 3,903 | 13,784 | 3,451 | 12,094 | 4,251 | 14,43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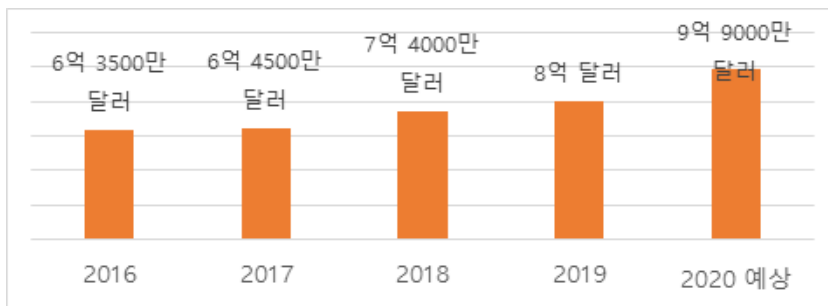
출처 : www.kati.net (<https://www.kati.net/statistics/monthlyPerformanceByNation.do>)

- 한국산 라면은 한류 등의 영향으로 트렌디한 제품으로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한류스타의 이미지가 '한국식품은 웰빙식품'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에 도움을 줌
- 필리핀 대형유통매장과 슈퍼마켓에서 한국라면은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7Eleven 등의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음
- 튀김우동과 같이 맵지 않은 라면도 있으나, 필리핀에서 한국라면은 통상 매운 라면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매운맛 제품의 인기가 높음
- 현지 생산 라면보다 한국산 수입라면의 면발이 비교적 쫄깃하지만, 국물이 맵고 자극적인 점이 소비 확대에 다소 장애가 된다는 평가도 있음
- 한국산 라면은 타국산에 비해 양이 많고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이 있음
- 필리핀에는 새로운 브랜드와 다양한 제품이 많아, 비교적 브랜드 충성도가 높지 않음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의 라면 판매

-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0년 3분기 라면 총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20년 상반기에는 3억 207만 달러로 전년 대비 37.4% 증가한 바 있음
- 2018년 상반기 2억 1,618만 달러에서 2019년 상반기 2억 1,987만 달러로 1.7% 증가한 것과 비교해서 증가폭이 22배인 셈임. 이는 전세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라면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됨
- 업계 1위 농심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2020년 농심의 해외사업 실적은 수출과 (해외에서 직접 라면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해외 법인의 매출을 합하여 약 9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 성장을 예상함
- 2020년 초부터 신라면을 비롯한 짜파게티, 너구리 등 한국라면에 대한 관심과 판매가 늘어났으며, 코로나19가 미국, 유럽 등지로 빠르게 번지면서 간편식 수요와 맞물려 라면 소비가 급증함
- 농심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가장 두드러진 해외시장은 미국으로 나타남
- 캐나다를 포함한 미국법인 매출은 약 3억 2600만 달러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28% 성장한 수치임

<농심 해외매출 추이>



출처: 농심 내부 자료

- 필리핀, 베트남 등이 속한 동남아시아는 농심의 수출 중점 지역임
 - 농심은 신라면, 짜파게티, 안성탕면, 너구리 등 대표 브랜드를 수출하고 있으며, 올해 동남아 매출액은 전년 대비 33% 성장한 약 4,600만 달러로 예상함
 - 농심 관계자는 “동남아와 중앙아시아는 인구가 많고 소득 수준이 점차 올라감에 따라, 라면의 수출 전망도 좋은 편임. 이들 지역은 면식 문화가 발달했고 여러 가지 향신료로 맛을 낸 음식들을 즐겨 먹는 편이라, 한국의 매콤하고 얼큰한 라면도 거부감 없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음”이라고 제시함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 상담/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 필리핀의 수입은 대략 50% 정도가 대리점을 통해 수입되고 있으며 에이전트나 유통업체가 독점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이 경우 독점권은 필리핀에서 해당 상품을 유통하는 권리를 온전히 대상업체에 일정기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독점권 계약을 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대리점은 해당 브랜드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품 또는 경쟁 브랜드를 동시에 취급하는 사례가 많음 (다품종 소량)
 - 유통업체는 재고의 보유를 극히 꺼려 소량 반복 구매를 하므로 신속한 배송이 중요함
- 통상 3월 말~4월(부활절), 12월 중순~1월 초에는 수입 상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의사 결정권을 지닌 기업주들이 해외 휴가를 즐기기 때문에 상담이 어려움
- 현지 상거래의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화교계 상인들은 해외 거래선 구축 시 중국, 대만, 홍콩 등 중국계와의 거래를 선호함. 또한, 필리핀 바이어의 특성상 수출기업이 아무리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오퍼해도 지속해서 가격협상을 하므로 이 점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하여 제시해야 함

▣ 바이어 상담 시 유의사항

- 필리핀 바이어는 특성상 거절 또는 싫다는 표현을 잘하지 못해 상담 시 제품에 대한 좋은 평을 하더라도 향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함
-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구매를 안 하겠다는 의사일 가능성이 높음
- 바이어와 상담 시 제품을 막연히 설명하는 것보다는 바이어가 설명하는 현지 시장 동향과 보유하고 있는 판로를 파악해 적합한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효과적임. 따라서 바이어를 만날 때 제품 샘플 및 카탈로그 지참은 필수적임

▣ 기업문화

- 화교계 상인은 필리핀 상거래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화교계 기업문화의 특징은 가족경영으로 회사 내 기업주들이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곳이 많음
- 필리핀 문화 역시 가족을 가장 우선시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가족구성원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음. 이들 가족기업은 소규모로 시작하여 사업을 확장하면서 취급 품목/업종을 넓혀가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필리핀 바이어를 만났을 때 취급 제품/업종이 상이하면 우리기업 입장에서는 업체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도 있으나, 좀 더 살펴보면 이들이 사세 확장을 위해 취급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됨
- 이러한 필리핀의 독특한 기업문화와 시장특성을 고려할 때 품질만을 장점으로 필리핀 시장에 진입하기는 다소 쉽지 않으며, 바이어 및 주변 가족들과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임

연지시장 진출 시 필요한 기본적인 전략은?

▣ 지역별 목표시장 선정

- 필리핀은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저온저장시설, 창고 등 물류 인프라가 열악해 필리핀 전역을 커버하는 유통망 개척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따라서 소비 수준이 높은 지역별 대도시 타겟 선정이 필요함
- 수도인 메트로 마닐라를 중심으로 북부 바기오지역, 중부 세부지역, 남부 다바오 지역을 거점 목표시장으로 설정하고 집중적인 시장개척 추진 필요

■ 철저한 시장조사

- 다국적 기업의 현지생산 가공식품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제품 간 경쟁이 치열함. 시장개척을 위해 사전에 현지시장 정보수집, 기 진출한 업체 및 한국산 취급 수입상 등을 통해 상관습, 경쟁상품 현황, 소비자 특성 등 면밀한 시장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필리핀 소비자들은 대용량 구매를 통한 가격할인보다는 개당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소용량 패키지 상품을 선호함
 - 이는 소득이 낮아 볼륨이 큰 상품 구매 시 다른 상품에 대한 구매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임

■ 대형유통업체 점유 확대

- 현지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통한 인지도 향상과 물량확대가 필수적임. 대형유통업체 입점 확대를 위해서는 파급력 있는 현지 이벤트가 중요하므로, 한류스타 활용 판촉 이벤트(사인회 등) 개최로 전략적 프로모션이 필요함
- 인지도가 확보된 품목은 판매 확대 또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신규 진입 품목은 시식, 시음 기회 확대를 통한 인지도 제고 판촉으로 차별화 필요함
- 필리핀은 Mercury, Watson 등 약국, 편의점 형태의 유통망이 성장 추세이므로 분유 또는 인삼제품의 경우 효능에 대한 신뢰도를 고려할 경우, 제약수입 유통망을 통한 시장개척이 효과적이며, 약국체인의 유통망도 활용 가능함

■ SNS 및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마케팅 전개

- 스마트폰 및 인터넷망의 확산으로 필리핀 주요 소비자(20~40대)의 온라인 노출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프로모션 전개가 필요함

<참고문헌>

대한민국 외교부

http://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04_01.jsp

미국 식품의약국(FDA)

<https://www2.fda.gov/ph/attachments/article/19772/BC%202006-016.pdf>

<https://www2.fda.gov/ph/index.php/industry-corner/food-industry-all-registered-food-distributor-manufacturer-and-trader/philippine-national-standards>

식약처(2016), 필리핀 수입식품관리 및 기준규격 체계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specialinfo/infoMapCodex.do?menu_grp=MENU_NEW04&menu_no=2848

통계청(2019),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필리핀 통계청(PSA)

<https://psa.gov.ph>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7), 필리핀 식품 유통시장 현황 및 진출 확대전략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9), 2018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_II 동남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20), 2019 수출국가정보 zip_아세안

한국무역협회(KITA)

http://stat.kita.net/stat/istat/asean/AseanWholeList.screen?ctr_cd=PH

kati 농식품수출정보

<http://www.kati.net/nation/basisInfo.do?lcdCode=MD192>

<https://www.kati.net/statistics/monthlyPerformanceByNation.do>

Business World

<https://www.bworldonline.com>

FDA, Food Safety Control System in the Philippines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757764/retail-sales-value-of-baby-food-in-philippines/>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2018), Exporter Guide_Philippines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2018),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Report_Philippines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2019), Exporter Guide_Philippines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2019), Food Retail Sectoral Report_Philippines

2020 주요 수출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3

부 록

부록 1

대한민국 신식품공전 식품 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식품유형) | 품목코드 |
|--------------------|---------------|------------|----------|
|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 과자 | N001-001 |
| | | 캔디류 | N001-002 |
| | | 추잉껌 | N001-003 |
| | | 빵류 | N001-004 |
| | | 떡류 | N001-005 |
| 2. 빙과류 | 2-1. 아이스크림류 | 아이스크림 | N002-001 |
| | | 저지방아이스크림 | |
| | | 아이스밀크 | |
| | | 샤베트 | |
| | | 비유지방아이스크림 | |
| | 2-2. 아이스크림믹스류 | 아이스크림믹스 | N002-002 |
| | |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 |
| | | 아이스밀크믹스 | |
| | | 샤베트믹스 | |
| | 2-3. 빙과 | 빙과 | N002-003 |
| 2-4. 얼음류 | | 식용얼음 | N002-004 |
| | 어업용얼음 | | |
|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3-1. 코코아가공품류 | 코코아매스 | N003-001 |
| | | 코코아버터 | |
| | | 코코아분말 | |
| | | 기타 코코아가공품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식품유형) | 품목코드 |
|--------------|-------------|-------------------|----------|
| | 3-2. 초콜릿류 | 초콜릿 | N003-002 |
| | | 밀크초콜릿 | |
| | | 화이트초콜릿 | |
| | | 준초콜릿 | |
| | | 초콜릿가공품 | |
| 4. 당류 | 4-1. 설탕류 | 설탕 | N004-001 |
| | | 기타설탕 | N004-002 |
| | 4-2. 당시럽류 | 당시럽류 | N004-003 |
| | 4-3. 올리고당류 | 올리고당 | N004-004 |
| | | 올리고당가공품 | N004-005 |
| | 4-4. 포도당 | 포도당 | N004-006 |
| | 4-5. 과당류 | 과당 | N004-007 |
| | | 기타과당 | N004-008 |
| | 4-6. 엿류 | 물엿 | N004-009 |
| | | 기타엿 | N004-010 |
| | | 덱스트린 | N004-011 |
| | 4-7. 당류가공품류 | 당류가공품류 | N004-012 |
| | 5. 잼류 | | 잼 |
| 기타잼 | | | N005-002 |
| 6. 두부류 또는 묵류 | | 두부 | N006-001 |
| | | 유바 | N006-002 |
| | | 가공두부 | N006-003 |
| | | 묵류 | N006-004 |
| 7. 식용유지류 | 7-1. 식물성유지류 | 콩기름(대두유) | N007-001 |
| | | 옥수수기름(옥배 유) | N007-002 |
| | |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 N007-003 |
| | | 미강유(현미유) | N007-004 |
| | | 참기름 | N007-005 |
| | | 추출참깨유 | 참기름 |
| | | 들기름 | N007-006 |
| | | 추출들깨유 | 들기름 |
| | |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 N007-007 |
| | | 해바라기유 | N007-008 |
| | | 목화씨기름(면실 유) | N007-009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식품유형) | 품목코드 | |
|--------|---------------|-------------|----------------|----------|
| | | 땅콩기름(낙화생 유) | N007-010 | |
| | | 올리브유 | N007-011 | |
| | | 팜유 | N007-012 팜유 | |
| | | 팜올레인유 | | |
| | | 팜스테아린유 | | |
| | | 팜핵유 | | |
| | | 야자유 | N007-013 | |
| | | 고추씨기름 | N007-014 | |
| | | 기타식물성유지 | N007-015 | |
| | | 7-2. 동물성유지류 | 식용우지 | N007-016 |
| | 원료우지 | | | |
| | 식용돈지 | | N007-017 | |
| | 원료돈지 | | | |
| | 기타동물성유지 | | N007-018 | |
| | 7-3. 식용유지가공품 | 혼합식용유 | N007-019 | |
| | | 향미유 | N007-020 | |
| | | 가공유지 | N007-021 | |
| | | 쇼트닝 | N007-022 | |
| | | 마가린류 | N007-023 | |
| | | 모조치즈 | N007-024 | |
| | | 식물성크림 | N007-025 | |
| | |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 N007-026 | |
| | 8. 면류 | | 생면 | N008-001 |
| | | | 숙면 | N008-002 |
| | | | 건면 | N008-003 |
| | | | 유탕면 | N008-004 |
| 9. 음료류 | 9-1. 다류 | 침출차 | N009-001 | |
| | | 액상차 | N009-002 | |
| | | 고형차 | N009-003 | |
| | 9-2. 커피 | 커피 | N009-004 | |
| | 9-3. 과일·채소류음료 | 농축과·채즙 | N009-005 | |
| | | 과·채주스 | | |
| 과·채음료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식품유형) | 품목코드 |
|--------------------|--------------------|---------------|----------|
| | 9-4. 탄산음료류 | 탄산음료 | N009-006 |
| | | 탄산수 | |
| | 9-5. 두유류 | 원액두유 | N009-007 |
| | | 가공두유 | |
| | 9-6. 발효음료류 | 유산균음료 | N009-008 |
| | | 효모음료 | |
| | | 기타발효음료 | |
| | 9-7. 인삼, 홍삼음료 | 인삼, 홍삼음료 | N009-009 |
| 9-8. 기타음료 | 혼합음료 | N009-010 | |
| | 음료베이스 | | |
| 10. 특수용도식품 | 10-1. 조제유류 | 영아용 조제유 | N010-001 |
| | | 성장기용 조제유 | |
| | 10-2. 영아용 조제식 | 영아용 조제식 | N010-002 |
| | 10-3. 성장기용 조제식 | 성장기용 조제식 | N010-003 |
| | 10-4.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 영·유아용곡류조제식 | N010-004 |
| | 10-5. 기타영·유아식 | 기타영·유아식 | N010-005 |
| | 10-6.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 환자용식품 | N010-006 |
| | |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 |
| 유단백알레르기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 | | |
| |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 | |
| 10-7.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N010-007 | |
| 10-8. 임신·수유부용식품 | 임산·수유부용식품 | N010-008 | |
| 11. 장류 | | 한식메주 | N011-001 |
| | | 개량메주 | |
| | | 한식간장 | N011-002 |
| | | 양조간장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식품유형) | 품목코드 | |
|----------------|----------------------|-------------|----------|----------|
| | | 산분해간장 | N011-003 | |
| | | 효소분해간장 | | |
| | | 혼합간장 | | |
| | | 한식된장 | | |
| | | 된장 | | |
| | | 고추장 | | N011-004 |
| | | 춘장 | | N011-005 |
| | | 청국장 | | N011-006 |
| | | 혼합장 | | N011-007 |
| | | 기타장류 | | N011-008 |
| 12. 조미식품 | 12-1. 식초 | 발효식초 | N012-001 | |
| | | 희석초산 | | |
| | 12-2. 소스류 | 소스 | N012-002 | |
| | | 마요네즈 | | |
| | | 토마토케첩 | | |
| | | 복합조미식품 | | |
| | 12-3. 카레(커리) | 카레(커리)분 | N012-003 | |
| | | 카레(커리) | | |
| | 12-4.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 고춧가루 | N012-004 | |
| | | 실고추 | | |
| | 12-5. 향신료가공품 | 천연향신료 | N012-005 | |
| | | 향신료조제품 | | |
| | 12-6. 식염 | 천일염 | N012-006 | |
| | | 재제소금(재제조소금) | | |
| | | 태움·용융소금 | | |
| | | 정제소금 | | |
| 기타소금 | | | | |
| 13. 절임류 또는 조림류 | 13-1. 김치류 | 김치속 | N013-001 | |
| | | 김치 | | |
| | 13-2. 절임류 | 절임식품 | N013-002 | |
| 당절임 | | | | |
| 13-3. 조림류 | 조림류 | N013-003 | | |
| 14. 주류 | | 탁주 | N014-001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식품유형) | 품목코드 |
|--------------|---------------------|---------------|----------|
| | | 약주 | N014-002 |
| | | 청주 | N014-003 |
| | | 맥주 | N014-004 |
| | | 과실주 | N014-005 |
| | | 소주 | N014-006 |
| | | 위스키 | N014-007 |
| | | 브랜디 | N014-008 |
| | | 일반증류주 | N014-009 |
| | | 리큐르 | N014-010 |
| | | 기타 주류 | N014-011 |
| | | | 주정 |
| 15. 농산가공식품류 | 15-1. 전분류 | 전분 | N015-001 |
| | | 전분가공품 | |
| | 15-2. 밀가루 류 | 밀가루 | N015-002 |
| | | 영양강화 밀가루 | |
| | 15-3.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 땅콩 버터 | N015-003 |
| |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 |
| | 15-4. 시리얼류 | 시리얼류 | N015-004 |
| | 15-5. 찌쌀 | 찌쌀 | N015-005 |
| | 15-6. 효소식품 | 효소식품 | N015-006 |
| | 15-7. 기타 농산가공품 | 과채가공품 | N015-007 |
| | | 곡류가공품 | |
| 두류가공품 | | | |
| 서류가공품 | | | |
| | 기타 농산가공품 | | |
| 16. 식육가공품 | 16-1. 햄류 | 햄 | N016-001 |
| | | 생햄 | |
| | | 프레스햄 | |
| | 16-2. 소시지류 | 소시지 | N016-002 |
| | | 발효소시지 | |
| | | 혼합소시지 | |
| | 16-3. 베이컨류 | 베이컨류 | N016-003 |
| 16-4. 건조저장육류 | 건조저장육류 | N016-004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식품유형) | 품목코드 |
|------------|---------------|-----------|----------|
| | 16-5. 양념육류 | 양념육 | N016-005 |
| | | 분쇄가공육제품 | |
| | | 갈비가공품 | |
| | | 천연케이싱 | |
| | 16-6. 식육추출가공품 | 식육추출가공품 | N016-006 |
| | 16-7. 식육함유가공품 | 식육함유가공품 | N016-007 |
| | 16-8. 포장육 | 포장육 | N016-008 |
| 17. 알가공품류 | 17-1. 알가공품 | 전란액 | N017-001 |
| | | 난황액 | |
| | | 난백액 | |
| | | 전란분 | |
| | | 난황분 | |
| | | 난백분 | |
| | | 알가열제품 | |
| | 피단 | | |
| | 17-2. 알함유가공품 | 알함유가공품 | N017-002 |
| 18. 유가공품 | 18-1. 우유류 | 우유 | N018-001 |
| | | 환원유 | |
| | 18-2. 가공유류 | 강화우유 | N018-002 |
| | | 유산균첨가우유 | |
| | | 유당분해우유 | |
| | | 가공유 | |
| | 18-3. 산양유 | 산양유 | N018-003 |
| | 18-4. 발효유류 | 발효유 | N018-004 |
| | | 농후발효유 | |
| | | 크림발효유 | |
| | | 농후크림발효유 | |
| | | 발효버터유 | |
| 발효유분말 | | | |
| 18-5. 버터유 | 버터유 | N018-005 | |
| 18-6. 농축유류 | 농축우유 | N018-006 | |
| | 탈지농축우유 | | |
| | 가당연유 |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식품유형) | 품목코드 |
|------------------|--------------|-----------|----------|
| | | 가당탈지연유 | |
| | | 가공연유 | |
| | 18-7. 유크림류 | 유크림 | N018-007 |
| | | 가공유크림 | |
| | 18-8. 버터류 | 버터유 | N018-008 |
| | | 가공버터 | |
| | | 버터오일 | |
| | 18-9. 치즈류 | 자연치즈 | N018-009 |
| | | 가공치즈 | |
| | 18-10. 분유류 | 전지분유 | N018-010 |
| | | 탈지분유 | |
| | | 가당분유 | |
| | | 혼합분유 | |
| 18-11. 유청류 | 유청 | N018-011 | |
| | 농축유청 | | |
| | 유청단백분말 | | |
| 18-12. 유당 | 유당 | N018-012 | |
| 18-13. 유단백가수분해식품 | 유단백가수분해식품 | N018-013 | |
| 19. 수산가공식품류 | 19-1. 어육가공품류 | 어육살 | N019-001 |
| | | 연육 | |
| | | 어육반제품 | |
| | | 어묵 | |
| | | 어육소시지 | |
| | | 기타 어육가공품 | |
| | 19-2. 젓갈류 | 젓갈 | N019-002 |
| | | 양념젓갈 | |
| | | 액젓 | |
| | | 조미액젓 | |
| | 19-3. 건포류 | 조미건어포 | N019-003 |
| | | 건어포 | |
| | | 기타 건포류 | |
| | 19-4. 조미김 | 조미김 | N019-004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식품유형) | 품목코드 |
|----------------|---------------------|-------------|----------|
| | 19-5. 한천 | 한천 | N019-005 |
| | 19-6. 기타 수산물가공품 | 기타 수산물가공품 | N019-006 |
| 20. 동물성가공식품류 | 20-1.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 N020-001 |
| | | 기타동물성가공식품 | |
| | 20-2. 곤충가공식품 | 곤충가공식품 | N020-002 |
| | 20-3. 자라가공식품 | 자라분말 | N020-003 |
| | | 자라분말제품 | |
| 20-4. 추출가공식품 | 추출가공식품 | N020-004 | |
| 21. 벌꿀 및 화분가공품 | 21-1. 벌꿀류 | 벌집꿀 | N021-001 |
| | | 벌꿀 | |
| | | 사양벌집꿀 | |
| | | 사양벌꿀 | |
| | 21-2. 로얄젤리류 | 로얄젤리 | N021-002 |
| | | 로얄젤리제품 | |
| 21-2. 화분식품 | 가공화분 | N021-003 | |
| | 화분함유제품 | | |
| 22. 즉석식품류 | 22-1. 생식류 | 생식제품 | N022-001 |
| | | 생식함유제품 | |
| | 22-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 즉석섭취식품 | N022-002 |
| | | 신선편의식품 | |
| | | 즉석조리식품 | |
| 22-3. 만두류 | 만두 | N022-003 | |
| | 만두피 | | |
| 23. 기타식품류 | 23-1. 효모식품 | 효모식품 | N023-001 |
| | 23-2. 기타가공품 | 기타가공품 | N023-002 |

부록 2

필리핀 영업허가증과 상품등록인증서

■ 영업허가증(License to Operate, LTO)

- 영업허가증(LTO) 발급을 위해서는 식품의약청(FDA)에서 내려받은 양식으로 작성한 통합신청서와 수수료 지급 증명서, 업체 등록 증명서, 업체 소재지 증명서, 제품 리스트, 위치도, 제품 제조업체의 평면도/배치도가 필요함
- 통합신청서
 - 필리핀 식품의약청(FDA) 홈페이지 양식 참조
- 업체 등록 증명서
 - 개인기업 : 통상산업부(DTI)에 등록한 유효한 인증서
 - 법인 또는 동업회사 :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유효등록증, 정관, 해당하는 관련 문서
 - 협력회사 : CAD(Cooperative Development Authority)의 인증서
- 업체 소재지 증명서
 - 신청서에 작성된 시설 또는 주소를 지원자가 소유하지 않는 경우 사용 중인 시설의 공증된 임대계약서가 필요함
 - 신청서에 작성된 시설 또는 주소를 지원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 권리증서 사본이 필요함

- 제품 리스트

- 제조, 가공 또는 재포장된 제품의 브랜드 이름 목록

- 유통, 판매되는 제품 리스트

- 1) 제품이 제조되는 회사의 이름과 주소

- 2) 제품 제조회사가 다른 경우, 제품이 마지막으로 포장되는 시설의 회사 이름, 주소

- 3) 제품이 마지막으로 포장되는 곳과 제조되는 곳이 다른 경우, 제품이 마지막으로 가공되는 시설의 회사 이름과 주소

- 4) 수입된 제품의 경우 제품 식별 번호의 첨부이 필요함

- 위치도

- 주소, 랜드마크, 주변환경, 빌딩의 종류를 나타내는 그림, GPS

- 1) 제품 제조회사는 제조 공장의 위치도가 필요함

- 2) 제품 유통업사는 회사 및 창고의 위치도가 필요함

- 제품 제조회사의 평면도/배치도

제품 제조회사는 제조 공장의 도면이, 제품 유통업사는 회사 및 창고의 도면이 필요함

■ 상품등록인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

- 수입 가공식품은 그 제품이 안전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리핀 식품의약청(FDA)에 제품등록을 해야 현지 판매가 가능함. 필리핀에 소재한 기업 또는 사업장만 상품등록 신청 가능함
- 상품등록인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는 최초 발급 시 1년간 유효하며, 갱신한 뒤에는 5년간 유효함
- 등록된 가공식품은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필리핀 식품의약청(FDA)에서 실시하는 유통 후 예찰(검사) 대상이 됨
- 필리핀 식품의약청(FDA)은 현재 해외 작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며, 수출국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인정함

부록 3

식품별 관련 기관 및 서류와 절차 확인

□ 식품별로 관련 기관, 추가서류, 절차 등 확인

1) pntr.gov.ph 접속 → 상단 메뉴 중 [Commodity Search] → [Commodity Browse]

■ Browse Commodities에 수록된 식품 종류

- SECTION I

· 육류; 동물성 제품

* Chapter 01: 육류

* Chapter 02: 육류 및 식용 내장

* Chapter 03: 어류 및 갑각류; 연체류 및 기타 해양 무척추 동물

* Chapter 04: 유제품; 조류 알; 천연 꿀; 그 외 기타 동물성 제품

* Chapter 05: 동물성 제품; 그 외 기타 동물성 제품

- SECTION II

· 채소 제품

* Chapter 06: 생 나무 및 기타 식물; 뿌리 및 줄기(괴경); 꽃 및 관엽식물

* Chapter 07: 식용 채소 제품 및 뿌리 및 줄기(괴경)

- * Chapter 08: 식용 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껍질을 벗기거나 자른)
- * Chapter 09: 커피; 차; 마테 및 향신료
- * Chapter 10: 곡류
- * Chapter 11: 제분가공품; 맥아; 전분; 이눌린; 밀 글루텐
- * Chapter 12: 유지종자 및 유지종실류; 잡곡, 씨앗류 및 과일류; 산업용 및 의료용 식물; 고간류 및 사료
- * Chapter 13: 락(Lac); 껌; 수지 및 기타 식물성 지방
- * Chapter 14: 식물성 플레이팅 재료; 그 외 기타 식물성 제품
- SECTION III
 - 동물성 유지 또는 식물성 유지 및 그 절단제품; 식용유지; 동물성 왁스 또는 식물성 왁스
 - * Chapter 15: 동물성 유지 또는 식물성 유지 및 그 절단제품; 식용유지; 동물성 왁스 또는 식물성 왁스
- SECTION IV
 - 조리된 식품; 음료, 증류주 및 식초; 담배 및 제조된 담배 대체품
 - * Chapter 16: 육류; 어류 및 갑각류; 연체류 및 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
 - * Chapter 17: 설탕 및 설탕 제과류
 - * Chapter 18: 코코아 및 코코아 대체품
 - * Chapter 19: 곡류 및 곡류 가공품(전분 및 밀가루 포함); 페이스트리 제품
 - * Chapter 20: 채소, 과일, 견과류 및 그 외 기타 식물성 제품
 - * Chapter 21: 기타식용유지류
 - * Chapter 22: 음료, 증류주 및 식초
 - * Chapter 23: 식품 산업용 잔류물 및 폐기물; 동물 사료
 - * Chapter 24: 담배 및 제조된 담배 대체품

- SECTION V
 - 미네랄 제품
 - * Chapter 25: 소금; 황; 토양 및 석조; 석고 재료, 석회 및 시멘트
 - * Chapter 26: 광석, 광재 및 재
 - * Chapter 27: 미네랄 연료, 미네랄 오일 및 증류 제품; 역청 물질; 미네랄 왁스

예) Browse Commodities에서 라면과 관련된 항목을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 pntr.gov.ph 접속 → 상단 메뉴 중 [Commodity Search] → [Commodity Browse] → [Chapter 19: Preparations of cereals, flour, starch or milk; pastrycooks' products] → [19.02 Pasta, whether or not cooked or stuffed (with meat or other substances) or otherwise prepared, such as spaghetti, macaroni, noodles, lasagne, gnocchi, ravioli, cannelloni; couscous, whether or not prepared; 1902.30.40; – Other pasta : – – Other instant noodles]
- 마지막 [Other pasta : – – Other instant noodles]을 클릭하면 관련 정보가 제공됨

부록 4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증명서 필요성

-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임
 -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해야 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이 가능
 - FTA는 협상체결국 간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를 적용해 물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양국 간 무역 활성화를 통해 수출입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는바, 비협상국과의 차별적 수단으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이 요구됨
 - FTA 원산지 규정이 비특혜원산지 규정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이는데, 이는 FTA 원산지 규정이 FTA특혜 관세 혜택의 역외유출 내지 제3국 기업에 의한 우회수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역내 부품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뒷면에 "OVERLEAF"를 인쇄하여 수입국 세관에 제출해야 관세특혜를 인정함
- 원산지 검증 시 엄격한 입증서류를 요구하여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 1)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생산자와 수출자의 정보가 다를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2) 세번(稅番) 변경 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함에도 상대국 세관의 검증 과정에서 생산 공정 세부내용, 원가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를 경우 원산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원산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함

원산지 규정의 구분

- 원산지 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비특혜원산지 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특혜원산지 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분됨
 - 특혜원산지 규정 : 특정국가 간의 관세 상 특혜를 베푸는 자유무역지대 혹은 경제 구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PS)등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의미함
 - 비특혜원산지 규정: 여타 무역 정책상에서 상품의 원산지를 일반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의미함

원산지 결정 원칙

- 원산지 결정의 기본원칙은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변형이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됨
 - 완전생산기준(a goods wholly obtained test) : 원재료단계에서부터 완전한 국가에서 생산, 최종가공공정이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함
 -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 : 생산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뤄진 물품에 대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함
 - ① 세번(稅番) 변경기준(change in tariff heading method, CTH)
 - ②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est or ad valorem percentage criterion)
 - ③ 특정 가공공정기준(criterion of 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 일반적으로 FTA 원산지규정에서는 일반원산지증명서와 달리 수출국에서 최종 공정이 이루어져야만 원산지로 인정됨. 원산지 증명 관련 통일 서식은 Form Ak를 사용해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관세청을 통해 신청 가능함. 두 기관의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음
 -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 <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
 -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 필리핀 HS Code 검색방법 : TradeNavi - 트레이드내비 접속 후, 맨 위 검색 창에서 [국가선택 - 필리핀 - 품목명 기입한 후 검색 클릭]
 - 필리핀 각 협정 별 원산지 결정기준 검색방법 : TradeNavi - 트레이드 내비 접속 후, 맨 위 검색창에서 [국가선택 - 필리핀 - 해당품목 HS Code 기입한 후 검색 클릭 - 하단의 검색 결과 중 '세울/원산지' 부분의 HS Code 부분클릭 - 검색 결과에서 협정 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 TC 홈페이지 → [Tariff Finder] 선택 →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품목 AK FTA 선택 또는 원산지증명서 없이 통관 시 MFN 선택 → HS Code 입력 후 관세율 확인
 - 발급방식 : 기관발급(한-아세안 FTA는 기관발급 채택)
 - 발급기관
 - 상공회의소와 관세청

- 신청 서류
 - 수출신고 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송품장 또는 거래 계약서
 -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혹은 국내제조 확인서(증명서 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및 사용 횟수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사용 횟수 : 1회에 한함

원산지증명 절차

자율발급

| | | | |
|---|--------------------|--|----------------------|
| 01 | 서명카드 비치 | 02 | 서명권자 지정 |
| 고시 (별지 제9호 서식) | |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사유기재 | |
| 03 | 증명서 발급 및 서명 | 04 | 증명서대장 기재 및 관리 |
| 1) 적용된 협정명칭 5) 수출자의 FAX 2) 원산지 및 결정기준 6) 수출자의 서명 3) 수출자의 성명 7) 수출자의 서명일자 4) 수출자의 전화 | |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1) 작성번호·작성일자 4) 원산지·거래상대방 2) 수출신고번호·수리일자 5) 자유무역협정 명칭 3) 품명·품명번호·수량·금액 | |

■ 자유무역협정의 이월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12.27.>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 일련 번호 | 서 명 | 부서명 | 직책 | 성명 | 지정일자 및 사유 | 해제일자 및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월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상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작성 번호 | 2.작성 (서명) 일 | 3.수출· 입 신고번 호 및 수리일 | 4.품명 | 5.품목번호 (HS No.) | 6.수량/ 금액 | 7.원산 지 | 8.거래 상대방 | 9.자유무 역 협정명칭 | 10.원 산 지 결정기준 | 11.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 방법 | |
|-----------------|---|
| 항 목 | 작성 내용 |
| 1.작성번호 | ○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작성번호를 기재합니다. |
| 2.작성(서명)일 |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서명)일을 기재합니다. |
| 3.수출입신고번호 및 수리일 | ○ 세관에 신고한 수출신고번호와 수출신고 수리일을 기재합니다. ○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번호와 수입신고 수리일을 기재합니다. ○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출신고번호와 수출신고 수리일을 기재합니다. ○ 생산자의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 4.품명 |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상 물품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
| 5.품목번호(HS No.) |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상 물품의 품목번호(HS No.)를 6단위로 기재합니다. |
| 6.수량/금액 | ○ 해당물품의 총 수량, 금액을 기재합니다. |
| 7.원산지 | ○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기재합니다. |
| 8.거래상대방 | ○ 작성·관리하는 자에 따라 다르게 기재합니다. -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 또는 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및 수입자·수입국명 - 생산자: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 - 수입자: 수출자·수출국명 |
| 9.자유무역협정명칭 | ○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자유무역협정 명칭을 기재합니다. - 체약상대국이 칠레인 경우: 한-칠레 FTA |
| 10.원산지결정기준 | ○ 해당 수출물품이 충족하는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 세번변경, 부가가치, 결합기준, 특정공정, 역외가공, 기타)을 기재합니다. 예)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결합기준을 기재합니다. |
| 11.비고 | ○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작성되는 경우: 제3국 송품장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기관발급

▪ 세관 발급

▪ 온라인



▪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 온라인



▪ 오프라인(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제출 후 발급

원산지증명서 유형

|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세관, 상공회의소) |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상공회의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무역협정 (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 아시아-태평양무역 (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 GATT개방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 ▪ 해외바이어의 자국 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 |

FTA원산지증명서 종류

| 구분 | 적용협정 |
|-------------------------------|---------------------------|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미국, 페루 |
|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 | EU, EFTA, 페루, 터키 |
|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 | 아세안(역내 경유국에서 발급) |

FTA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구분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
| 정의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 국가의 관세 당국 기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 |
| 대상협정 |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한-중국, 한-호주 |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중미 |
| 특이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EFTA: 스위스 산 치즈는 기관 발급 ▪ 한-페루: 발효 이후 5년간(2016.7.31.까지) 기관 발급 허용 ▪ 아세안 정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루나이(외교통산부) • 캄보디아(상무부) • 인도네시아(통상부) • 라오스(상공회의소, '12.7.1변경) • 말레이시아(국제통상산업부) • 미얀마(상무부) • 필리핀(세관) • 싱가포르(세관) • 베트남(통상부) • 태국(상무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EU: 건당 수출금액이 6,000유로 초과 시에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만 자율발급 가능 |

원산지증명서 서식: 한·아세안

■ 자유무역협정의 이월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양쪽)

| Original(Duplicate/Triplicate) | | | | | |
|---|----------------------------------|--|---|---|---------------------------------|
|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 | Reference No.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small>(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small> | | | |
|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 | | | | |
|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 | 4. For Official Use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 | | |
| 5. Item number |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
|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 | |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 | |
| 13. <input type="checkbox"/> Third Country Invoicing | | <input type="checkbox"/> Exhibition | | <input type="checkbox"/> Back-to-Back CO | |

210mm×297mm(역상지 80g/㎡(제출용용))

(뒤쪽)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국가에 적용됩니다.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9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다.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4. 제2란에는 수입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5. 제3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6. 제4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7. 제5란에는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8. 제6란에는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9. 제7란에는 포장개수·포장형태·품명·수량·품목번호 등을 적습니다.
 - 가.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고, 상표도 적습니다.
 - 나. 품목번호(HS No.)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10. 제8란에는 수출자(제조사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 | |
|---|--|
|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 WO |
| 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협약」(HS)상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 CTH 또는 RVC 40% |
|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3) 일정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물품)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예: 재단 및 봉제공정) | CTC WO-AK RVC % (예: RVC 45%) CTH + RVC % Specific Process |
| 라.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6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 Rule 6 |

11.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과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본선인도가격(FOB가격)을 적습니다.
12. 제10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13. 제11란에는 수출자(제조사 및 생산자 포함)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14. 제12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15. 제13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 표시를 합니다.
 - 가.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제7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
 - 나.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의 전시를 위해 수출당사국에서 제3국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제3국에서 전시 도중 또는 전시 후에 수입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판매된 경우 "전시(Exhibition)"란에 "√" 표시를 합니다.
 - 다. 연결원산지증명서인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월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양쪽)

| Original (Duplicate/Triplicate) | | | | | |
|--|----------------------------------|--|---|---|---------------------------------|
|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 | | Reference No.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small>(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small> | | |
|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 | | | | |
|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 | | 4. For Official Use | | |
| | | |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 | |
| | | |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_____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 | |
| 5. Item number |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
|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p>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_____ <small>(Country)</small></p> <p>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_____ <small>(Importing Country)</small></p> <p>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p> | | | 12. Certification <p>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p> <p>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p> | | |
| 13. <input type="checkbox"/> Third Country Invoicing | | <input type="checkbox"/> Exhibition | | <input type="checkbox"/> Back-to-Back CO | |

210mm x 297mm (백신지 80g/㎡ [재활용용])

(뒤쪽)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국가에 적용됩니다.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9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다.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4. 제2란에는 수입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5. 제3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6. 제4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7. 제5란에는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8. 제6란에는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9. 제7란에는 포장개수·포장형태·품명·수량·품목번호 등을 적습니다.
 - 가.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고, 상표도 적습니다.
 - 나. 품목번호(HS No.)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10. 제8란에는 수출자(제조사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 | |
|---|--|
|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 WO |
| 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협약」(HS)상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 CTH 또는 RVC 40% |
|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3) 일정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물품)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예: 재단 및 봉제공정) | CTC WO-AK RVC % (예: RVC 45%) CTH + RVC % Specific Process |
| 라.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6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 Rule 6 |

11.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과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본선인도가격(FOB가격)을 적습니다.
12. 제10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13. 제11란에는 수출자(제조사 및 생산자 포함)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14. 제12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15. 제13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 표시를 합니다.
 - 가.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제7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
 - 나.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의 전시를 위해 수출당사국에서 제3국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제3국에서 전시 도중 또는 전시 후에 수입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판매된 경우 "전시(Exhibition)"란에 "√" 표시를 합니다.
 - 다. 연결원산지증명서인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란에 "√" 표시를 합니다.

부록 5

필리핀 식품 관련 협회

필리핀 관련 협회

- 농산물협회

- Central Luzon Egg Producers Association: (045)865-1971
- Federation of Cattle Raiser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02)823-5529, 823-9648
- National Federation of Egg Producers of the Philippines: (02)922-9622
- Philippine Association of Hog Raisers, Inc: (02)741-9532
- United Broilers Raisers Association: (02)911-8974

- 가공식품

- Association of Coconut Brokers: (02)845-2831 to 37
- Association of Philippines Coconut Desiccators: (02)633-8030
- Coconut Oil Refiners Association: (02)825-5105
- Fresh Frozen Seafood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Inc: (083)552-2178
- Integrated Food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02)721-1653
- Organic Producers Trade Associations: (02)363-6816

- Philippine Association of Flour Millers, Inc: (02)811-4387 / 811-4366
- Philippine Association of Meat Processors, Inc: (02)633-6334
- Philippine Coconut Oil Producers Association, Inc: (02)633-8029
- Philippine Food Processors and Exporters Organization, Inc: (02)634-2171 / 643-3466 / 949-4054
- Philippine Sugar Millers Association, Inc: (02)891-1138
- Seaweed Industry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032) 253-7433
- United Coconut Associations of the Philippines, Inc: (02)531-0351 / 584-5338

부록 6

필리핀 관련 기관 주소 및 연락처

-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 USDA**
 - U.S. EMBASSY MANILA
 - 1201 Roxas Boulevard Manila 1000
 - Tel: (+632) 301 4900 Fax: (+632) 521 0009
 - E-mail : agmanila@fas.usda.gov

-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 USDA**
 - U.S. EMBASSY MANILA
 - 1201 Roxas Boulevard Manila 1000
 - Tel: (+632) 301 4900 Fax: (+632) 521 0009
 - E-mail : Angel.DelosSantos@aphis.usda.gov

- **BUREAU OF ANIMAL INDUSTRY, DEPARTMENT OF AGRICULTURE**
 - BAI Compound, Visayas Avenue
 - Diliman, Quezon City Philippines 1104
 - Tel : (+632) 927 0971/ 926 6883 Fax : (+632) 928 2429
 - Website : <http://bai.da.gov.ph/baimainframe.html>

▪ **BUREAU OF PLANT INDUSTRY, DEPARTMENT OF AGRICULTURE**

- 692 San Andres Street Malate, Manila Philippines 1004
- Tel : (+632) 524 2812 Fax : (+632) 521 7650
- Website : <http://bpi.da.gov.ph/Services.html>

▪ **BUREAU OF CUSTOMS VALUATION & CLASSIFICATION DEPARTMENT,
DEPARTMENT OF FINANCE**

- New Customs Building Port Area, Manila Philippines 1018
- Tel : (+632) 526 6355 Fax : (+632) 527 4573
- Website : <http://www.customs.gov.ph/html/cover.htm>

▪ **BUREAU OF FISHERIES & AQUATIC RESOURCES, DEPARTMENT OF
AGRICULTURE**

- Philippine Coconut Authority Elliptical Road, Quezon City Philippines 1104
- Tel : (+632) 929-9597 Fax : (+632) 929-8074
- Website : <http://www.bfar.da.gov.ph>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HEALTH**

- Civic Drive Filinvest Corporate City Alabang, Muntinlupa City Philippines 1770
- Tel : (+632) 807 0721/ 807 0725 Fax : (+632) 807 0751
- Website : <http://www.FDA.gov.ph>

- **NATIONAL MEAT INSPECTION SERVICE DEPARTMENT OF AGRICULTURE**
 - Tel : (+632) 924-3118-19 Fax : (+632) 924-7973
 - Website : <http://nmis.gov.ph/>

- **BUREAU OF AGRICULTURE & FISHERIES PRODUCT STANDARDS, DEPARTMENT OF AGRICULTURE**
 - Tel : (+632) 920-6131-33 Fax : (+632) 920-6134
 - Website : <http://www.bafps.da.gov.ph>

- **BUREAU OF IMPORT SERVICES, 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 349 Sen. Gil Puyat Avenue Makati City, Philippines
 - Tel : (+632) 896 4430 Fax : (+632) 895 7466
 - Website : <http://www.dti.gov.ph>

- **BUREAU OF INTERNAL REVENUE, DEPARTMENT OF FINANCE**
 - National Internal Revenue Building, Diliman, Quezon City, M.M. Philippines
 - Tel : (+632) 922 3293/ 921 0430 Fax : (+632) 925 1789
 - Website : <http://www.bir.gov.ph>

- **BUREAU OF INTERNATIONAL TRADE RELATIONS, 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 357 Sen. Gil Puyat Avenue Makati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1200
 - Tel : (+632) 890 5148/ 897 8290 Fax : (+632) 890 4812
 - Website : <http://www.dti.gov.ph>

▪ **NATIONAL FOOD AUTHORITY**

- SRA Building, North Avenue Quezon City Philippines 1102
- Tel : (+632) 712 1719/ 712 1705 Fax : (+632) 712 1110
- Website : <http://www.nfa.gov.ph>

▪ **NATIONAL COMMISSION ON MUSLIM FILIPINOS**

- Address: 79 Jocfer Annex Building, Commonwealth Avenue, Diliman, Quezon City, Philippines
- Contact: (02) 952-48-75 / (02) 952-64-19 / ncmf.osec@gmail.com
- Website: <http://ncmf.gov.ph/contact-us/>

부록 7

주요 국가 통관 거부 현황

2020년도 주요 수출국 대한민국 식품기업 통관거부 유형별 자료 현황

| |  미국 |  유럽 연합 |  일본 |  중국 |  대만 |  홍콩 |  호주 |
|--|--|---|--|--|--|--|--|
|  라벨링/포장 | 86 | 0 | 0 | 2 | 0 | 0 | 0 |
|  서류미비 | 63 | 0 | 0 | 1 | 0 | 0 | 0 |
|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 | 28 | 4 | 19 | 0 | 5 | 0 | 9 |
|  표준미준수 | 102 | 5 | 0 | 0 | 0 | 0 | 0 |
|  식품변질 | 12 | 0 | 0 | 1 | 0 | 0 | 0 |
|  사용상의 위험 | 0 | 0 | 0 | 0 | 0 | 0 | 0 |
|  기타 | 6 | 6 | 0 | 0 | 0 | 1 | 0 |

출처: Tradenavi 통합무역정보서비스(한국무역협회), 2020년 11월 30일 기준

2020년도 주요 수출국 대한민국 식품기업 통관거부 업종별 자료 현황

| |  미국 |  유럽 연합 |  일본 |  중국 |  대만 |  홍콩 |  호주 |
|--|--|---|--|--|--|--|--|
|  가공식품 | 38 | 2 | 7 | 1 | 1 | 0 | 7 |
|  수산물 | 12 | 2 | 8 | 0 | 0 | 0 | 2 |
|  농산물 | 5 | 1 | 0 | 0 | 4 | 0 | 0 |
|  임산물 | 3 | 0 | 0 | 0 | 0 | 0 | 0 |
|  축산물 | 0 | 0 | 0 | 0 | 0 | 0 | 0 |

출처: Tradenavi 통합무역정보서비스(한국무역협회), 2020년 11월 30일 기준

2020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필리핀 종합보고서

2020년 12월 인쇄

2020년 12월 발행

편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발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TEL: (061)931-0871 FAX: (061)804-4538

본 책자의 통계자료 및 분석내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정보분석부(061-931-08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자료는 KATI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를 통해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알림】

본지에 기재된 분석내용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견해이며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식적 견해와는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책의 내용이나 각종 자료를 복제 및 전제하거나 웹상에 수집 및
게시하는 행위, 판매 등의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